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	기			금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제1장 일반회계

I. 개 요	1
1. 총 괄	1
2. 세입예산안	5
3. 세출예산안	7
4. 성과계획서	16
5. 성인지예산	18
II. 검토의견	19
1. 자금세탁방지추진: 국제 분담금 부족분 증액 여부 검토 필요	19
2.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AI 기반 심사분석 지원시스템 조기 구축 필요	26
3. 청년미래적금 및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가입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의 정부기여금 편성 필요 등	34
(1) 가입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의 정부기여금 편성 필요	39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간 연계가입 방안 등 조속한 세부계획 수립 필요	45
(3) 청년자산형성 사업 간 인프라 구축 예산액 배분 조정 필요 등	47
4.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취급기관 확대를 위한 사업 준비 철저 필요	50

5.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취약채무자 법률대응권 보장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성과지표 마련 필요	60
6.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집행실적을 고려한 감액 필요	69
7. 국민성장펀드(신규): 조속한 세부추진 계획 마련 필요	78
(1) 조속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필요	80
(2) 과거 국민참여형 정책펀드의 문제점을 보완한 계획 마련 필요	83
8.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신규): 사업계획 미확정에 따른 예산 심사 방안 모색 필요	86
9.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포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예산 증액 검토 필요	91

제2장 신용보증기금

I. 개 요	99
1. 수입계획안	101
2. 지출계획안	103
3. 주요경영지표계획	111
II. 검토의견	112
1. 신용보증기금 P-CBO 직접 발행 관련 수입·지출 계획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 필요	112
2. 일반회계전입금: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121
3. 업무용건물: 연내 집행가능성 없는 공사비 감액 필요	127

4. 위기대응특례보증 대위변제: 보증공급 규모에 따른 대위변제 소요액 감액 필요	132
---	-----

제3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I. 개 요	137
1. 수입계획안	139
2. 지출계획안	141
3. 주요경영지표계획	149
II. 검토의견	151
1. 법정부담금(주택신용보증계정·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면허료 및 수수료(주택신용보증계정):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영향을 반영한 기금 수입액 조정 필요	151

제4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I. 개 요	159
1. 수입계획안	162
2. 지출계획안	164
3. 주요경영지표계획	169
II. 검토의견	170
1. 기타특별회계전입금: 정부 출연금 미편성에 따른 기금 건전성 악화 우려	170

제5장 공적자금상환기금

I. 개 요	177
1. 수입계획안	179
2. 지출계획안	180
II. 검토의견	184
1. 기타경상이전수입: 현실적인 수입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안 편성 필요	184

제6장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I. 개 요	191
1. 수입계획안	193
2. 지출계획안	194
II. 검토의견	200
1. 기금관리비: 기금 청산을 위한 철저한 준비 필요	200

제7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I. 개 요	205
1. 수입계획안	207
2. 지출계획안	208
II. 검토의견	211
1. 저축장려금: 성과지표(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급액) 재검토 필요	211

제1장 일반회계

I.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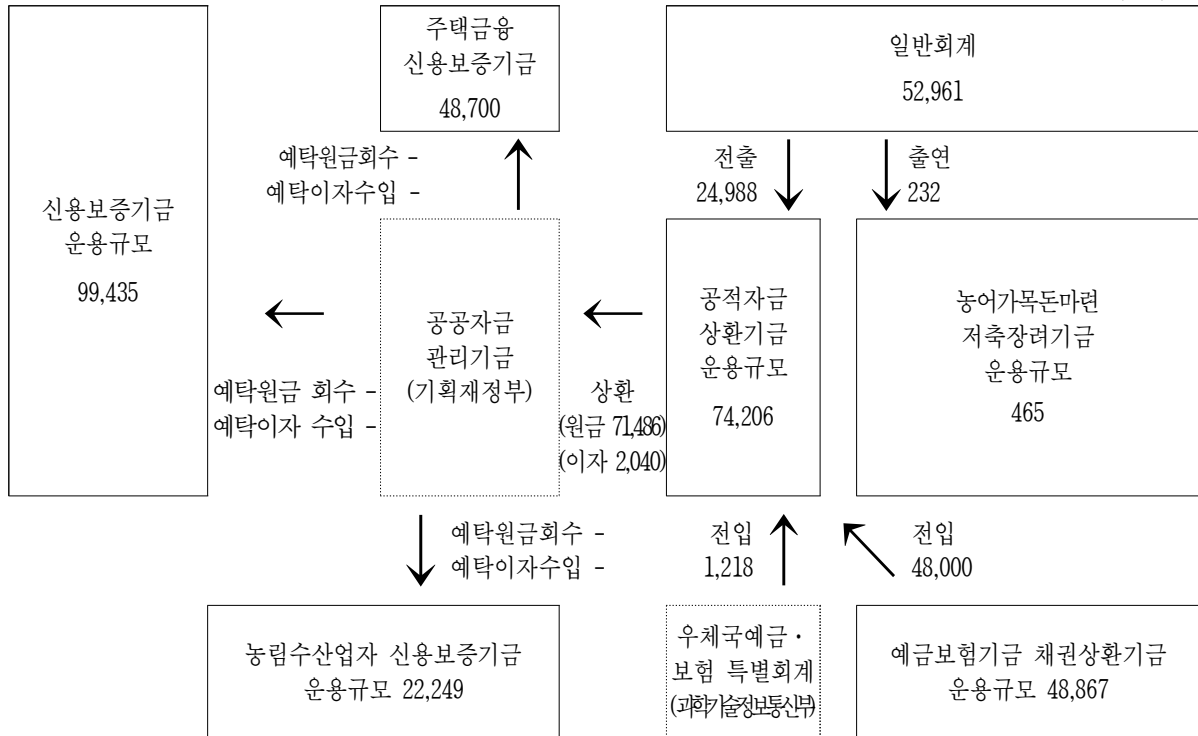
1. 총괄

□ 금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6개 기금(공적자금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구성됨.

○ 2026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2조 4,988억원을 전출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232억원을 출연함. 또한,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7조 1,486억원의 예수원금과 2,040억원의 예수이자를 상환하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4조 8,000억원을 전출함.

〈2026년 금융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만 있으며,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2025년 최종예산 대비 547억원(54.1%) 증가한 1,558억원, 세출예산안은 2025년 예산 대비 1조 1,124억원(26.6%) 증가한 5조 2,961억원임.

〈2026년도 금융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 세입예산안	1,011	1,558	547	54.1
○ 일반회계	1,011	1,558	547	54.1
□ 세출예산안	41,838	52,961	11,124	26.6
○ 일반회계	41,838	52,961	11,124	26.6

(자료: 금융위원회)

□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 대비 5,318억원 감소한 29조 3,922억원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2025년 대비 운용규모가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3개 기금은 2025년 대비 운용규모가 감소하였음.

〈2026년도 금융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2026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기금운용계획안	298,259	299,240	293,922	△5,318	△1.8
○ 공적자금상환기금	64,384	64,384	74,206	9,822	15.3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511	492	465	△27	△5.4
○ 신용보증기금	115,126	116,126	99,435	△16,690	△14.4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2,651	22,651	22,249	△402	△1.8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8,092	48,092	48,700	608	1.3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7,496	47,496	48,867	1,371	2.9

(자료: 금융위원회)

□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수입·총지출¹⁾은 일반회계 및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구성됨.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2025년 대비 1조 349억원 증가(26.4%)한 4조 9,558억원이며, 총지출은 2025년 대비 1조 1,135억원 증가(66.1%)한 2조 7,974억원임.

1) 총수입·총지출은 회계·기금(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 제외)의 총계에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및 차입금·여유자금운용 등 보전거래를 차감하여 산출함.

*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성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026년도 금융위원회 총수입 ·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본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 총수입	39,209	49,558	10,349	26.4
○ 일반회계	1,011	1,558	547	54.1
○ 공적자금상환기금	38,198	48,000	9,802	25.7
□ 총지출	16,838	27,974	11,136	66.1
○ 일반회계	16,837	27,974	11,137	66.1
○ 공적자금상환기금	1	0	△1	△92.9

(자료: 금융위원회)

□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부사업 중 예산규모가 큰 10대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²⁾,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공공자금관리 기금 예수원금상환으로 7조 1,486억원 규모임.

〈금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10대 세부사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2026년도 예산안(B) (계획안)	증감 (B-A)	(B-A)/A
	본예산 (당초)	추경(A) (수정)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공자기)	59,977	59,977	71,486	11,509	19.2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예보)	38,000	38,000	48,000	10,000	26.3
비통화금융기관예치(신보)	35,069	36,069	37,125	1,056	2.9
일반보증대위변제(신보)	26,452	26,452	26,939	487	1.8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일반)	25,000	25,000	24,988	△12	△0.0
통화금융기관예치(주신보)	20,021	20,018	18,463	△1,555	△7.8
통화금융기관예치(농신보)	17,139	17,126	16,563	△563	△3.3
통화금융기관예치(신보)	24,381	24,288	14,568	△9,720	△40.0
대위변제(주신보)	13,364	13,364	13,130	△234	△1.8
국민성장펀드(일반)	-	-	10,000	10,000	순증

(자료: 금융위원회)

2) 기관운영경비 및 내부거래 제외

2. 세입예산안

□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557억 7,1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546억 6,400만원(54.1%)이 증액 편성됨.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결산	2025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합 계	144,616	101,107	101,107	155,771	54,664	54.1
기타재산이자수입	175	58	58	99	41	70.7
과태료	29,230	37,104	37,104	31,969	△5,135	△13.8
과징금	113,736	59,907	59,907	122,003	62,096	103.7
가산금	322	150	150	150	-	-
기타경상이전수입	1,152	3,888	3,888	1,550	△2,338	△60.1

(자료: 금융위원회)

- 과태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으로, 2026년도에는 최근 3년간('22년~'24년) 과태료 수납액의 평균치 등에 따라 2025년도 예산대비 51억 3,500만원(△13.8%)이 감소한 319억 6,900만원이 편성됨.
- 과징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 위반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로서 부과되는 과징금 수입으로, 2026년도에는 최근 3년간('22년~'24년) 과징금 수납액의 평균치 및 국가미수 채권 회수 강화 노력분 반영 등에 따라 2025년도 예산대비 620억

9,600만원(103.7%)이 증가한 1,220억 300만원이 편성됨.

- 가산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및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 수입으로, 2026년도에는 최근 3년간('22년~'24년) 가산금 수납액의 평균치 등에 따라 2025년도 예산과 동일한 1억 5,000만원이 편성됨.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금융성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 및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소송비용 보전금 등 기타수입으로, 2026년도에는 2025년도 예산대비 23억 3,800만원 (△60.1%)이 감소한 38억 8,800만원이 편성됨.

3. 세출예산안

1) 총 괄

□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조 2,961억 4,7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 5조 6,706억 2,000만원 대비 3,744억 7,300만원(6.6%)이 감액 편성됨.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합 계	3,999,431	4,183,766	5,670,620	5,296,147	△374,473	△6.6
□ 금융위원회 운영	1,499,431	1,683,766	3,170,620	2,797,353	△373,267	△11.8
○ 인건비	31,001	33,211	33,211	34,581	1,370	4.1
○ 기본경비	8,616	9,639	9,639	9,478	△161	△1.7
○ 주요사업비	1,459,814	1,640,916	3,127,770	2,753,294	△374,476	△12.0
□ 내부거래	2,500,000	2,500,000	2,500,000	2,498,794	△1,206	△0.1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2,500,000	2,500,000	2,500,000	2,498,794	△1,206	△0.1

(자료: 금융위원회)

○ 2026년도 금융위원회 운영 예산안은 2조 7,974억원으로, 인건비가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는 2025년 예산 대비 3,744 7,600만원(△12.0%)이 증액 편성됨.

○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내부거래 예산안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2조 4,988억원)로 2025년 예산 대비 12억 600만원(△0.1%)이 감액 편성됨.

□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의 프로그램별 세출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금(회계기금간거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왔으며, 2026년에는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프로그램별 예산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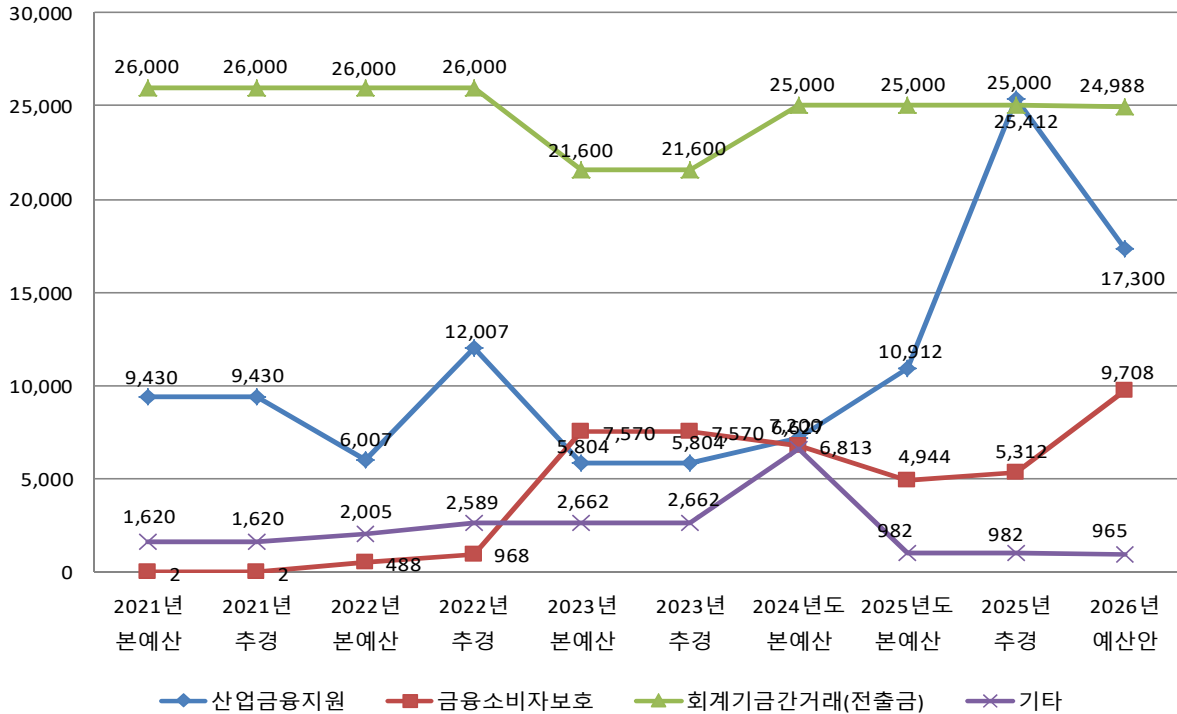
(단위: 억원, %)

프로그램명	2021년		2022년		2023년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융정책(1100)	184	184	146	145	140	140
서민금융지원(1200)	-	-	-	-	-	-
자금세탁방지시스템선진화(1300)	92	92	82	81	77	77
금융산업글로벌화(1400)	40	40	37	36	29	29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1500)	6	6	-	-	-	-
금융의 날 행사 및 저축장려(1600)	342	342	-	-	-	-
금융소비자보호(1800)	2	2	488	968	7,570	7,570
산업금융지원(2400)	9,430	9,430	6,007	12,007	5,804	5,804
주택금융지원(2600)	500	500	500	1,590	1,668	1,668
금융행정효율화(7100)	456	456	741	737	750	750
회계기금간거래(8400)	26,000	26,000	26,000	26,000	21,600	21,600
합 계	37,052	37,052	34,500	41,564	37,636	37,636
프로그램명	2024년		2025년		2026년도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예산안	
금융정책(1100)	123	123	129	129	121	
서민금융지원(1200)	-	-	-	-	-	
자금세탁방지시스템선진화(1300)	74	74	78	78	77	
금융산업글로벌화(1400)	9	9	10	10	9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1500)	-	-	-	-	-	
금융의 날 행사 및 저축장려(1600)	-	-	-	-	-	
금융소비자보호(1800)	6,813	6,813	4,944	5,312	9,708	
산업금융지원(2400)	7,200	7,200	10,912	25,412	17,300	
주택금융지원(2600)	-	-	-	-	-	
금융행정효율화(7100)	810	810	765	765	759	
회계기금간거래(8400)	25,000	25,000	25,000	25,000	24,988	
합 계	45,640	45,640	41,838	56,706	52,961	

(자료: 금융위원회)

〈최근 5년 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예산의 프로그램별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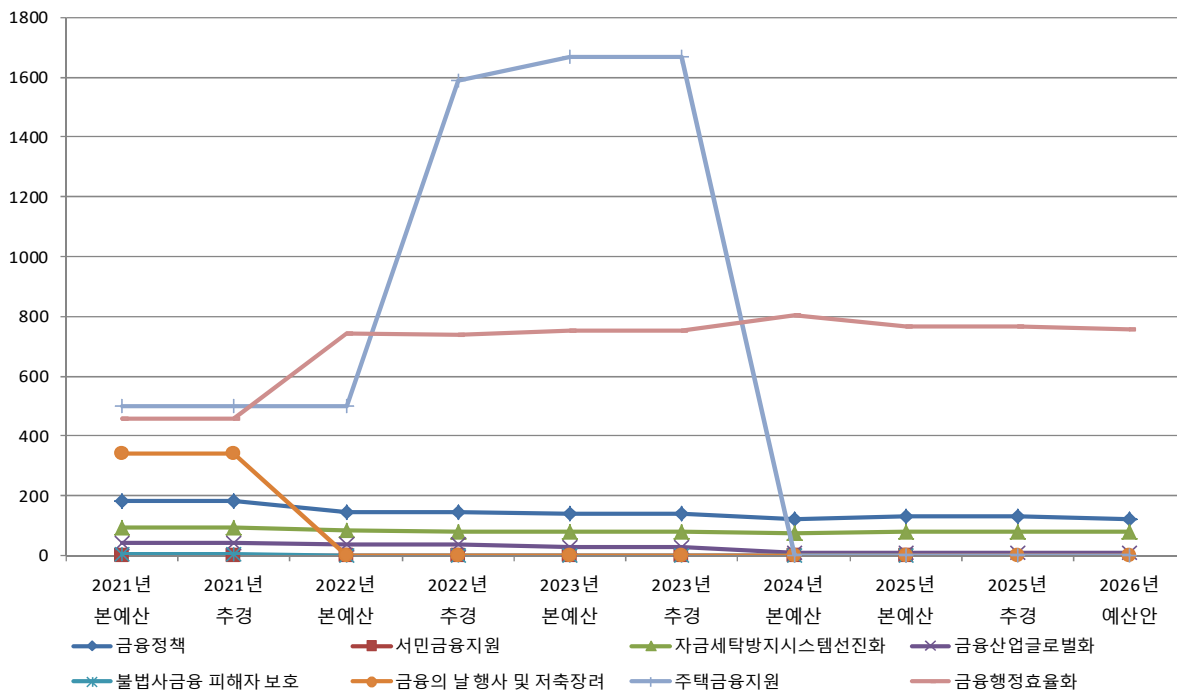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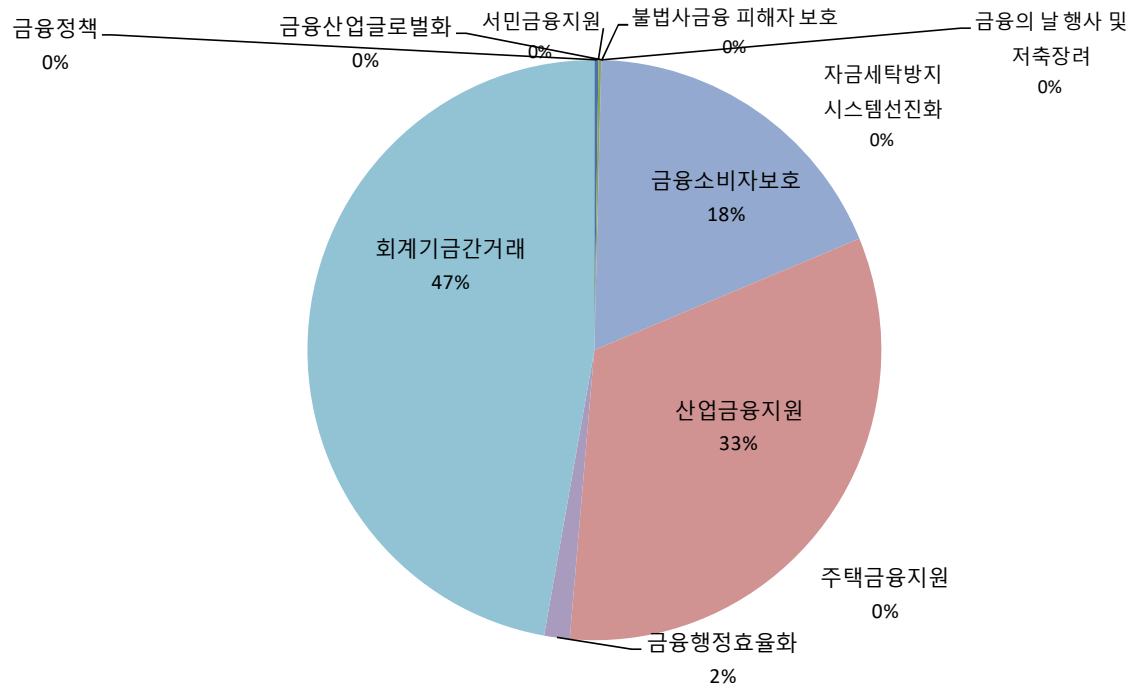
〈기타 예산 세부 내역〉

(단위: 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2026년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예산의 프로그램별 비중〉



(자료: 금융위원회)

2) 인건비

-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345억 8,1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 332억 1,100만원 대비 13억 7,000만원(4.1%) 증가함.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인건비 합계	31,001	33,211	33,211	34,581	1,370	4.1
□ 세목별	31,001	33,211	33,211	34,581	1,370	4.1
○ 보수(110-01)	28,428	32,170	32,170	33,491	1,321	4.1
○ 기타직보수(110-02)	574	799	799	829	30	3.8
○ 연가보상비(110-05)	184	242	242	261	19	7.9
□ 기관별	31,001	33,211	33,211	34,581	1,370	4.1
○ 본부 인건비	25,504	26,818	26,818	28,602	1,784	6.6
○ FIU 인건비	5,497	6,393	6,393	5,979	△414	△6.4

(자료: 금융위원회)

- 2026년도 인건비 예산이 증가한 것은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3) 기본경비

-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94억 7,800만원으로 2025년 예산 대비 1억 6,100만원(△1.7%)이 감소함.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예산안(B)	증 감 (B-A)	(B-A)/A
				본 예산	추경(A)			
총 액 인 건 비 대 상	본부	기획조정관실	3,101	3,222	3,222	3,233	11	0.3
		대변인실	8	8	8	8	-	-
		금융정책국	49	77	77	77	-	-
		자본시장국	45	115	115	120	5	4.3
		금융소비자국	21	37	37	37	-	-
		금융산업국	46	76	76	76	-	-
	소속 기관	금융정보분석원	593	719	719	745	26	3.6
	소 계(A)		3,863	4,254	4,254	4,296	42	1.0
총 액 인 건 비 비 대 상	본부	기획조정관실	2,461	2,718	2,718	2,475	△243	△8.9
		대변인실	241	289	289	308	19	6.6
		금융정책국	658	712	712	712	-	-
		자본시장국	388	427	427	433	6	1.4
		금융소비자국	151	158	158	158	-	-
		금융산업국	299	386	386	386	-	-
	소속 기관	금융정보분석원	555	695	695	710	15	2.2
	소 계(B)		4,753	5,385	5,385	5,182	△203	△3.8
합 계(A+B)			8,616	9,639	9,639	9,478	△161	△1.7

(자료: 금융위원회)

- 2026년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42억 9,6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대비 4,200만원(1.0%)이 증가하였고,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51억 8,2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대비 2억 300만원 (△3.8%)이 감소함.

4) 주요사업비

□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은 2조 7,533억원으로 2025년 예산 대비 3,745억원(△12.0%)이 감소함.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합 계	1,459,814	1,640,916	3,127,770	2,753,294	△374,476	△12.0
핀테크 지원 사업	12,252	12,933	12,933	12,086	△847	△6.5
자금세탁방지추진	756	846	846	857	11	1.3
FATF 교육기구 운영 지원	1,998	2,018	2,018	2,018	-	-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4,626	4,947	4,947	4,801	△146	△3.0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	926	981	981	870	△111	△11.3
금융소비자보호	94	101	101	90	△11	△10.9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반조성	37	35	35	-	△35	순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56,000	56,000	92,500	-	△92,500	순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	347,015	347,015	124,182	△222,830	△64.2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햇살론15)	90,000	90,000	90,000	-	△90,000	순감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	-	-	100,000	100,000	순증
청년미래적금	-	-	-	744,625	744,625	순증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628	1,205	1,559	1,906	347	22.3
산업은행 출자 (혁신성장펀드)	240,000	176,200	176,200	-	△176,200	순감
산업은행 출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
산업은행 출자 (반도체생태계펀드)	-	30,000	30,000	-	△30,000	순감
산업은행 출자 (반도체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	250,000	450,000	-	△450,000	순감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 예산	추경(A)			
산업은행 출자 (원전산업성장펀드)	-	35,000	35,000	-	△35,000	순감
산업은행 출자 (탄소대응 자라자원 특별프로그램)	-	-	100,000	-	△100,000	순감
국민성장펀드	-	-	-	1,000,000	1,000,000	순증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	-	-	630,000	630,000	순증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330,000	500,000	1,200,000	-	△1,200,000	순감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기업구조혁신펀드)	50,000	-	50,000	-	△50,000	순감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	-	400,000	-	△400,000	순감
금융위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055	3,012	3,012	2,189	△823	△27.3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정보화)	1,500	1,461	1,461	1,290	△171	△11.7
지본시장조사단 운영(정보화)	318	286	286	286	-	-
금융위 대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정보화)	103	117	117	117	-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671	575	575	525	△50	△8.7
정책연구개발	632	599	599	509	△90	△15
금융정책알리기	821	885	885	876	△9	△1.0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407	450	450	1,240	790	175.6
회계의날	60	59	59	77	18	30.5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사업	200	200	200	194	△6	△3
금융의 날 행사	75	69	69	90	21	30.4
소송수행비용	800	900	900	1,100	200	22.2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운영	-	430	430	171	△259	△60.2
금융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	445	445	-	△445	순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 출연	31,463	24,147	24,147	23,192	△955	△3.9

(자료: 금융위원회)

5) 내부거래(회계기금간 거래)

-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내부거래(회계기금간 거래) 예산안은 2조 4,988억원으로 2025년 예산 대비 12억 600만원($\Delta 0.1\%$)이 감소함.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내부거래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 예산	추경(A)			
합 계	2,500,000	2,500,000	2,500,000	2,498,794	$\Delta 1,206$	$\Delta 0.1$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2,500,000	2,500,000	2,500,000	2,498,794	$\Delta 1,206$	$\Delta 0.1$

(자료: 금융위원회)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은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투입한 공적자금(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중 공적자금상환대책(2002년)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49조원을 2003~2006년에 걸쳐 국채로 전환하여 우선 상환하고 동 국채는 일반회계로부터 연간 2조원(2002년 현재가치 기준)을 출연 받아 2027년까지 상환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2조 4,988억원이 편성됨.

4. 성과계획서

1) 임무와 비전

□ 금융위원회는 2026년도 임무를 ‘경제활력 뒷받침’, ‘금융산업혁신’, ‘소비자 중심 포용적 금융’, ‘공정성·투명성 강화’로 설정하고, ‘혁신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 정책 비전을 설정하였음.

2) 목표 및 과제 현황

□ 금융위원회는 4가지 전략목표(‘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한다.’, ‘서민층의 금융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고, 엄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금융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와 11개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였음.

○ 프로그램 목표별로 설정된 단위사업은 총 20개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도 금융위원회 성과 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구분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개수	4	11	20	63

(자료: 금융위원회)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목표(Program Objectives)
전략목표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한다.		
	I-1 산업금융지원	산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통해 국민경제를 활성화한다.
	I-2 농림수산업금융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I-3 신용보증금융지원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고 국민 경제 전반에 기여도가 큰 중점정책부문의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함으로써 경제기반을 강화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도모한다.
전략목표Ⅱ. 서민층의 금융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Ⅱ-1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를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Ⅱ-2 저축장려	농어민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Ⅱ-3 주택금융지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Ⅱ-4 복권기금운영 (취약계층지원)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전략목표Ⅲ. 금융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고, 엄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Ⅲ-1 금융정책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여 금융혁신을 도모한다.
	Ⅲ-2 자금세탁방지시스템선진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선진화한다.
	Ⅲ-3 금융산업글로벌화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전략목표Ⅳ. 금융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Ⅳ-1 금융행정효율화	금융행정을 효율화한다.

(자료: 금융위원회)

5. 성인지 예산³⁾

☐ 금융위원회는 성인지 예산사업이 없음.

3) 성인지 예산서: 사업(예산)이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성별 수혜분석과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사업(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국가재정법」 제26조)

II. 검토의견

1. 자금세탁방지추진⁴⁾: 국제 분담금 부족분 증액 여부 검토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자금세탁방지추진”은 자금세탁방지 파트너십 강화·국제기구 활동 등 국제협력과 CTR(고액현금거래 보고) 정보제공사실 당사자 통보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00만원(1.3%) 증가한 8억 5,7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자금세탁방지추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자금세탁방지추진	756	846		857	11	1.3
- 자금세탁방지 국제협력	675	745		772	27	3.6
- FATF 상호평가 후속 점검대응	15	39		24	△15	△3.8
- CTR 정보제공사실 당사자 통보	67	61		61	-	-

(자료: 금융위원회)

4) 세부사업: 자금세탁방지추진(1331-303)

2) 검토의견

□ 자금세탁방지추진 사업은 ‘자금세탁방지 국제협력’, ‘FATF 상호평가 후속점검대응’, ‘CTR 정보제공사실 당사자 통보’ 등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자금세탁방지 국제협력’ 내역사업은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국제협약에 따라 3개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예산안에서는 2025년 대비 2,700만원 증가한 7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구체적으로, ‘자금세탁방지 국제협력’ 내역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3개 국제기구에 대한 국제 분담금 6억 5,000만원, 후발국 컨설팅 등 대외협력 국외여비 400만원, 영문에디터(2인) 인건비 1억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2026년도 자금세탁방지 국제협력 내역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비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자금세탁방지 국제협력 (내역사업)	675	745	745	772	27	3.6
- 국제분담금(340-02)	592	630	630	650	20	3.2
- 국외업무여비(220-02)	-	8	8	4	△4	△50.0
- 상용임금 등 (110-03, 320-09, 210-12)	83	106	106	117	11	10.4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가 동 사업을 통해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제기구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 지역기구 (APG), 에그몽그룹(Egmont) 등 총 3개로, 모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관련 국제기준을 정립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함.

〈분담금 납부 국제기구 현황〉

구분	국제기구명	납부기간	주요 역할
FATF	자금세탁방지기구	2009년 ~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정립하고, 상호평가를 통해 회원국의 기준 이행을 감독
APG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 지역기구	1998년 ~	· 역내 국가들의 FATF 기준 이행을 점검하고, 후발국들의 기준 이행을 지원
Egmont	에그몽그룹	2002년 ~	· 각국 FIU간 자금세탁 관련 금융거래정보 교환 체계화·활성화 및 비밀 보호

(자료: 금융위원회)

□ 과거 동 사업을 통해 납부한 국제기구 분담금 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과 2025년에 당초 편성한 분담금에 비해 더 큰 금액의 분담금이 확정되면서 부족한 분담금을 동일한 세부사업 내의 다른 내역사업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 2024년의 경우에는 확정된 분담금이 당초 편성액 대비 4,000만원 부족하여 국외업무여비에서 2,800만원, 일반수용비 등에서 1,200만원을 각각 전용하였고, 2025년의 경우에는 4,800만원이 부족하여 국외업무여비에서 3,700만원, 일반수용비 등에서 1,100만원을 각각 전용하였음.

〈분담금 부족분 총당을 위한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전용 감액		전용 증액	
2024년	일반수용비	△2	국제부담금	40
	국외업무여비	△28		
	공공요금 및 제세	△10		
	계	△40	계	40
2025년	상용임금	△6	국제부담금	48
	일반수용비	△6		
	국외업무여비	△36		
	계	△48	계	48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이 분담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상한 분담금 증가율보다 실제 증가율이 높았고, 실제 납부 시 환율 변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분담금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연도	기관	편성액			집행액			(B-A) (천원)
		원화(A) (천원)	납부화폐 기준	환율 (원)	원화(B) (천원)	납부화폐 기준	환율 (원)	
2024	FATF	301,024	EUR 211,989	1,420	330,256	EUR 222,123	1,486	△29,232
	APG	226,926	AUD 260,835	870	229,228	AUD 260,835	878	△2,302
	Egmont	25,292	USD 19,455	1,300	32,830	USD 23,754	1,382	△7,538
	소계	552,420			592,313			△39,893
2025	FATF	342,908	EUR 236,000	1,453	385,228	EUR 242,827	1,586	△42,320
	APG	251,834	AUD 286,500	879	259,262	AUD 279,974	920	△7,428
	Egmont	35,880	USD 26,000	1,380	32,817	USD 23,645	1386.5	3,063
	소계	630,388			678,388			△48,000

(자료: 금융위원회)

○ 참고로, 우리 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동
사업의 국제 분담금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국제 분담금의 증가율
및 환율 변동을 면밀히 반영하여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외 출장 등 국제공조 활동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주의)’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한 바 있음.

□ 한편,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국제 분담금과 실제 납부 예상액을
살펴본 결과, 2026년에는 과거보다 더 큰 규모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전에 다음연도 분
담금 규모가 확정된 ‘에그몽그룹(Egmont)’의 분담금은 적정 규모로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나,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 지역기구
(APG)’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경우 다음연도 분담금 규모
가 확정되지 않아 예상액을 반영하였다고 설명함.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편성된 이후 확정된 ‘APG’와
‘FATF’의 예상 분담금을 원화로 추산한 결과,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전체 국제 분담금 6억 5,000만원 대비 1억 4,000만원을 초과
한 7억 9,000만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됨.

〈2026년도 국제분담금 편성액 및 예상액 산출내역〉

구분	2026년도 분담금 확정 일정	2026년 편성액(정부안)			2026년 예상액		
		분담금	환율 (원)	원화 (천 원)	분담금	환율 (원)	원화 (천 원)
Egmont	2025. 7. 9.	35,733(USD)	1,380	49,312	35,733(USD)	1,440	51,455
APG	2025. 8. 27.	260,000(AUD)	895	237,175	314,249(AUD)	940	295,394
FATF	2025. 10. 20.	229,000(EUR)	1,590	364,110	266,744(EUR)	1,660	442,795
합 계				650,597			789,644

(자료: 금융위원회)

□ 이러한 결과는 2025년도에 실제 집행한 분담금 규모에 미치지 못하도록 2026년도 예산안이 편성⁵⁾되는 등 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저조한 측면에서 기인하나, 분담금 납부 대상 국제기구 중 2개 기구의 다음연도 분담금 규모가 예산안 확정 및 국회 제출 이후 결정되는 구조 상의 문제도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에그몽그룹(Egmont)’의 경우 매년 7월경,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 지역기구(APG)’의 경우 매년 8월경에 회원국이 모이는 연차 총회에서 차년도 분담금 규모가 결정되고,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경우 매년 10월경 또는 차년도 2월경 연차 총회를 개최하여 차년도 분담금 규모를 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5) FATF: 2025년도 실제 납부액 EUR 242,827 → 2026년도 편성액 229,000(EUR)
APG: 2025년도 실제 납부액 AUD 279,974 → 2026년도 편성액 260,000(AUD)

○ 이에 따라 정부가 국제기구 별 분담금 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에그몽그룹(Egmont)’의 경우 7월경 확정된 다음연도 분담금을 동 사업에 비교적 정확히 반영할 수 있으나,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 지역기구(APG)’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경우 정부의 차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이후에 다음연도 분담금 규모가 확정되면서, 예산안에는 차년도 분담금의 예상액을 추정하여 반영하고 있음.

○ 그 결과 정부의 예산안 편성 확정 이후 분담금 규모가 확정되는 ‘FATF’는 편성액 대비 약 8,000만원, ‘APG’는 편성액 대비 약 6,000만원 등 총 1억 4,0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동 사업의 국제 분담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2026년도에 예상되는 실제 분담금 집행 규모와 편성된 예산안 규모의 차액에 해당하는 1억 4,000만원을 증액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 분담금 예산안의 추계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⁶⁾: AI 기반 심사분석 지원시스템 조기 구축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는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는 자금세탁범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FIU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4,600만원(3.0%) 감소한 48억 1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FIU전산망구축운영 (정보화)	4,626	4,947	4,947	4,801	△146	△3.0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 ☐ 금융위원회는 현재 구축되어있는 FIU 정보시스템 중 심사분석시스템⁷⁾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는 ‘AI 기반 심사분석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ISP⁸⁾ 예산 3억 5,200만원을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였음.

6) 세부사업: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1332-501)

7) FIU 정보시스템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보고·분석·활용하는 심사분석시스템, 금융회사의 위험수준 진단을 위한 위험평가시스템,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위험평가시스템은 노후화로 인해 2025년도 예산에 차세대 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ISP 예산이 반영되어 집행 중임.

8) 정보화 전략계획: 조직 내의 전략적 정보 요구를 식별하고, 업무활동과 이에 대한 자료 영역을 기술하며,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통합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이의 구현을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 계획을 작성하는 체계적 접근방법(기획재정부, 한국지능정보원,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2025)」)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이라 함)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 과정에서 자금세탁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⁹⁾하여야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를 분석하여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경우 그 자료를 법집행기관에 제공¹⁰⁾하고 있음.
- 심사분석시스템은 이러한 금융회사등의 보고, 금융정보분석원의 보고자료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법집행기관에 의심자료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2002년 처음 구축한 이후 관련 장비 등이 노후화됨에 따라 2021년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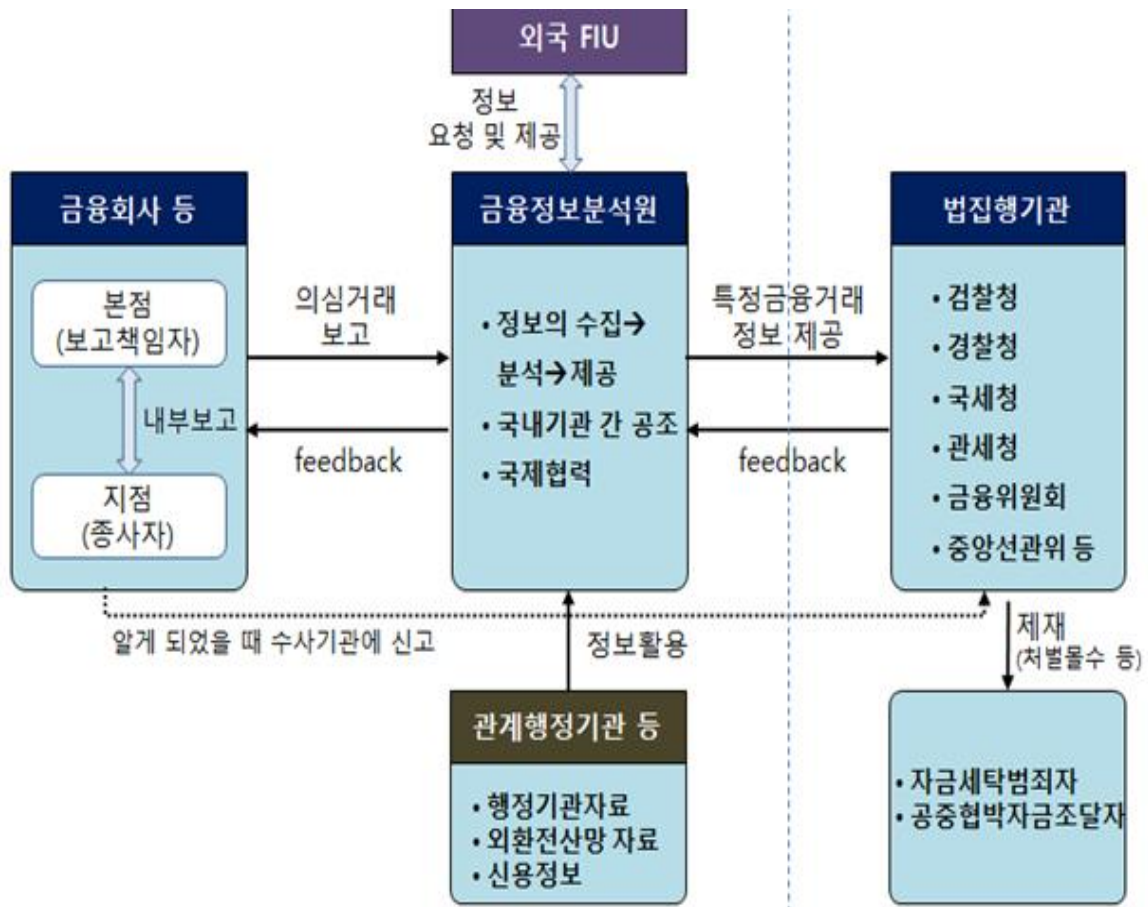
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등을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 국세청장, 관세청장, ...에 제공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각 호 생략>

〈 FIU 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흐름도 〉



(자료: 금융위원회)

-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AI 기반 심사분석 지원시스템 구축’ ISP 예산은 심사분석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가상자산 등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

- 구체적인 ‘AI 기반 심사분석 지원시스템 구축’ 방향을 살펴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구축되어있는 시스템은 가상자산 등 다양화·지능화하는 자금세탁 유형을 신속·정확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최근 가상자산 거래, 가상계좌, 전자지급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차세대 심사분석시스템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신설¹¹⁾되기 전 구축이 진행¹²⁾되어 기존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을 기초로 분석하도록 설계되었음.
 - 또한, 자금세탁과 관련한 의심거래 보고건수 및 수사기관 제공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를 심사·분석할 인력은 한정적인 상황¹³⁾에서 현행 심사분석시스템에 AI를 적용하여 전제범죄 예측, 보고서 자동생성, 혐의자 거래 흐름 분석 등의 기능을 적용하여 자금세탁 행위를 신속히 분석·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지난 5년간 자금세탁과 관련한 의심거래(STR) 보고건수 및 수사기관 제공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보고건수와 제공건수 모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2025년에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보고건수와 제공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AI 기반 심사분석 지

11) 2020. 3. 24. 공포, 2021. 3. 25. 시행

12) 차세대 심사분석시스템은 2019. 5. ~ 2020. 12. 까지 ISP, 시스템 구축이 진행되었음.

13) STR상세분석관 총 30명 중 가상자산 분석 전담인력 1명

원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임.

〈연도별 전체·가상자산 STR 보고·제공 건수 현황〉

(단위: 건)

연도	보고건수		제공건수	
	전체	가상자산	전체	가상자산
2021	884,655	199	42,595	-
2022	822,644	10,797	39,750	1,349
2023	906,462	16,076	38,676	2,324
2024	1,084,143	19,658	49,543	2,205
2025.9월	975,218	40,116	49,938	2,438

(자료: 금융위원회)

□ 다만, 금융위원회는 2021년 차세대 FIU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유지보수 용역 과정에서 가상자산 및 AI 관련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므로, 'AI 기반 심사분석 지원시스템 구축' ISP 수행 과정에서 기존 시스템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중복 투자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당초 2020년까지 차세대 FIU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당시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신설되지 않아 기존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것 위주로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FIU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STR 보고 및 분석 관련 기능을 개선해왔음.

〈연도별 가상자산 관련 심사분석시스템 기능 개선 사항〉

유지관리 용역		연도	기능개선사항	비고
용역명	집행액 (백만원)			
21년도 FIU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828	2021	· 가상자산 STR 보고서식 및 첨부거래 보고 기능 개발	
22-24 FIU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4,233	2022	· 가상자산 첨부거래 및 지갑주소 조회 기능 개발	
		2023	· 가상자산 STR 대용량 첨부거래 보고/접수 기능 개발	
		2024	· 가상자산 STR별/인물별 집계 테이블 생성 기능 개발 · 가상자산 지갑주소 기준 거래요약 조회 기능 개발	

(자료: 금융위원회)

- 아울러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될 ‘FIU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에서는 현재 자금세탁 관련 거래내역 분석에 사용 중인 혐의도 산정시스템에 최신의 AI 기술을 적용하여 최적화하는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2025년 FIU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상 AI 기능 개선 사항〉

요구사항 명	세부내용
최신AI를 적용하여 혐의도 산정시스템 기능개선(‘25년)	○ 현재 STR 거래내역 분석에 사용 중인 혐의도 산정시스템에 최신의 AI 기술을 적용하여 최적화 - 자동학습 기능적용으로 금융거래 환경 변화가 적용된 룰(Rule)을 생성하여 추천 - 기존 룰을 조합하여 변경된 룰을 생성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인공지능(AI)이 수행 - 변경된 룰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해서 적합 여부를 판단 ○ 혐의도 산정 룰 개선 - 현행 FIU정보시스템 DB 환경에 최적화하여 룰 개선 - 배치 프로그램에 부하를 최소화하여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구조 변경 - 변화된 금융환경 및 법률, 규정을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금융위원회는 ‘AI 기반 심사분석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ISP 실시, 예산 요구 및 반영,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029년에 신규 구축된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나,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 스캠 단지 등 범죄조직에서의 자금세탁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할 때, 조속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는 ‘AI 기반 심사분석 지원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ISP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2026년 중 ISP를 실시하여 2027년에 다음연도(2028년도) 예산안을 요구한 후, 2028년에 확정된 예산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9년에 운영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임.

○ 다만, 2025년도 우리위원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우리나라 가상자산거래소와 캄보디아 가상자산거래소 간 거래 규모가 2024년에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참고로,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는 정책적 중요성 및 시급성이 매우 높아 차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ISP 수립 중이라도 다음연도 예산안에 시스템 구축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AI 기반 심사분석 지원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ISP 과정에서 기존 유지보수 용역을 통해 수행한 가상자산 및 AI 관련 기능 개선과 중복되는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당초 계획한 신규 시스템 구축 일정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청년미래적금¹⁴⁾ 및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¹⁵⁾: 가입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의 정부기여금 편성 필요 등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청년미래적금 사업”은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은행의 청년미래적금 상품에 가입하여 본인 납입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에 비례한 기여금을 매칭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7,446억 2,500만원이 신규 편성됨.

〈2026년도 청년미래적금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청년미래적금	-	-	-	744,625	744,625	순증
- 기여금 지원	-	-	-	739,500	739,500	순증
- 인프라 구축	-	-	-	4,815	4,815	순증
- 청년미래적금 운영 지원	-	-	-	310	310	순증

(자료: 금융위원회)

□ “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가입하여 본인 납입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에 비례한 기여금을 매칭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228억 7,000만원(64.2%) 감소한 1,241억 8,500만원이 편성됨.

14) 세부사업: 청년미래적금(1831-891)

15) 세부사업: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1831-882)

〈2026년도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 예산	추경(A)			
청년도약계좌	312,161	347,055	347,055	124,185	△222,870	△64.2
- 기여금 지원	302,993	336,804	336,804	119,446	△217,358	△64.5
- 인프라 구축	8,664	9,707	9,707	4,737	△4,970	△51.2
- 청년도약계좌 운영 지원	504	544	544	2	△542	△99.6

(자료: 금융위원회)

□ 청년미래적금은 구체적인 상품 세부구조 설계, 전산시스템 구축, 참여 은행 모집 등을 거쳐 2026년 6월경 상품을 출시할 계획으로, 상품의 기본구조는 청년이 매월 50만원의 납입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해 6%의 매칭비율로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일반형),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¹⁶⁾한 청년의 경우 보다 강화된 12%의 매칭비율로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려는 것임(우대형).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중 ② 총 급여 7,500만원 이하¹⁷⁾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해당하면서 ③ 가구 중위소득¹⁸⁾ 200% 이하인 사람임.

16) 채용 후 6개월 이내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한 자로서, 3년을 근속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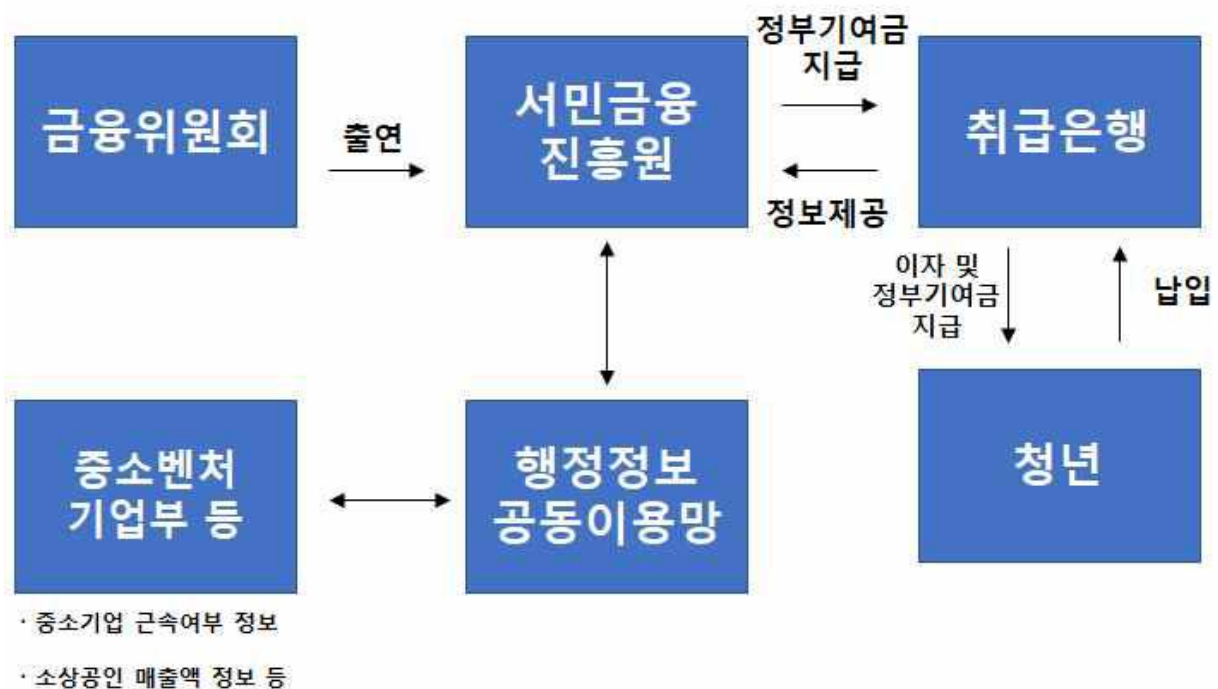
17) 단, 정부기여금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만 지급 예정

18) 2024년 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원)	2,228,445	3,682,609	4,714,65	5,729,913	6,695,73	7,618,369	8,514,994

- 만기는 기존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단축된 3년이고, 본인납입금 및 정부기여금에 대하여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¹⁹⁾하게 되며, 금융위원회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²⁰⁾.

〈청년미래적금 사업 운영구조〉



(자료: 금융위원회)

- 청년미래적금 사업은 지난 2022년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사업, 2023년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 사업과 사업목적 및 사업방식 등에 있어 유사한 측면이 다수 존재하며, 지원대상,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월 납입한도 등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존재함.

19) 적용금리는 미정

20) 2025년 10월 28일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태호의원 대표발의) 발의

〈청년자산형성 사업 간 비교〉

구분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납입기간		2022. 2. 21.~2022. 3. 4.	2023. 6.~2025. 12.	2026. 6.(예정)~
지원대상	연령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병역기간(최대 6년)은 제외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병역기간(최대 6년)은 제외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병역기간(최대 6년)은 제외
	소득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①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②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①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②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 (저축장려금) 납입액에 대해 1차년도 2%, 2차년도 4% 매칭지급(최대 36만원) ▪ (비과세혜택) 본인납입금과 저축장려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액에 대해 소득구간별 매칭지급 (3~6%, 최대 월3.3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기여금 지급 ▪ (비과세혜택) 본인납입금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액에 대해 일정비율 매칭지급 (일반형: 6%, 우대형*: 12%) (일반형 최대 월 3만원) * 6개월 이내 중소기업 신규 채용 및 3년 근속 시 ※ 총급여 6,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기여금 지급 ▪ (비과세혜택) 본인납입금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 조특법 개정 추진
상품내용		월 최대납입 50만원, 2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	월 최대납입 70만원, 5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	월 최대납입 50만원, 3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
금리		기본금리 5%(최대 6.0%)	취급 은행별 상이(최대 6.0%) 3년 고정금리, 2년 변동금리	미정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	만기일시지급	미정
취급은행		12개 은행	11개 은행	미정
비고		-	2년 이상 정실 납입자에 대한 부분인출, 신용점수 가점 부여 제도 신설('25. 7.~)	미정

(자료: 금융위원회)

- 청년미래적금 사업의 지원 대상 연령은 기존 청년자산형성 사업들과 동일(19세 이상~34세 이하)하나, 가구소득 요건이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강화되었고, 대신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별도 요건을 신설하였다는 특징이 존재함.

○ 또한,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모두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나,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매칭 비율을 3~6%로 차등 적용하는 반면,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없이²¹⁾ 가입 유형을 일반(6%)과 우대(12%)로 구분하여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음.

○ 마지막으로, 청년미래적금의 월 납입한도는 50만원으로 기존 청년도약계좌(70만원)에 비해 하향되었고, 만기 역시 단축(5년→3년)되었음.

□ 동 사업은 금융위원회가 사업시행주체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인프라 구축비용과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 대한 기여금 지급예산을 출연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해당 출연금으로 민원상담 용역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협약은행을 통하여 매월 가입자의 전용계좌에 기여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임.

○ 또한 진흥원에 출연되는 출연금 외에도 금융위원회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정책연구비 등 청년미래적금 운영 지원 비용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금융위원회가 청년미래적금 출시 후 운영협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21) 다만, 청년도약계좌와 동일하게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구간 소득자에 대하여는 비과세 혜택만 제공하고 정부기여금은 미지급할 예정

2) 검토의견

(1) 가입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의 정부기여금 편성 필요

- 청년미래적금 사업의 내역사업 ‘기여금 지원’은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이용자가 매월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비례한 일정 금액을 정부가 기여금 형태로 매칭 지급하는 예산으로,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하면 진흥원이 이를 집행하는 형태로 운영됨.
- 구체적으로, 진흥원과 협약을 맺은 은행이 매월 이용자의 본인 납입액에 비례한 정부기여금을 진흥원으로부터 교부받아 해당 은행의 청년미래적금 계좌²²⁾에 입금하여 관리하다가,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등 정부기여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도록 할 예정임.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의 출시에 따라 기존 청년도약계좌 상품의 신규 가입을 2025년 12월까지만 받고 2026년부터는 중단할 계획인데, 2025년 8월말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유지자 수는 약 192만명(누적 230만명)이고 2025년말 기준 예상²³⁾ 가입유지자 수는 약 223만명(누적 270만명 예상)임.

22) 협약은행별로 청년미래적금을 위한 별도 개인계좌 개설

23) 금융위원회 추산

- 2026년도 청년도약계좌의 신규가입 중단 및 일부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으로의 갈아타기 수요를 감안하여, 2026년도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안에는 2025년말 기준 예상 누적가입자수(약 270만명)의 절반인 135만명에 대한 기여금 소요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2026년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예산 세부 산출내역〉

2026년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예산액 = ①-② = 119,446백만원	
① 소요 기여금 372,700백만원	= 기 가입자('23~'25년 누적 가입자 약 270만명 예상) 중 '26년 평균 가입유지자(약 135만명)×납입율(91.05%)×평균 매칭비율(4.24%)×평균 납입액(59.6만원)×가입기간(12개월)
② 유보 예산 약 253,300백만원	: '25년말 예상 잔여 기여금 1,832억원, 예상 이자수입 333억원, 예상 기여금 환수액 368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예산안 편성 시 2026년도 6월²⁴⁾부터 12월까지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여금 지급 대상자 약 584만명 중 약 81%에 해당하는 473만명의 청년이 일반형 상품에 가입하고, 10만명의 청년이 우대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기여금 예산액을 총 7,395억원으로 산출하였는데, 다음 사항을 고려할 때 이러한 청년미래적금 가입수요 예측은 과다하게 추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바, 예산안의 적정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4) 6월 상품 출시 및 7월 심사를 가정하여 실제 기여금 지급은 심사·정산 후 8월부터 개시될 계획임.

〈2026년도 청년미래적금 기여금 지원 예산 세부 산출내역〉

$$739,500\text{백만원} = \{473\text{만명}(\text{'26년도 일반형 가입자}) \times \text{기여금 } 30,000\text{원}(6\%) \\ + 10\text{만명}(\text{'26년도 우대형}^{1)} \text{ 가입자}) \times \text{기여금 } 60,000\text{원}(12\%)\} \times 5\text{개월}$$

주1)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중 6개월 이내 중소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3년 근속한 경우 가입 가능
(자료: 금융위원회)

- 먼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지원대상 연령은 동일하나 소득요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청년미래적금의 가구소득 요건이 청년도약계좌보다 강화되어 있는 대신,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근로소득자 외에 사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요건이 신설되었음.
- 소득 요건 차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2024년 말 기준으로 추계한 지원 대상자 수에도 일부 차이가 발생하는데,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정부 기여금 지급 대상이 약 640만 명으로 추산되는 반면 청년미래적금의 정부 기여금 지급 대상은 청년 소득자 547만 명과 소상공인 37만 명을 합하여 총 약 584만 명 수준으로서 청년도약계좌의 지원 대상 규모보다 적음.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의 지원대상 비교〉

구분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지원대상	연령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병역기간(최대 6년)은 제외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병역기간(최대 6년)은 제외
	소득	①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②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총급여 6,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기여금 지급	①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②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총급여 6,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기여금 지급
대상자 수 (2024년 기준)		▪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 - 청년 소득자 수: 668만명	▪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 - 청년 소득자 수: 615만명 (중소기업 신규채용자 10만명³⁾ 포함) - 청년 소상공인 수: 37만명
		▪ (기여금 지급대상) - 소득자 수: 640만명	▪ (기여금 지급대상) - 소득자: 547만명²⁾ - 소상공인: 37만명

- 주1)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본인납입금에 대한 비과세혜택 제공
- 주2) 정부안 편성 당시 200% 이하 소득구간 자료가 부재하여 근사치인 220% 이하 가구소득 구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대상자 수는 604만명이었음
→ 이에 따를 시 청년미래적금 기여금 지급대상 총 약 640만명 수준으로 추산
- 주3) 가입조건이 유사한 고용노동부 舊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서의 2018~2022년 연평균 가입자 수로 추정

(자료: 금융위원회)

- 청년도약계좌의 출시 이후 2025년말까지의 예상 누적 가입자수²⁵⁾가 총 270만명 수준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전체 지원대상 범위가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청년미래적금의 2026년도 하반기 신규 가입자수가 48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25) 2023년 6월 출시 이후 약 2년 6개월 간의 누적 가입자 수

○ 물론,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본인납입액에 대한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3%~6% → 6% 또는 12%),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아(5년→3년) 납입에 따른 부담이 적은 측면이 있어 청년층의 가입수요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일정 부분 존재할 것으로 보이나,

청년미래적금의 매칭비율이 높은 대신 월 납입한도가 줄어듦(70만원 → 50만원)에 따라 가입자 비중이 가장 높은 최저 소득구간에 대한 절대적인 지원액이 감소²⁶⁾된 측면 역시 존재하고, 청년도약계좌 역시 2025년부터는 3년 이상 가입 유지 시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및 정부기여금 일부(60%)를 지원하고 있어 만기 단축에 따른 수요 증대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됨.

26) 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구간의 경우 총 기여금 지원금액이 감소함(33,000원→30,000원). 참고로, 2025년 7월말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소득구간별 가입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천명)

소득 구간별	가입자 수 (비중)
2,400만원 이하	1,242 (55.2%)
2,400만원 초과 ~ 3,600만원 이하	561 (24.9%)
3,600만원 초과 ~ 4,800만원 이하	318 (14.1%)
4,8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112 (5.0%)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	17 (0.8%)
합계	2,250 (100%)

※ 청년희망적금 연계 일시납입자 27.9만명 포함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의 지원내용 비교〉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월 납입한도	70만원		50만원	
정부 기여금 매칭률	- 3%~6%(소득구간별 매칭한도 및 매칭률 상이), - 매칭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월 납입한도(70만원) 까지 3% 추가적용		일반형 6%, 우대형 12%	
월 최대 정부 기여금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33,000원	일반형 (소상공인 포함)	30,000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29,000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25,200원	우대형	60,000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21,000원		
비과세 혜택	본인납입금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 세혜택		조특법 개정 추진 중	
만기	5년		3년	
금리	취급 은행별 상이(최대 6.0%) 3년 고정금리, 2년 변동금리		미정	

- 다음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6년에도 청년도약계좌의 기존 가입자 중 약 135만명²⁷⁾이 가입을 유지할 것을 전제로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 예산 역시 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간 동시가입은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35만명을 유지하면서 청년미래적금 신규가입자 483명을 유치한다는 목표 추계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7) 연 평균치

□ 높은 기여금 매칭률, 단축된 만기 등 가입 유인책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수년간의 누적 가입자가 270만명 수준으로 추계되는 청년도약계좌의 성과를 크게 상회하는 483만명을 단 6개월 안에 신규 가입시킨다는 목표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신규 가입인원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추계를 바탕으로 청년미래적금 정부기여금 예산안을 적정 규모로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간 연계가입 방안 등 조속한 세부 계획 수립 필요

□ 기존의 청년도약계좌는 상품이 출시된 2023년 6월 이후 매월 신규 가입자를 받아 만기인 5년이 도과²⁸⁾하면 정부기여금 및 이에 상응하는 이자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청년미래적금을 신규 출시하게 되면서 2026년 1월부터는 기존의 청년도약계좌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2026년 6월부터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개시할 계획임.

□ 그런데 2025년 10월 현재, 청년도약계좌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기존 가입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연계가입방안 및 세부계획이 부재한 상황인바²⁹⁾,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이 정부기여금 및 이자 비과세 등 핵심 혜택을 승계하면서 신규 상품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을지 여부가

28) 2025년부터는 3년 이상 가입한 자에 대하여 중도해지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편됨.

29)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간 논의를 진행하여 가입요건, 가입심사방안 등 세부계획을 구체화하여 2026년도 1분기 중 상품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임.

불투명한 상황이며, 이러한 정책 전환기의 불확실성은 청년 자산형성 상품 수요층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만기까지 장기간 남은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물론, 2025년 하반기 신규 가입을 계획했던 청년층 역시 기존 상품의 납입 지속, 중단, 혹은 신규 상품 가입 대기 사이에서 결정을 유보하게 되어 정책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는 꾸준한 저축을 통한 안정적 자산 형성이라는 정책 목표의 효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참고로, 과거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의 연계 당시에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및 만기 시점이 특정 기간으로 한정되어³⁰⁾ 일괄적인 연계 방안 수립이 비교적 용이하였으나,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상시 가입 방식으로 운영되어 가입자별 만기 시점이 상이하고 잔여 계약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다는 특수성이 존재함.

□ 따라서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청년 수요층의 혼선을 해소하고 청년층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중단 없이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기존 가입자들의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존 혜택을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다 세밀한 연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30)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당초 상시 가입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가입기간이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의 특정 기간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이들 가입자의 만기 역시 2년 후 특정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었음.

(3) 청년자산형성 사업 간 인프라 구축 예산액 배분 조정 필요 등

- 청년미래적금 및 청년도약계좌 사업은 각각 내역사업 ‘인프라 구축’ 예산을 편성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소득심사센터, 콜센터 운영 등 가입자 지원·상담 업무를 수행할 계획임.
- 구체적으로, 인프라 구축 사업에는 소득심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신규인력 인건비, 상품 가입을 위한 자격조회·연계기관 정보 활용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 가입상담 콜센터 운영을 위한 민원상담 용역비, 기타 홍보·연구·임차료 등 운영비를 위한 경상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음.
-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의 청년자산형성 사업별 인프라 구축 예산 배분 내역을 살펴보면,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에 분산 편성되어 있는 관련 예산이 실제 집행소요를 고려하지 않고 비합리적으로 배분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예컨대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2026년 신규 가입은 중단되나, 기존 가입자의 개인소득 유지심사, 중도해지 상담·접수 등 지속적인 콜센터 업무 수요가 잔존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상담 용역비 예산(41억 5,500만원) 전액이 청년미래적금 사업에만 편성되고 청년도약계좌 사업에는 배정되지 않았음.

- 또한 신규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자 모집 및 운영에 필수적인 콜센터 통신비(5억 2,200만원), 임차료(9억 3,400만원), 연구용역비(2억 500만원) 등 핵심 경상운영비는 청년도약계좌 사업에만 편중 배정되어 있는바, 각 사업의 실제 집행 소요를 반영하기보다 예산안 편성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결과로 보임.

〈청년미래적금 및 청년도약계좌 인프라 구축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2026년 예산 총합	청년 도약계좌	청년 미래적금
1. 인건비	1,320	1,051	269
2. 전산구축비	1,845	1,845	-
3. 민원상담 용역비	4,155	-	4,155
4. 경상운영비	2,232	1,841	391
- 운영비	1,862	1,471	391
일반용역비 · 홍보콘텐츠 제작비, 광고매체비	386	-	386
공공요금 및 제세 · 콜센터 통신비	522	522	-
임차료 · 연간 콜센터 1개층 임대료 및 관리비	934	934	-
일반수용비 · 회의 준비용 소모품 및 회의 참석수당(10백만) · 인쇄비 등(5백만)	15	15	-
복리후생비	5	-	5
- 여비(국내여비)	5	5	-
- 업무추진비	4	4	-
- 연구용역비	205	205	-
일반연구비 · 청년층 인식조사, 중도해지자 설문조사,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등	205	205	-
- 유형자산	156	156	-
자산취득비 · PC, 가구 등 자산취득 및 사무환경 개선	156	156	-
계	9,552	4,737	4,815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청년자산형성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별 적정 규모의 출연금 교부액을 산출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2026년 6월 상품 출시 이전에 신규 가입심사 및 연계기관 데이터 제공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거나, 2026년도 청년미래적금 예산안에는 이를 위한 전산구축비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을 통해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을 진행중인바³¹⁾, 향후 ISP 중간산출물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적정 규모의 전산구축비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³²⁾.

31) 용역기간: 2025. 8. 25.~2025. 12. 5.

전산시스템 구축 ISP 수립 용역의 경우, 기획재정부 사전 협의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 자체예산을 전용하여 용역을 수행중임.

32) 참고로, 지난 청년도약계좌 전산시스템 구축 당시에는 사업관리(PMO) 및 감리 용역, 응용프로그램 개발, 인프라(SW 및 HW) 구매를 위한 예산 총 147억 4,000만원이 집행된 바 있으며, 이번 청년미래적금 전산시스템 구축 시에는 이보다 적은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4.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³³⁾: 취급기관 확대를 위한 사업 준비 철저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사업”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에게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대출을 공급함으로써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1,000억원이 신규 편성됨.

〈2026년도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	-	-	100,000	100,000	순증

(자료: 금융위원회)

- 그간 서민금융진흥원은 정부 출연금(일반회계 및 복권기금)과 금융권 출연금을 보증재원으로 한 다양한 정책서민금융 보증상품을 공급해왔으며, 2025년도 중에는 총 6조 2,100억원 규모의 보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33) 세부사업: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1831-889)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재원별 보증공급액〉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예상)
보증재원 합계	4,470	5,186	5,221	6,688	본예산 7,866 → 1차 추경 8,381
금융회사 출연금	1,800	2,296	2,741	3,028	4,350
정부 출연금	2,670	2,890	2,480	3,660	본예산 3,516 → 1차 추경 4,031
일반회계	-	480	280	1,460	본예산 1,460 → 1차 추경 1,825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	480	280	560	본예산 560 → 1차 추경 925
햇살론15	-	-	-	900	900
복권기금	2,670	2,410	2,200	2,200	본예산 2,056 → 1차 추경 2,206
근로자햇살론	2,080	2,050	1,750	1,750	1,750
햇살론유스	590	360	450	450	본예산 306 → 1차 추경 456
보증상품 대출공급액	49,744	69,400	67,032	51,886	본예산 60,000 → 1차 추경 62,100

(자료: 금융위원회)

- 특히 2021년 6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함)」 개정³⁴⁾을 통해 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융회사의 범위가 기존 저축은행·상호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었음.

〈금융회사 출연 현황〉

(단위: 억원)

업권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예상)
은행	1,078	1,184	1,291	2,130
보험	191	190	217	283
여신전문금융	166	159	178	241
상호금융	736	729	780	1,090
저축은행	126	478	562	606
합계	2,296	2,741	3,028	4,350

(자료: 금융위원회)

34) 법률 제18227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0. 9. 시행(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조항의 유효기간: 2026. 10. 8.까지)

○ 그런데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진흥원에 출연하게 된 금융기관도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상품을 지속적으로 별도 신설³⁵⁾하는 과정에서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가 복잡해진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상품을 이용하는 국민이 혼란이나 불편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행 정책서민금융 상품 체계에 따른 불편사항(예시)〉

- ❶ 근로자햇살론(저축·상호·보험 취급) 신청이 가능한 근로자도 은행 방문시 은행은 근로자햇살론을 취급하지 않아 금리가 더 높은 햇살론15 신청
 - ※ (근로자햇살론) 대출금리 11.5% 內 + 서금원 보증료율 2.5%(최초 납부) = 14% 內
(햇살론15) 대출금리 6% + 서금원 보증료율 9.9% = 15.9%
- ❷ 신용도가 상당히 낮아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국민도 일단 햇살론15 신청이 거절된 후에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
 - ※ (햇살론15 지원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최근 3개월 내 햇살론15 보증신청이 거절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
- ❸ 신용평점 하위 10%를 초과하는 국민은 햇살론15 신청이 거절되어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이 불가하여 사각지대 발생

(자료: 금융위원회)

□ 이에 금융위원회는 상품 유사성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6년도부터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체계를 통합·개편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35) 근로자햇살론(2010. 7.), 햇살론15(2019. 9.), 햇살론유스(2020. 1.), 햇살론카드(2021. 10.), 최저신용자 특례보증(2022. 9.), 불법사금융예방대출(2023. 3.), 햇살론119(2025. 4.)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 개편방향〉

소득·신용	^①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②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1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
재원	민간	민간 + 정부	민간 + 정부	정부	정부
업권	은행	저축상호보험	은행	은행·저축	은행
현행	햇살론뱅크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유스



개편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햇살론유스
소득·신용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②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현행 유지)
재원	민간	정부	
업권	全 업권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성격이 유사한 기존 서민금융 보증부대출상품을 민간재원을 통해 공급하는 햇살론 일반보증, 정부재정을 통해 공급하는 햇살론 특례보증 2개로 통합·조정하고, 상품별로 취급하는 금융업권이 상이했던 기존과는 다르게 햇살론 일반보증 및 특례보증을 모든 금융업권이 취급하도록 할 계획임.
- 기존 ‘햇살론15’ 상품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은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으로 통합되어, 소득기준은 상대적으로 강화(연소득 3,500만원 이하)되고 신용기준은 상대적으로 완화(신용 하위 20% 이하)될 계획임.

- 상품 통합 이후 2026년에는 햇살론 특례보증 및 햇살론유스에 정부 재정 총 4,500억원을 투입하여 2.63조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인데,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으로 총 1,000억원, 복권기금 계획액으로 총 3,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서민금융 정부재정 및 보증공급 규모 변화〉

(단위: 억원)

구분	2025년					2026년(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유스	소계	햇살론 특례보증	햇살론 유스	소계
일반회계	925	900	-	-	1,825	1,000	-	1,000
복권기금	-	-	1,750	456	2,206	3,039	461	3,500
정부재정	925	900	1,750	456	4,031	4,039	461	4,500
보증공급	2,800	6,500 ¹⁾	11,000 ²⁾	3,000	23,300	23,300	3,000	26,300

주1) 금융회사 출연금을 통한 공급규모(4,000억원) 합산시 10,500억원

주2) 금융회사 출연금을 통한 공급규모(22,300억원) 합산시 33,300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 ☐ 2025년 현재 햇살론15 상품은 은행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은 은행 및 저축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취급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음.

〈햇살론15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취급기관 현황〉

상품	업권	협약 금융기관	협약체결일
햇살론15	은행	하나은행	2019. 9. 2.
		제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2020. 10. 5.
		케이뱅크	2025. 7. 31.
최저특례	은행	광주은행	2022. 9. 29.
		전북은행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2022. 9. 29.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 2026년도부터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햇살론15 상품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으로 통합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상품 취급 업권 역시 금융업권 전체로 확대될 예정으로,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자의 이용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 개편 전후 비교〉

구분	개편 전(∼2025년)		개편 후(2026년∼)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사업 목적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분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연체 경험 등으로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금융애로 완화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제도권으로 포섭하여 불법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
재원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취급 기관	은행	은행, 저축은행	모든 업권 (협약 금융회사)
지원 대상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 무관) 또는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기존정책서민금융 상품(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자	→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축·임·어업인, 연금소득자 등 상환의지가 있는 신용평점 하위 20%이하 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자
대출 한도	최대 1,400만원* * '25년말까지 최대한도 600만원 상향 (1,400만원→2,000만원)	최대 1,000만원* * 최초 500만원 內 6개월 후 추가대출	최대 1,000만원
대출 금리	15.9% (보증료 9.9% 포함)	15.9% (보증료 7.9∼8.9% 포함)	15.9% 이내 (보증료 7.9∼9.9% 포함)
보증 비율	100% (위탁 및 직접보증)	100% (직접보증)	100%

(자료: 금융위원회)

□ 다만, 금융위원회는 사전에 적극적인 업권별 협의를 진행하여 상품체계 개편에 따른 취급기관 확대 및 보증공급 강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상호금융·보험사에서는 개편 전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근로자햇살론 상품만을 취급하였으나, 개편 후에는 근로자햇살론과 요건이 동일한 햇살론 일반보증 상품 외에 근로자햇살론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신용요건이 강화³⁶⁾되고 수취금리가 낮은³⁷⁾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됨.
- 또한 카드사의 경우 개편 전 연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 신용평점 하위 20%인 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햇살론카드 상품만을 취급하였으나, 개편 후에는 카드사·캐피탈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기관 전체가 햇살론 일반보증·특례보증 상품을 통한 정책성 대출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됨.
- 기존 취급상품에 비해 수취금리가 낮아 수익성이 저하될 경우 신규 특례보증 상품 취급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금융위원회는 낮은 수취금리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이 정책서민금융 공급 채널로서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 확대를 위한 실효적인 유인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보증부 서민대출 상품을 취급해 본 경험이 부족한 기관들 역시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비재무

36) (근로자햇살론) ① 연소득 35백만원 이하(개인신용평점 무관) 또는 ②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근로소득자

→ (햇살론 특례보증)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축·임·어업인, 연금소득자 등 포함)

37) (근로자햇살론) 상호금융·보험사 수취금리 약 6~9%(2025년 2분기 기준)

※ 상품설계상 대출금리 최대로 적용 시 11.5%까지 수취 가능

→ (햇살론 특례보증) 대출금리 15.9%(최대) 적용 시 보증료를 제외한 수취금리 약 6~7%

※ 만일 대출금리를 15.9%보다 낮게 적용할 경우 수취금리는 6~7% 수준보다 낮을 수 있음.

적 인센티브³⁸⁾를 부여하는 등 협약 체결 유인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2026년도 햇살론 특례보증 공급을 지원하는 동 세부사업의 명칭은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인데, 햇살론유스 상품 보증공급을 담당하는 별도의 복권기금 사업³⁹⁾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세부사업의 명칭에 ‘햇살론유스’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관리상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보임.

○ 금융위원회는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일반회계 예산을 햇살론유스에도 투입할 가능성이 있어, 기술적인 차원에서 동 사업이 서민금융 예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사업명을 미리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로 설정하였다는 설명임.

○ 그러나 2026년도에 동 일반회계 예산은 햇살론유스 지원에 사용되지 않을 예정인바, 불확실한 미래의 집행 가능성만을 근거로 사업명을 오인의 가능성이 있게끔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이 면밀하게 수립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실제 집행내용과 사업명이 불일치할 경우 재원별 성과 구분이 모호해지고 사업관리상 혼선이 유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위

38) 정부 포상이나 공식인증, 주요 경영평가 지표에 상생금융 기여도 항목 반영, 국책사업 위탁운용사 선정 시 가산점 부여 등

39) 2026년도 복권기금 내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6346 - 328)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햇살론 특례보증’ 예산 3,039억원, ‘햇살론유스’ 예산 461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원회는 예산안 편성 시 실제 집행내용과 일치하도록 사업명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 사업 예산의 중장기적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5.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⁴⁰⁾: 취약채무자 법률대응권 보장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성과지표 마련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대리인(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을 무료로 지원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구제를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4,700만원(22.3%) 증가한 19억 6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628	1,205	1,559	1,906	347	22.3

(자료: 금융위원회)

- 동 사업은 크게 ① 불법추심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채무자(또는 관계인)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거나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는 “대리인 선임” 사업과 ②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 확인 등 소송 수행을 위한 “부수사건 소송대리” 사업으로 구분됨.

40) 세부사업: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1833-301)

○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⁴¹⁾에 따라 채무자가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가 아닌 대리인에게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⁴²⁾로, 정부는 2020년부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무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해주는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음.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부터 채무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에 대해서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였으나, 관계인 지원의 경우 지원건수가 2024년도 10건, 2025년 8월까지 4건에 그치는 등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는 관계인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이를 채무자 본인 대리인 선임 및 부수사건 소송대리 예산을 보강하는 데 활용하였음.

4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옹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42) 동 제도는 2014년도에 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 등을 방지함으로써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대리인 선임” 사업과 함께, 채무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불법추심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어 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소송을 대리하는 “부수사건 소송대리”도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해오고 있음.

〈2026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예산안 산출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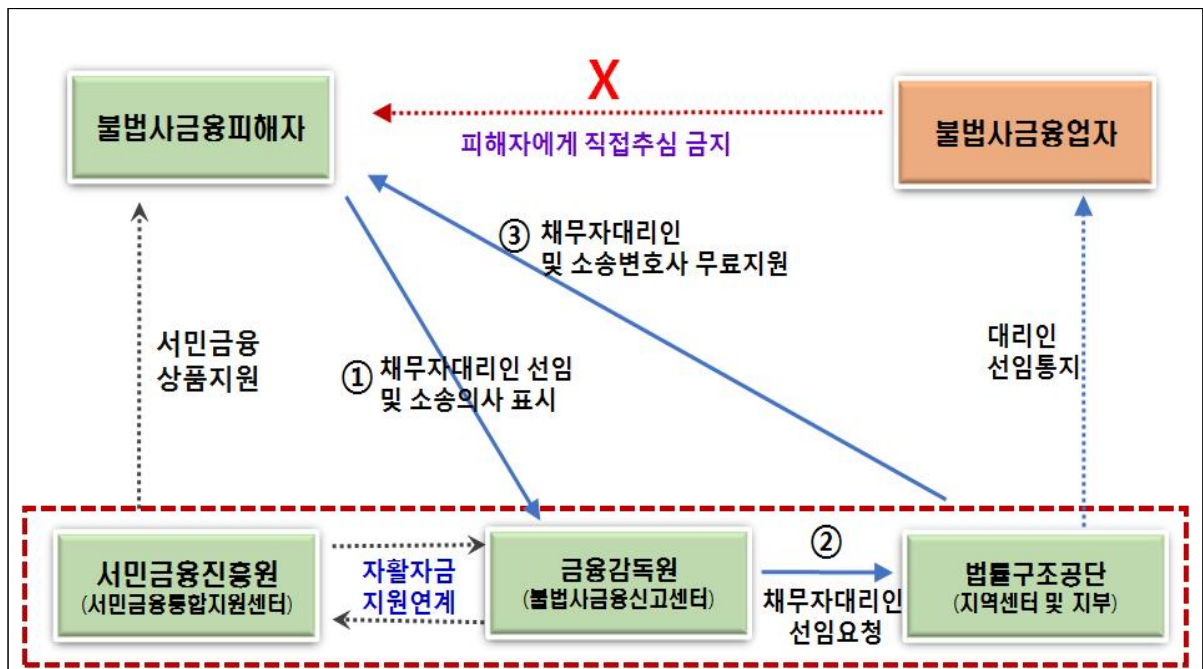
구 분		산출내역	
		2025년도 제2회 추경	2026년도 예산안
대리인 선임	본인	5,411건×208천 원=1,125,000천 원	8,911건×208천 원=1,853,488천 원
	관계인	4,560건×70천 원=319,200천 원	18건×70천 원=1,260천 원
부수사건 소송대리		28건×497천 원=13,916천 원	110건×466천 원=51,260천 원
홍보비		100,000천 원	-

(자료: 금융위원회)

- 구체적으로, 동 세부사업의 운영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하 “채무자등”이라 함)이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또는 소송 의사를 표시하면, 금융감독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요청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또는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면, 금융위원회가 공단에 소요비용을 보조하는 방식⁴³⁾으로 이루어짐.

43) 예산 비목: 민간경상보조(320-01)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운영체계〉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액 12억 5,500만원 중 45.5%인 5억 7,100만원만을 실제 사업 수행에 활용하는 데 그치는 등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으나, 2024년도 말부터 신청요건 완화, 신청창구 확대 및 홍보 강화 등을 실시한 결과 2025년 상반기부터는 집행실적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현황〉

(단위: 건)

연도	채무자대리			관계인지원			소송대리			계		
	신청	지원	종결	신청	지원	종결	신청	지원	종결	신청	지원	종결
2020	1,211	893	30	-	-	-	41	26	13	1,252	919	43
2021	5,560	4,747	1,363	-	-	-	97	94	97	5,657	4,841	1,460
2022	5,184	4,473	3,790	-	-	-	41	37	32	5,225	4,510	3,822
2023	3,746	3,236	5,761	-	-	-	14	13	23	3,760	3,249	5,784
2024	3,314	2,924	1,850	11	10	-	164	162	88	3,489	3,096	1,938
2025 (~10.)	9,607	8,691	3,741	6	6	9	122	122	129	9,735	8,819	3,879

(자료: 금융위원회)

□ 다만, 동 사업은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로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건수’를 집계하고 있는데, 취약채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하여는 예산 집행실적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실효적인 성과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의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 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채무자대리인 법률구조 실적 (단위: 건)	목표	5,020	3,865	4,152	3,911	8,911	최근 5개년 (‘21~’25) 채무자대리인 법률구조 실적 및 예산 고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건수(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실적 통계
	실적	4,510	3,249	3,096	-	-			
	달성도	89.8%	84.1%	74.6%	-	-			

(자료: 금융위원회)

-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⁴⁴⁾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이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비율이 약 1.1%에 그치는 등 동 제도가 단순 대응단계에 머물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율을 관리하고 이를 결산상 성과지표로 반영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를 의결하였음⁴⁵⁾.
- 또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에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부대의견으로 동 사업의 예산 집행률 제고뿐만 아니라 동 사업의 본래 목적인 취약채무자 법률대응권 보장 및 불법사금융 예방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 금융당국과의 지체없는 연계 등 대리인 선임 이후 사후관리체계 방안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의결한 바 있음⁴⁶⁾.
- 실제로 「2024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이용자 대상 실태조사」⁴⁷⁾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26.7%는 동 사업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면서,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로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 이후 불법추심행위가 계속될 경우 제재조치가 미흡함”,

44) 2025년 8월 26일 정무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였음.

45) **(지적사항)** 지원 인력 확대, 신청절차 간소화 등 일부 제도개선을 통하여 최근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 건수가 증가하였으나, 대리인 지원이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비율이 약 1.1%에 그치고, 소송 전 구조건수가 2024년과 2025년 모두 0건으로 파악되는바, 동 제도가 단순 대응단계에 머물고 있음.

- 또한 채무 종결 여부 및 채추심 발생 여부에 대한 통계가 관리되지 않고 있어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율 관리 등 사후관리에 공백이 존재함.

(결산 시정요구사항: 제도개선)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에 대한 채추심 발생 여부를 표준 양식으로 의무 집계하고, 이를 결산상 성과지표로 반영할 것

46) **(추경안 부대의견)**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률 제고뿐만 아니라 동 사업의 본래 목적인 취약채무자 법률대응권 보장 및 불법사금융 예방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 금융당국과의 지체없는 연계 등 대리인 선임 이후 사후관리체계 방안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7) 금융위원회(궐립 위탁 설문조사 수행), 2024. 10.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된 이후에도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계속 연락이 왔음” 등을 든 점이 확인됨.

○ 또한 과거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에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시 해당 사건에 연루된 불법사금융업자를 적극적으로 경찰에 넘겨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성과에 불법사금융업자 적발 실적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의결하였음⁴⁸⁾⁴⁹⁾.

○ 한편, 동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3년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데⁵⁰⁾⁵¹⁾, 보조사업 연장평가결과에도 역시 동 사업의 성과관리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상황임.

- 2022년 5월 처음으로 실시한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는 동 사업의 초기 실행행위가 부진하므로 일정 수준의 예산 규모 감축이 필요하

48) (지적사항) 동 사업의 2020년 집행액은 예산의 14.3%인 1억 6,400만원으로, 당초 예상 수혜자 수 2,800명의 32.7%인 915명을 지원하는 데 그쳐 2020년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결산 시정요구사항: 제도개선)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시 해당 사건에 연루된 불법사금융업자를 적극적으로 경찰에 넘겨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성과에 불법사금융업자 적발 실적을 포함할 것

49)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채무자 대리인 선임신청 접수 시 불법사금융업자임이 확인된 경우 수사의뢰를 수행하고, 해당 실적을 예·결산 공통요구자료 및 예산성과보고서에 포함하고 있음.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5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제11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는 「보조금법」 제15조 및 부칙 제2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보조금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며 구체적인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과 평가결과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제①항의 연장평가 결과를 보조금 관련 예산편성 및 기타 재정운용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고, 동 사업이 ‘지원 건수’를 성과관리 지표로 설정하고 있어 투입 지표의 한계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 2025년 8월 실시한 보조사업 연장평가(재평가) 결과에 따르면 최근 제도개선을 통해 동 사업의 지원수요가 증가한 점이 확인되므로 예산 감축은 불필요하나, 현행과 같이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실적을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사업 투입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조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음.

□ 이와 같이 취약채무자의 법률대응권 보장 및 불법사금융의 예방·근절이라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의 본래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성과관리방안을 개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및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금융위원회는 예산안 편성 시 사업 집행률 개선을 위한 보완 외에도 실질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정량지표를 성과지표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⁵²⁾ 시행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건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상담신청 건수 등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바, 금융위원회는 취약 채무자들의 법률대응권 보장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사

52)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일부개정

(개정 주요내용)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대부업 등록기준 상향 등

후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후 신고·상담 추이〉

구 분	시행 이전 2개월 (5. 22.~7. 21.)	개정 대부업법 시행 (7. 22.)	시행 이후 2개월 (7. 22.~9. 21.)	증가율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2,744건	→	3,652건	+33.1%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신청	545명		668명	+22.6%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상담신청	368명		507명	+37.8%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 10. 2.)

-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는 현행과 같이 단순히 채무자대리인 선임 건수를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대신, 대리인 선임 이후 재추심 발생률(또는 건수) 등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관리·집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회 등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동 사업의 효과성을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적극적으로 발굴·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⁵³⁾: 집행실적을 고려한 감액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사업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⁵⁴⁾ 및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여 민간투자 마중물을 위한 모펀드를 조성하고, 모펀드가 민간, 개별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자펀드를 결성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발굴한 개별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모펀드 조성에 소요되는 3차년도 중앙정부 부담분을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하기 위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과 동일한 1,000억원이 편성됨.

〈2026년도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산업은행 출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

(자료: 금융위원회)

- 정부는 2023년 7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용 방안’⁵⁵⁾을 마련하여 재정의존도가 높은 단발적·소규모 지역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출범하였음⁵⁶⁾.

53) 세부사업: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1431-301)

54) 지방자치단체 공동기금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의미함.

55) 관계부처 합동,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2023. 7. 12.

○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발굴한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중앙정부가 마중물 투자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간(2024년~2028년) 총 1조 5,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매년 중앙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⁵⁷⁾과 한국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을 출자할 계획으로, 2024년부터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되고 있음.

□ 조성된 모펀드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하여 자펀드를 결성하되⁵⁸⁾, 지방자치단체도 원하는 경우에는 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결성된 자펀드는 광역도 또는 광역도 외 지역개발 프로젝트⁵⁹⁾에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투자(출자 또는 대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 때, 지역개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시행사, 건설사 등) 및 금융기관 등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을 설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개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추진 주체인 SPC의 출자금과 자펀드 투자금(출자, 대출), PF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며, PF 대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특례 보증을 제공하여 보다 낮은 금리의 대규모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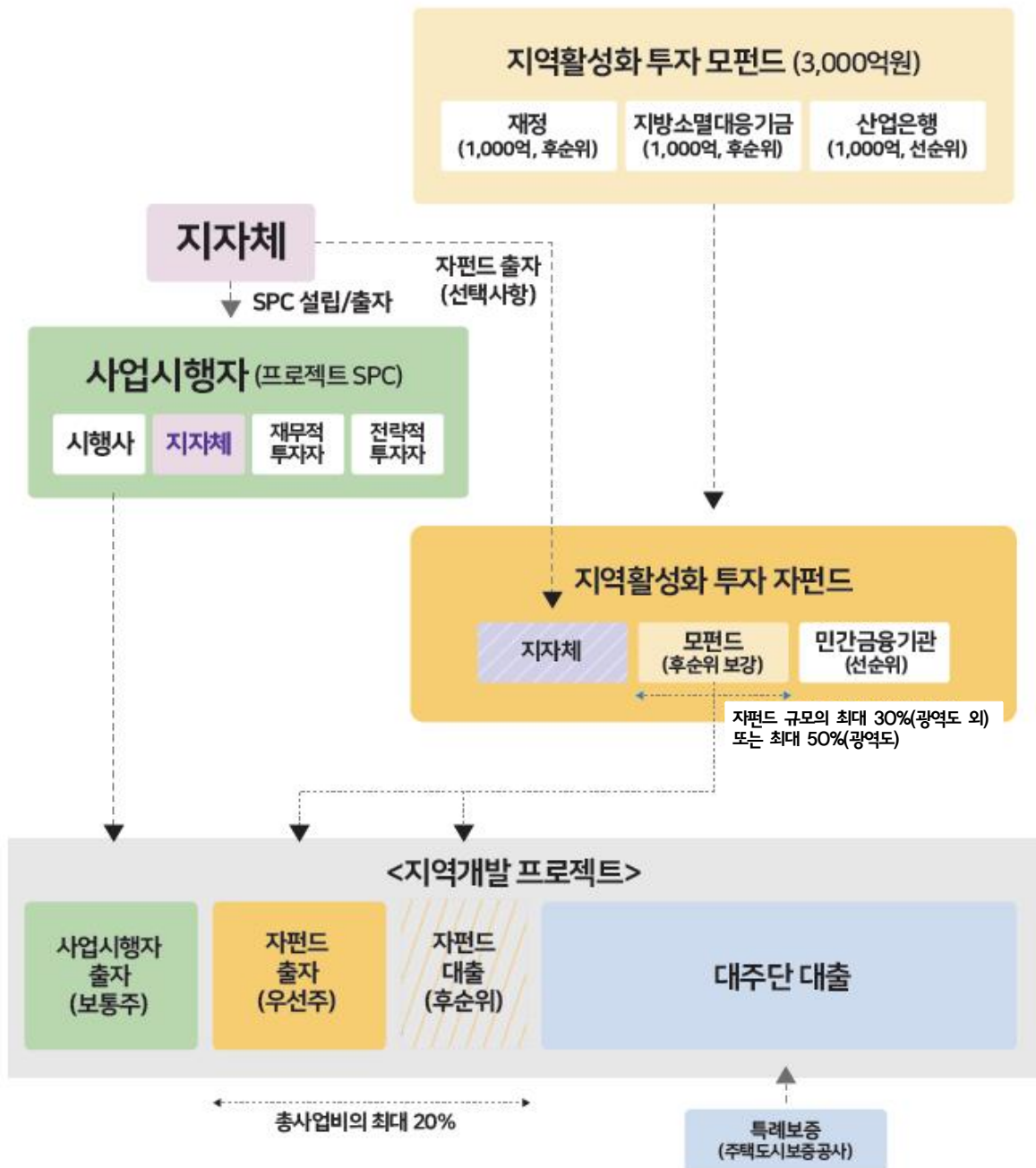
56) 이하 사업설명은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를 참조함.

57)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낙후지역 등의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2년부터 신설된 기금임.

58) 모펀드는 광역도 외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전체 결성 규모의 30%까지, 광역도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후속조치 주요내용」).

59) 펀드의 취지와 공익성 등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광역지자체가 자유롭게 프로젝트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수도권 소재, 향락시설, 단순 분양형 사업 등은 제외(「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후속조치 주요내용」)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구조도 >



(자료: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종합안내, 기획재정부)

2) 검토의견

□ 동 사업에 대하여는 2024년 및 2025년 프로젝트 선정,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하고, 이미 출자된 예산으로 2026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2026년도 예산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지역활성화 프로젝트 선정 및 자펀드 결성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1차년도인 2024년에는 아래와 같이 5개의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음. 이에 따른 모펀드 약정액은 약 2,418.5억원 수준으로, 모펀드 한도(3,000억원)를 거의 소진한 것으로 보여짐.

〈 2024년 선정 지역활성화 프로젝트 개요 〉

지역개발 프로젝트명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주1)}	충남글로벌 홀티콤플렉스 1단계
위치	단양군 단양읍	경북 구미시	전남 여수 묘도	경북 경주	충남 서산
투자기간	2026년~2028년	2025년~2028년	2024년~2028년	2026년~2028년	2026년~2026년
프로젝트 내용	단양역 역세권 신 성장 관광벨트 조 성(호텔 및 어드 벤처 시설 개발)	노후화된 구미 1 국가산업단지에 입주기업 임직원 등을 위한 신규 주거시설 건립	연 300만톤 규모 의 LNG를 여수· 광양 국가산단에 공급하기 위한 접 안시설, LNG 저 장탱크 및 기화설 비 등 구축	국내 최대 107.9 MW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단일 규모 국내 최대 스마트팜 단 지 및 농업융복합 단지 건설
총사업비	1,133억원 →680억원	1,239억원 →925억원 →876억원	1조 4,362억원	7,716억원 →8,191억원	1,300억원 →900억원
모펀드 약정액	68억원	39억원	1,435.5억원	786억원	90억원

주: 2025년 10월말 기준

주1) 경주 프로젝트는 2025년 10월말 현재 재심사 중이며, 상기 표의 내용은 재심사 신청 내용을 반영한 것임.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 그러나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사업 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2024년 내에는 자펀드 결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3건의 자펀드만 조성된 상황임.

〈 자펀드 결성 및 투자집행 경과 〉

	단양	구미	여수	경주 ^{주1)}	서산 ^{주2)}
최초 선정연도	2024년	2024년	2024년	2024년	2024년
펀드 결성 예정액	(최초) 226억원 (재) 136억원	(최초) 178억원 (재선정) 178억원 (재재선정) 78억원	2,872억원	(최초) 1,543억원 (재선정) 1,572억원	(당초) 260억원 (신규) 180억원
심사일	(최초) '24.2.16 (재선정) '24.11.26	(최초) '24.2.22 (재선정) '24.11.26 (재재선정) '25.1.23	'24.8.29	(최초) '24.11.26 (재선정) 심사중	(당초) '24.12.24 (신규) '25.9.26
1차연장	(최초)'24.6.16~'24.9.19 (재선정)'25.3.28~'25.6.27	(최초)'24.6.22~'24.9.24 (재선정)'25.3.28~'25.6.27 (재재선정)'25.5.27~'25.8.25	'25.1.3 ~'25.4.2	(최초)'25.3.28~'25.6.27 (재선정) 심사중	
2차연장	(최초)'24.9.19~'24.12.19 (재선정)'25.6.28~'25.9.29	(최초)'24.9.24~'24.12.24 (재선정)'25.6.28~'25.9.29	-	-	-
결성일	'25.9.26	'25.8.21	'25.2.28		
투자집행액 (2025. 10월)	-	-	317억원	-	-

주1. 자펀드 결성시한은 심사 완료 후 선정통보일로부터 최초 4개월 이내 부여 및 이후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협의를 통해 3개월씩 2회,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주2. 심사 이후 내부결재 등 사유로 인하여 심사일과 선정통보일이 일부 상이

주3. 투자금액 집행액의 경우 2025.10월말 기준 자펀드의 투자금액 기준으로 작성

주1) 경주 프로젝트의 경우 자펀드 운용사가 총사업비 조정, 일부 투자조건 변경 및 지자체 요청 등으로 제안을 철회('25.9.24.) 후 모펀드 운용사에 다시 제안('25.9.26)하였으며, 모펀드 운용사는 현재 재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주2) 서산 프로젝트의 경우 당초 자펀드 운용사가 내부사정으로 제안을 철회함에 따라 신규 자펀드 운용사를 통해 재심사 진행하였고, 지난 9월 26일 선정되어 자펀드 결성중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 또한, 5건의 프로젝트 중 4건은 사업내용 변경 등을 이유로 재심사 과정을 거쳐 진행되고 있음. 자펀드 운용사가 2차 연장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 사업계획 변경 등을 사유로 제안을 철회한 후 다시 제안하면, 모펀드 운용사 내규에 따라 재심사 및 결성시한을 신규로 부여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한 번 선정된 프로젝트는 취소되지 않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재추진되고 있음⁶⁰⁾.
- 한편, 2025년도에는 10월말까지 신규 프로젝트가 1건도 선정되지 않았으며, 2025년에 신규로 신청한 건수도 3건에 불과함⁶¹⁾.

〈 2025년도 프로젝트 신청 현황 〉

(단위: 억원)

지역개발 프로젝트명	모펀드 약정액 (신청액 기준)	심사 경과
전남 장성 첨단 데이터센터 (2025년 9월 신청)	372.5	심사중
경남 거제 체류형 숙박시설 (2025년 10월 신청)	420	심사중
충남 태안 Seed Farm 1호(2025년 10월 신청)	17	심사중

주: 2025년 10월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 이에 따라 2024년 지역활성화투자모펀드 조성액 3,000억원 중 모펀드의 잔여 약정총액은 581.5억원⁶²⁾이고, 2025년 예산으로 선정된 프로젝트는 없어서 2025년 10월 말 현재, 지역활성화투자모펀드의 잔

60)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자펀드 결성 지연 관련 국회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재심사 및 결성시한 신규 부여에 대한 일부 제한을 관계기관(기재부, 산은 등)과 협의 중으로, 제도 개선 추진 예정임

61) 2025년도 프로젝트 심사 건수는 4건이었으나, 이 중 「충남 서산 스마트팜 프로젝트」는 2024년 12월 선정되었던 프로젝트로, 이후 제안이 철회되었다가 운용사 및 사업구조 변경 후 재신청하여 선정된 것이며, 「경북 경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도 2024년 11월 선정되었던 것을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하고 있음.

62) 재선정 심사 중인 「경북 경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모펀드 약정액 772억원→786억원)까지 모펀드 약정액으로 포함.

여 약정총액은 3,581.5억원에 이르는 상황임⁶³⁾.

□ 프로젝트 선정 및 자펀드 결성이 부진한 결과, 산업은행 정책모펀드 계정에 유보되어 있는 자금이 상당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음.

○ 2024년 및 2025년 편성된 예산의 집행 흐름을 살펴보면, 2024년 및 2025년 예산(각 1,000억원)은 전액 한국산업은행에 출자되었음⁶⁴⁾.

○ 한국산업은행은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자금을 한국산업은행 자체 자금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고 있는 재정모펀드계정에서 지역활성화투자모펀드로 2024년 및 2025년 총 53억 5,000만원을 출자⁶⁵⁾하여, 10월말 현재 한국산업은행 재정모펀드계정에는 1,946억 5,000만원의 유보금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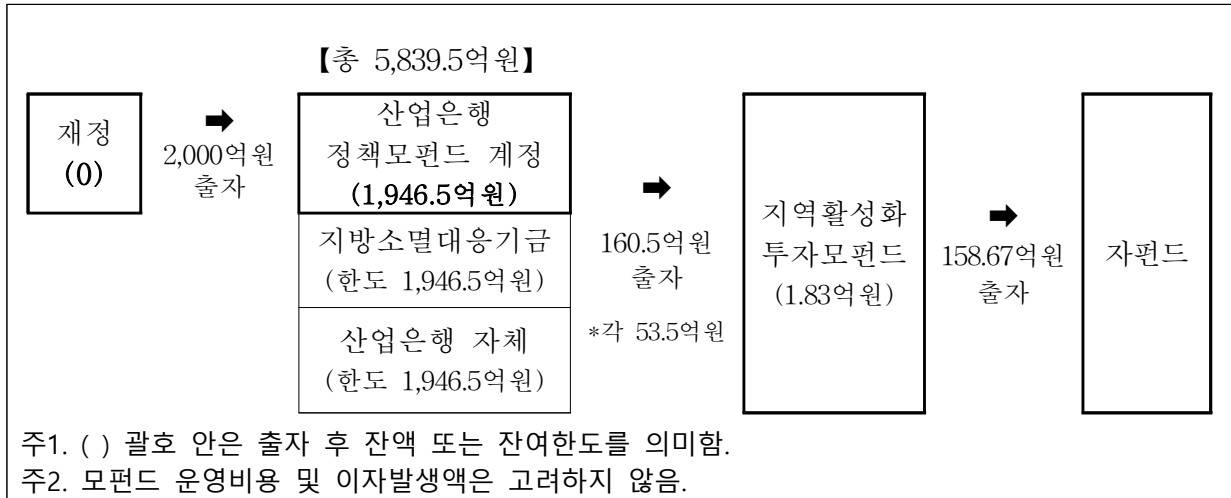
○ 2년간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산업은행 자체자금(각 2,000억원씩)에서 지역활성화투자모펀드에 출자하기로 계획한 금액 총 6,000억원 중 실제로 지역활성화투자모펀드에 출자된 자금은 총 160억 5,000만원에 불과하며, 이 중 158억 6,700만원이 자펀드에 출자되었음.

63) 2025년 신규로 신청된 3건의 프로젝트가 모펀드 약정 신청액 기준으로 선정되는 경우, 지역활성화투자모펀드의 잔여 약정총액은 2,772억원임.

64) <(재정-산은) 출자시기 및 출자액>
2024년 4월(400억원), 7월(600억원),
2025년 6월(400억원), 7월(100억원), 9월(300억원), 10월(200억원)

65) <(산은-지역활성화투자모펀드) 출자시기 및 출자액>
2024년 8월(0.5억원), 2024년 9월(27.5억원),
2025년 9월(8.5억원), 2025년 10월(17억원)

< 2024년 및 2025년 예산 흐름 (2025년 10월말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이와 같은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투입의 연속성, 사업 수요조사 결과 및 투자 소진률 제고를 위한 사업개선 노력을 고려하여 2026년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함. 다수의 지자체로부터 사업추진 의사를 확인⁶⁶⁾하였고, 만약 현시점에서 재정투입이 중단되는 경우 이미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와 민간사업자의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임.

□ 그러나 이미 출자된 예산으로 확보된 재원에 여력(3,581.5억원)이 있어 수시 접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업계획 변경,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집행 지연을 개선하기 위한 뚜렷한 방안이 모색된 것이 아니므로, 2026년에 3,000억원 규모의 지

66) 기획재정부 담당팀의 지방자치단체 수요 조사, 로드쇼 발굴,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신청 등을 모두 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2026년 추진 희망 프로젝트는 총 21개, 총사업비는 약 7.3조원으로 파악됨(금융위원회 제출자료)

역활성화투자모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
이므로, 2026년도 산업은행출자(지역활성화투자모펀드) 예산을 감액
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2026년 집행 경과를 보아가며
2027년 예산안에 이를 다시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⁶⁷⁾.

67) 2026년 신규로 편성된 국민성장펀드에서도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지역성장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7. 국민성장펀드(신규)⁶⁸⁾: 조속한 세부추진 계획 마련 필요 등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 “국민성장펀드”사업은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조원이 신규 편성됨.

〈2026년도 국민성장펀드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국민성장펀드	-	-	-	1,000,000	1,000,000	순증

(자료: 금융위원회)

- ☐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123대 국정과제⁶⁹⁾로 국민성장펀드 100조원을 조성하여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국민성장펀드 조성 규모를 150조원으로 상향⁷⁰⁾하기로 함.

- 이에 따르면, 정부는 5년간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되는 첨단전략산업기금⁷¹⁾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임.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먼저 위험을 부담함으로써 민간자금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대규모 자금을 조성하고자 함.

68) 세부사업: 국민성장펀드(2414-326)

69) 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70) 관계부처합동,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150조원 국민성장펀드가 함께합니다., 2025. 9. 10.

71)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9월 9일 공포되어 공포 3개월 후인 12월 초 출범할 예정임.

- 국민성장펀드는 산업과급효과가 큰 범부처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첨단전략산업(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10개 산업 90개 기술) 및 첨단전략산업의 생태계 전반,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지역성장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계획임.
- 국민성장펀드는 기업 수요에 따라 ① 직접지분투자, ② 간접지분투자, ③ 인프라 투·융자 및 ④ 국고채수준 초저리대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예정임⁷²⁾.

〈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운용방안 개요 〉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정부보증채권 투자자 → 이자)	+ 민간·국민자금 75조원 (금융회사·연기금 및 국민 → 투자이익)
[산은 출연(비용보전 목적)] ^{주1)}	[정부재정 후순위 보장] ^{주2)} (2026년 1조원 예산 반영)

주1)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자금을 출연하여 기금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금채 이자 등을 감당

주2) 재정은 자율적인 민간·금융기관·국민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마중물로 참여
(자료: 관계부처합동,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150조원 국민성장펀드가 함께합니다. 2025. 9. 10.)

72)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설법인 또는 공장 설립시에 국민성장펀드가 지분투자자로 참여하거나 기술기업에 대한 M&A자금 지급
②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여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정책성펀드에서 그간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기술기업에 대한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만들고, 일부는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하여 성장의 과실을 함께 향유토록 할 계획
③ AI데이터센터 및 첨단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적극 참여
④ 첨단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R&D 등 자금을 2%대 국고채 금리로 대출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

2) 검토의견

(1) 조속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필요

□ 2026년 예산안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채 제출되었을 뿐 아니라, 예산안 편성 당시와 달리 국민성장펀드의 조성 규모 및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

○ 2026년 예산안에는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을 위해 마중물 및 후순위 보강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한국산업은행에 1조원을 출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산안 산출근거에 따르면, 첨단전략산업기금 10조원과 민간자금 10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민간투자 유치규모 10조원의 10%에 해당하는 1조원의 예산을 편성함.

< 2026년도 예산안 산출근거 >

- 국민성장펀드 : 1,000,000백만
- 1년 민간투자 유치규모 10조원 × 정부재정비율 10% = 1,000,000백만원

구분 (조원)	2026년 투자규모(아래 수치 예시)				재정역할 비율
	소계	기금	민간	재정	
① 직접지분투자	2	1	1	0.2	마중물+후순위
② 간접투자(펀드)	4.6	1.2	3.4	0.4	후순위보강(5~40%)
③ 인프라 투융자	6.7	1.1	5.6	0.4	후순위 7~8%
초저리대출	6.7	6.7	-	-	산은 자체 감당
합계	20	10	10	1(후순위)	

※ 초저리대출은 재정출자 대상 제외, 산은 자체 감당

※ 사업 예산안 산출근거용이나 추후 정부정책에 따라 구체적 계획 사업 내용 변경 가능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런데 예산안 편성 후 국민성장펀드 조성 규모를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2026년 예산안 편성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한편, 국민성장펀드로 흡수하여 추진하는 기존 정책펀드의 범위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⁷³⁾. 금융위원회는 혁신산업펀드 일부와 반도체 생태계펀드를 국민성장펀드로 흡수하여 운영할 예정이었음. 혁신성장펀드는 정부의 산업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산업펀드’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성장지원펀드’로 구성되는데, 당초 국민성장펀드는 혁신산업펀드만을 포괄하고, 성장지원펀드는 국민성장펀드와 별도로 운영하기로 함.

〈(운영중) 금융위원회 소관 정책성 펀드 개편방안(안)〉

(단위: 억원)

사업명	목적	조성목표	재정	既조성	투자집행	개편방향
혁신성장	혁신산업 +성장지원	2023~2027 15조원	1.5조원 (연 3,000)	2023~2025 9조원	14,502	
혁신산업	혁신산업전반 생태계강화	7.5조원	7,500 (연 1,500)	4.5조원	9,189	‘국민성장펀드’ 흡수
성장지원	벤처·중소기업 스케일업 지원	7.5조원	7,500 (연 1,500)	4.5조원	5,312	별도 운영 (예산안 미반영)
반도체 생태계펀드	반도체소부장 생태계 지원강화	2025~2027 8,000억원	3년간 2,000 (‘26, 850억)	2025년 1,200억	펀드 조성중	‘국민성장펀드’ 흡수

주: 2026년도 예산안 편성액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73) 지난 9월 2일 국무회의를 통해 성장지원펀드를 추가 조성하도록 정부 정책방향이 설정됨.

-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 제출시 성장지원펀드 구성에 필요한 출자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이후 사업추진 방향이 변경되어 성장지원펀드도 국민성장펀드로 흡수하여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벤처·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한편,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신속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재정투입비율에 따라 국민성장펀드 구성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가 정해지는데,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에 조성시 민간자금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재정투입비율을 마련하고 있음.
- 또한, 동 사업은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이에 투자할 예정인데, 기존 정책성펀드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금융권, 산업계, 사업부처 등 범부처의 적극 지원을 통해 메가프로젝트 및 관계기업 발굴 중인 상황임. 일반적으로 메가프로젝트의 경우 발굴, 준비 및 시행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경우 자금지원 기간이 5년으로 제한⁷⁴⁾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74)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첨단전략산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단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음(「한국산업은행법」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2) 과거 국민참여형 정책펀드의 문제점을 보완한 계획 마련 필요

□ 동 사업의 일부는 과거 2021년부터 추진한 국민참여 뉴딜펀드와 유사한 국민참여형 정책펀드로 추진할 계획임.

○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정부가 주도하여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정책형 뉴딜펀드의 일종으로, 일반 국민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⁷⁵⁾ 형태도 참여하여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에 선순위 출자하고, 재정은 후순위로 출자하는 구조임.

○ 후순위 출자의 경우, 채무변제 순위가 낮아 손실발생 시 손실을 우선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후순위는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므로 초과수익 발생 시 선순위에 앞서 수익을 취함⁷⁶⁾.

○ 이와 같은 국민참여형 정책펀드는 국민이 정책펀드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 성장의 성과를 특정 계층이 아닌 대다수 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투자 손실 위험을 줄임으로써 일반 국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펀드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그간 추진되었던 국민참여 뉴딜펀드에 대해서는 낮은 수익률, 일정 기간 환매 불가능한 폐쇄형 구조로 인해 투자자의 자금 이동을 막아 투자 매력에 감소하였고 국가 재정으로 사실상 원금을 보장함에 따른 공정성 및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었음⁷⁷⁾.

75) 일반국민은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하고, 민간공모 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구성에 참여함.

76) 이수환,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뉴딜펀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제 188호, 2021. 2. 22.

○ 실제로 만기78)가 도래하여 청산된 국민참여 뉴딜펀드의 펀드수익률을 살펴보면, 재정자금이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펀드 10개 중 7개의 수익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79).

〈국민참여 뉴딜펀드(청산펀드)수익률〉

(약정총액: 억원, 수익률: IRR %)

펀드명	약정총액	일반국민 체감 기준 ^{주1)} (공모펀드)	자펀드 기준 (뉴딜펀드)	재정자금 기준 (재정 후순위)
디에스 N-01 일반 사모투자신탁	200	0.00	-1.35	-4.37
밸류시스템 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	200	-1.02	-6.95	-25.22
신한 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200	4.62	3.99	2.68
안다 뉴딜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200	7.79	10.48	13.39
오라이언 뉴딜 디딤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201	1.14	0.89	0.38
지브이에이 뉴딜성장 알파 일반 사모투자신탁	200	0.00	-1.84	-6.07
타임폴리오 혁신성장 그린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	207	-6.18	-12.62	-29.12
타임폴리오 혁신성장 디지털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	207	5.23	5.65	6.19
파인밸류 성장뉴딜 POST IPO 4호 일반 사모투자신탁	200	5.22	5.65	6.14
포커스 뉴딜 플러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203	4.61	3.62	1.60

주1. 국민참여 뉴딜 조성 구조⁸⁰⁾ 참조

주2. 음영표시는 재정이 후순위로서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공모펀드 수익률>자펀드 수익률)한 경우

주1) 재정모펀드의 후순위 보강 등을 반영한 일반국민 참여 공모펀드의 실수익률

(자료: 금융위원회)

77) 한경, '국민 채테크 상품' 홍보했지만... 예금에도 못미친 뉴딜펀드 수익률, 2022. 8. 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80192611>)

뉴시스, 일회진 '정책형 뉴딜펀드' 4년 수익률 5%대...부진한 수익률로 마무리, 2025. 3. 25.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25_0003112330)

동아일보, '사실상 원금보장' 뉴딜펀드... "낮은 수익률, 자금 흡수 어려울 듯", 2020. 9. 30.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903/1027804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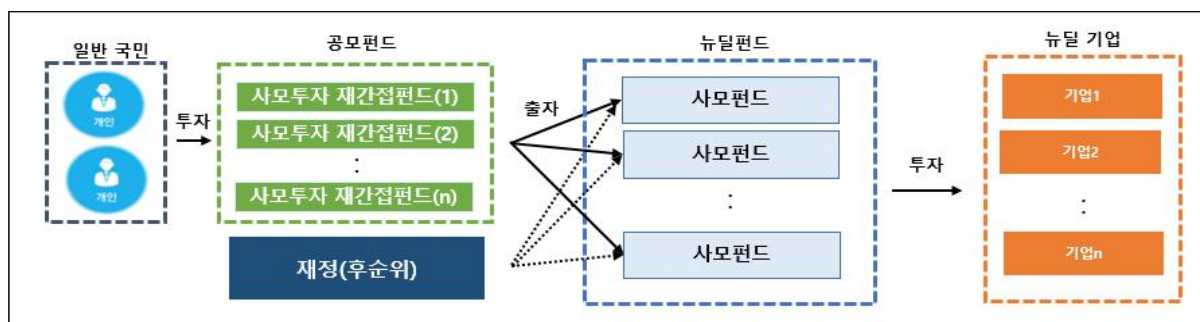
78) 각 펀드의 만기일은 펀드결성일부터 46개월

79) 정책펀드의 경우 대체로 성과보수 지급 기준을 7~8%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5% 수익률은 우수한 성과로 보기는 어려움.

80) <참고: 국민참여 뉴딜 조성 구조>

□ 따라서 국민참여형 정책펀드를 다시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간 지적되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과거 국민참여 뉴딜펀드의 시사점을 감안하여 설계 단계부터 관계부처와 신중히 협의할 계획으로, 주목적 투자분야 확대, 세제 혜택 부여 등 펀드 수익률 제고 및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며, 재정의 후순위보강(원금 보장)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선부담하여 국민 참여를 촉진하고 투자 수익을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라고 함.



8.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신규)⁸¹⁾: 사업계획 미확정에 따른 예산 심사 방안 모색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한-미 관세협상(2025. 7. 31.)에 따라 신설되는 조선협력펀드 등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6,300억원이 신규 편성됨.

〈2026년도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	-		630,000	630,000	순증

(자료: 금융위원회)

- 지난 7월에 있었던 한-미 관세협상 결과⁸²⁾, 한국은 대미 투자를 위한 1,500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포함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음.

81) 세부사업: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2414-327)

82) 2025년 7월 30일, 오후 5시(미국 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타결

<주요내용>

(미국) 8월 1일부터 미국은 한국에 대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하향. 향후 관세부과가 예고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다른 다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대우(최혜국대우)

(한국)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 미 조선수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프로젝트에 투자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관련 전략산업 부상에 투자·대출·대출보증을 제공

4년간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 달러 구매하고,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 상에 제시된 비관세장벽 일부 완화

(자료: 산업통상부 보도참고자료, 미주통상과, 한미 관세협상 타결, 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 2025. 7. 31.)

- 이 중 조선협력펀드는 미국 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어, 미국 내 조선소의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⁸³),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임.
- 정부는 이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 완화 및 품목별 관세에 대한 최혜국 대우 유지 등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미국 진출 조선업 및 조선기자재 제조 영위기업 등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하여 국내 조선산업의 산업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임⁸⁴).
-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조선협력펀드가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이 투자·대출·보증 등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6,300억원을 편성한 것임⁸⁵).

83) Manitenance(정비), Repair(보수), Overhaul(정비)의 약자로, 선박의 정상적인 운항과 성능 유지를 위해 이루어지는 유지관리, 보수, 정비, 개조작업을 의미함.

84) 산업통상부 보도참고자료, 미주통상과, 한미 관세협상 타결, 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 2025. 7. 31.

85) 한편, 타 부처 소관 예산안에도 유사한 목적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기획재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 출자를 통해 대미 투자패키지 금융지원 관련 재정을 보강하기 위하여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3236-304)”사업에 7,000억원을 신규로 편성함.

○ **산업통상부**는 대미 투자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공사 기금 여력 확충 및 중소형 조선사 보증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출연”사업 예산을 2025년도보다 2,205억원 증액 편성함.

<2026년도 타 부처의 관련 예산사업>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기재부)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	-	-	700,000	700,000	순증
(산업부) 무역보험기금 출연	45,000	80,000	380,000	600,500	220,500	58.0

(자료: 각 부처 예산안 설명자료)

2) 검토의견

- 동 사업은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기본 구성요건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 규모에 대한 논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정부에 따르면, 조선협력 펀드의 연차별 재정 투입 및 투자계획 등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향후 미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 투자계획 등이 확정될 예정이어서 투자처 및 투자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음.
- 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은 향후 조선협력 펀드 실행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본확충을 하기 위한 예산을 6,300억원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6,300억원의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음.
- 6,300억원 규모의 한국산업은행 현금출자를 통해서 공급되는 정책자금의 규모는 직접 투자, 대출, 보증 등 정책자금 공급방식에 좌우되므로, 실제 공급가능한 자금 규모를 추산하기 어려움. 일반적으로 대출 및 보증이 직접투자에 비해 출자금 대비 공급효과가 크며, 금리 및 보증비율 우대조건 등에 따라 실제 공급한도 역시 달라짐.
- 다만, 6,300억원 출자시 한국산업은행의 BIS 비율이 약 18bp 상향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⁸⁶⁾.

86) 한국산업은행의 금융지원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정부의 현금출자만 고려함

□ 2025년 10월 말 한미 추가 관세 협상이 타결되어 조선협력펀드 1,500억 달러는 한국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세부적인 내용이 결정 또는 공개되지 않아 여전히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 동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2026년도 예산에는 반영하되 기획재정부가 동 사업을 수시배정사업⁸⁷⁾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세부 내용에 따라 예산배정을 유보하는 방법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수시배정 대상사업 선정 기준 〉

- 사업의 기본 구성요건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사업
 - 재원분담 주체간의 분담비율이 미정인 사업
 -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
 - 지방비 또는 민자 확보 등 원활한 사업을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업
- 법률 제·개정 협의 등의 조건이 충족된 후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
 - 사업 근거 법령의 제·개정, 권리 의무 관계·외국과의 계약체결·공모 절차 등 규정 마련이 필요한 사업
 -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업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기타 선결 조건이 충족되어야 집행되는 사업
- 당초 사업 여건이 변경되어 점검이 필요한 사업
 - 사업여건 변화로 타당성재조사, 환경영향재평가, 부처간 사전협의를 요하는 대규모 재정소요사업
 - 수행주체, 지원조건, 추진방식 및 계약내용 변경 등 사업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2025년6월말 기준 정부출자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BIS 민감도 비율을 가정하여 산출).

87)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수시배정 대상 사업을 사전에 지정하여 예산배정을 유보하거나, 각 중앙관서의 장에 대하여 이미 배정된 예산에 대한 집행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음(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사업

○ 회계연도 중 사업구조의 개편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

○ 재원분담 조건 변경 등 기타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사업

(자료: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9.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⁸⁸⁾: 포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예산 증액 검토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사업은 기업 회계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부정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 9,000만원(175.6%) 증가한 12억 4,0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407	450	450	1,240	790	175.6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1)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

□ 금융위원회는 2019년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 따라 금융당국의 회계부정 적발·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제28조 제5항⁸⁹⁾).

88) 세부사업: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7135-309)

- 구체적으로, 회계부정 신고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가 접수·검토⁹⁰⁾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신고된 행위를 위반행위로 의결하면 4개월 이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중요도와 위반행위의 적발·조치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심의·의결하며, 금융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⁹¹⁾

8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8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자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 또는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과기한 사실
2. 회사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
3. 회사, 감사인 또는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6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
4. 감사인이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추는 경우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발하거나 그에 따른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조치 등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신고자등에 대한 포상)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 행위를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4개월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10억원의 범위에서 신고된 위반행위의 중요도와 위반행위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심의·의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90) 주권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에 대한 회계부정 신고는 금융감독원에서, 그 밖의 비상장 외 부감사 대상 회사에 대한 회계부정 신고는 한국공인회계사에서 각각 접수·검토함.

91)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은 회사의 회계정보(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정보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부정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위”라 한다),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서 증권위가 이를 적발하여 조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에 따른 분·반기 보고서의 재무에 관한 사항 조치를 포함한다)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기준금액에 기여도를 곱하여 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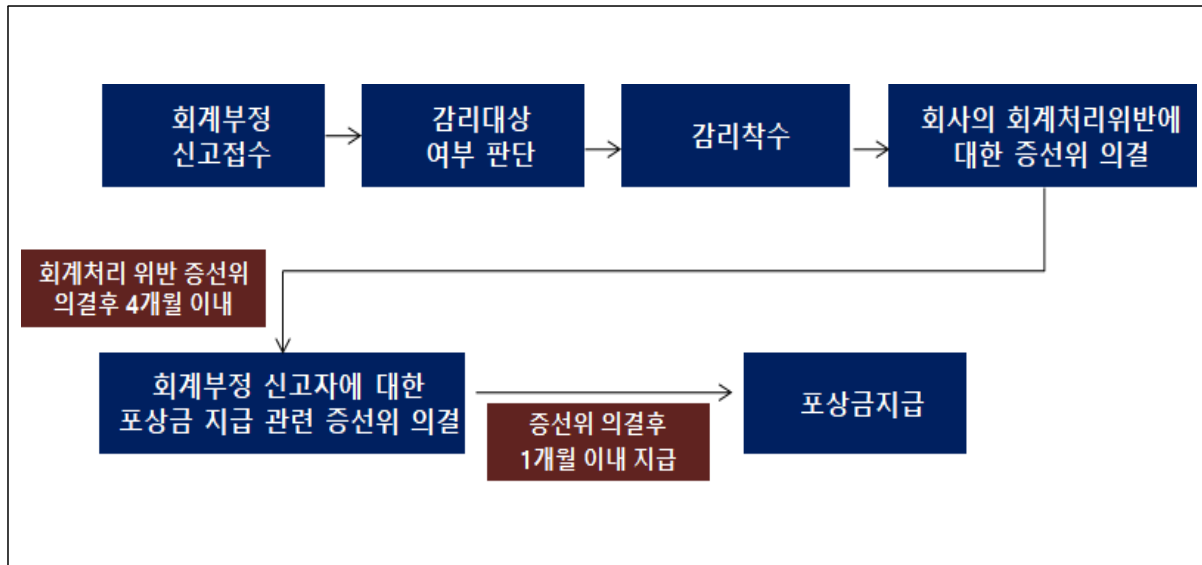
② 신고자가 당해 부정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기준에 의한 구체적인 포상금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포상결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예산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의 조치가 확정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기간 내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 별지2호 서식에 의한 포상실시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



(자료: 금융위원회)

□ 최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회계부정 신고는 2019년 81건에서 2024년 2배 이상인 179건으로 증가하였으며, 포상금 지급액은 2019년 1억 1,940만원(2건)에서 2024년 4억 700만원(7건)으로 증가하였음.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5. 말
신고건수 ¹⁾	81	105	125	130	141	179	72
포상금 지급건수	2	12	5	3	8	7	4 ²⁾
포상금 지급액	119	408	229	70	251	407	450

주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신고건 및 유관기관(국민권익위원회 등) 이첩건 합계

주2) 2025년 5월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미지급된 1건 제외

(자료: 금융위원회)

- 당초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은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2021년 42.3%, 2022년 13.0%로 부진하였으며, 이에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한도를 변경하는 등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제도개선)하였음.
- 이에 금융위원회는 신고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통해 내부자 등의 신고 유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을 종전의 2배 수준으로 상향(최대 5억원→10억원)하는 한편, 기여도 차감요소 중 정성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⁹²⁾(2023. 5.)하였으며, 최근 포상금 지급 규모의 증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9	120	119	99.5	-	1
2020	483	408	84.5	-	75
2021	540	229	42.3	-	311
2022	540	70	13.0	-	470
2023	407	251	61.7	-	156
2024	407	407	100.0	-	-
2025	450	450	100.0	-	-

주: 2025년은 5월말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92)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23. 5.) 주요내용(자료: 금융위원회)

1. 건별 포상한도 기준금액 증액 : 부정행위의 중요도 등급 간소화(10개→ 4개) 및 등급별 기준금액 인상

□ 이와 같이 포상금 지급 규정의 개정, 회계부정 신고 건수 증가 등으로 포상금 지급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7억 9,000만원(175.6%)이 증액된 1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다만, 증액 편성된 2026년도 포상금 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는 2025년에 포상금 예산 부족으로 이미 포상금 지급이

개정 전			개정 후(2023. 5.)		
(단위: 만원)			(단위: 만원)		
구분	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주된 조치	포상금 기준금액	구분	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주된 조치	포상금 기준금액
1등급	고의 I 단계 이상의 조치로서 과징금 20억원 이상 부과	50,000	1등급	고의 II 단계 이상의 조치	<u>100,000</u>
2등급	고의 I 단계 이상의 조치로서 과징금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부과	30,000	2등급	고의Ⅲ~Ⅴ 단계 조치 (중과실 가중시 최대조치 포함)	<u>50,000</u>
3등급	고의 I 단계 이상의 조치	20,000	3등급	중과실 I~Ⅴ 단계 조치 (과실 가중시 최대조치 포함)	<u>30,000</u>
4등급	고의Ⅱ 단계 또는 중과실 가중시 최대 조치	15,000	4등급	과실 I~Ⅲ 단계 조치 또는 경고 또는 주의 (고의 감경시 최소조치 포함)	<u>3,000</u>
5등급	고의Ⅲ 단계 또는 중과실 I 단계 조치	10,000			
6등급	고의Ⅳ 단계 또는 중과실Ⅱ 단계 또는 과실 가중시 최대 조치	7,000			
7등급	고의Ⅴ 단계 또는 중과실Ⅲ 단계 또는 과실 I 단계 조치	5,000			
8등급	고의 감경시 최소 또는 중과실Ⅳ 단계 또는 과실Ⅱ 단계 조치	3,000			
9등급	중과실Ⅴ 단계 또는 과실Ⅲ 단계 조치	2,000			
10등급	경고 또는 주의	1,000			

주: 해당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회사의 부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상기금액의 2배를 기준금액으로 함

2. 기여도 산정 항목 중 정성적 요소 최소화 : 차감요소 중 자의적 또는 정성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세부 산정항목을 조정·단순화(총 8개→3개)

결정된 건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여 미지급분 8,590만원을 2026년에 지급할 예정이며, 2025년 하반기 중 약 17억 2,800만원⁹³⁾의 포상금 지급을 추가로 결정할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12억 4,000만원의 포상금은 과소 편성된 것으로 보임.

〈2025년도 포상금 지급(예정) 제재안건 목록〉

(단위: 천원)

연번	회사명	제재안건 상정(예정)일	포상금안건 상정(예정)일	포상금 (예상)액	포상금 지급 여부
1	A사	2024. 10. 2.	2024. 12. 28.	12,900 ¹⁾	2025년 예산으로 지급 완료 (331.9백만원)
2	B사	2024. 10. 2.	2025. 1. 22.	140,000	
3	C사	2024. 10. 2.	2025. 1. 22.	100,000	
4	D사	2024. 10. 23.	2025. 2. 12.	79,000	
5	E사	2025. 1. 8.	2025. 4. 23.	204,000	2025년 예산으로 지급 완료 (118.1백만원)
					2026년 예산으로 지급 예정 (85.9백만원)
6	F사	2025. 1. 22.	2025. 5. 8.	32,700	2026년 예산으로 지급 예정 (1,727.9백만원)
7	G사	2025. 7. 2.	2025년 하반기	325,000	
8	H사	2025. 10. 15.	2025년 하반기	168,000	
9	I사	2025. 10. 29.	2025년 하반기	37,500	
10	J사	2025. 7. 11.	2025년 하반기	345,000	
11	K사	2025. 9. 10.	2025년 하반기	650,000	
12	L사	2025. 10. 29.	2025년 하반기	3,400	
13	M사	2025. 12.(예정)	2025년 하반기	139,033 ²⁾	
14	N사	2025. 8. 6.	2025년 하반기	9,900	
15	O사	2025. 8. 6.	2025년 하반기	17,400	

주1) 2024년 12월 포상금 지급 의결(28.7백만원)이 되었으나, 2024년도 예산의 부족으로 포상금 일부는 2025년 예산으로 지급

주2) 금융감독원 접수·검토대상 신고건에 대한 개정 포상규정 적용 건의 평균액

(자료: 금융위원회)

93)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추정치이며, 최종 제재수준 등에 따라 변동의 여지는 있음.

○ 또한, 2019년에 이미 지급된 포상금에 대한 포상금 증액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금융위원회 패소가 확정⁹⁴⁾(2025. 7.)됨에 따라 포상금 추가 지급 소요⁹⁵⁾가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포상금 규모로는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더하여, 2026년도에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에 대한 지급이 신규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물론, 이 사업의 경우에도 다른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되어야 겠으나, 과거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요구가 있었던 점,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는 회계질서 확립에 기여할 뿐 아니라 회계부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규모의 증가⁹⁶⁾로 이어져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⁹⁷⁾

□ 이를 종합하면,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의 2026년도 예산안은 과소편성

94) 2019년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신고자는 포상금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심의·의결하였다는 이유로 포상금 증액신청을 하였으나, 금융위원회는 같은 해 4월 이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음. 이에 신고자가 제기한 포상금 증액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결정이 포상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포상금 증액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서울행정법원 2024. 9. 27. 선고 2019구합63133 판결)하였으며, 2025년 7월 상고가 최종적으로 기각(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두33581 판결)되어 금융위원회의 패소가 확정되었음.

95) 금융위원회 추정 5억원 이상

96) 참고로, 2024년 기준 회계부정 신고와 관련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규모는 50억 3,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된 것으로 보이므로, 2026년도 예산에 ① 2025년에 지급이 결정되어 있는 포상금 소요, ②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재산정을 통하여 추가 지급해야 하는 포상금 소요, ③ 2026년 신규 발생할 포상금 소요 등의 반영 여부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9. 말
회계 위반 과징금	5,163	9,355	19,339	28,070	9,669	42,608	28,365
신고 관련	707	3,123	5,084	1,219	840	5,035	4,378
회계 위반 과태료	276	284	252	353	67	169	185
신고 관련	40	38	48	-	38	-	-
합계	5,439	9,639	19,591	28,423	9,736	42,777	28,550
신고 관련	747	3,161	5,132	1,219	878	5,035	4,378

주: 관련 안건의 최종 의결일자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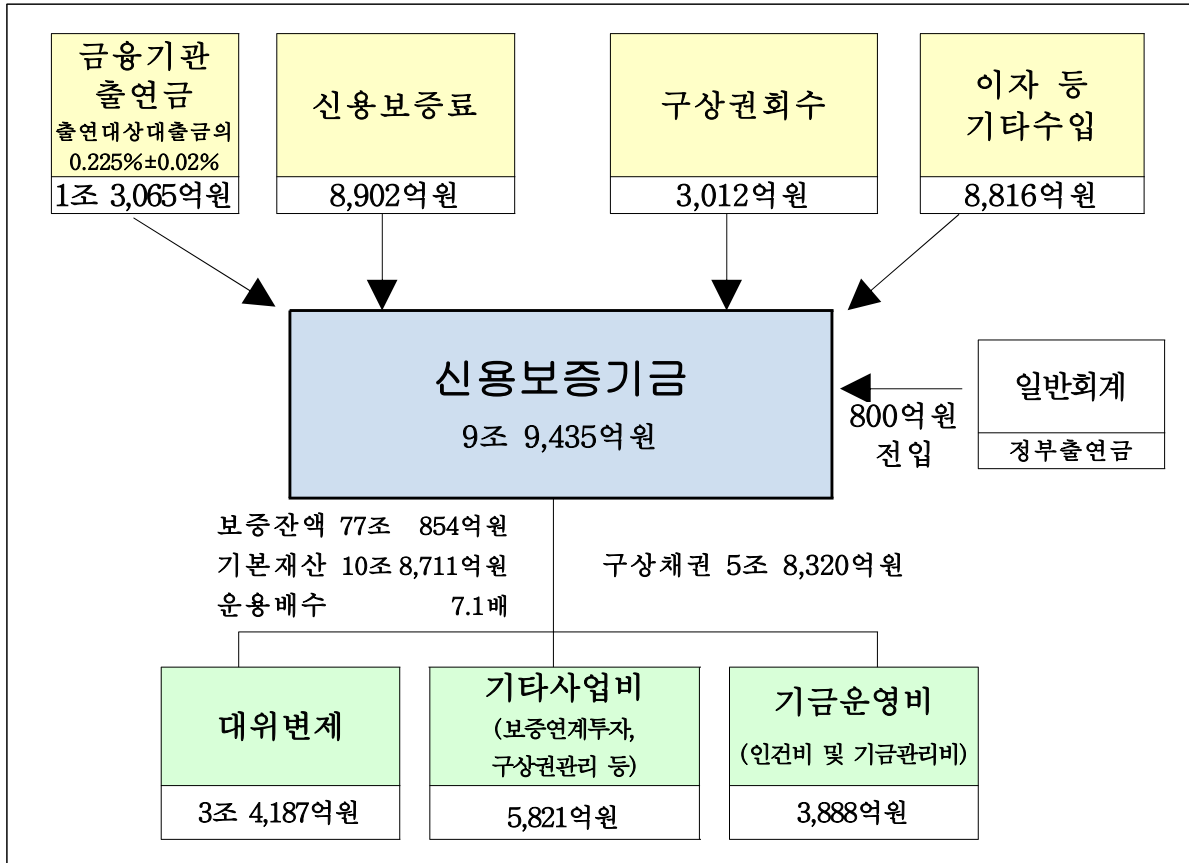
97) 한편, 금융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에 따른 과징금 또는 과태료 증가분을 수입 예산에 함께 계상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제2장 신용보증기금

1. 개 요

-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1976년에 설치되었으며, 2025년 9월 말 기준 보증잔액은 79조 3,360억원, 보증업체수는 45만 1,685개임.

〈2026년도 신용보증기금 주요 수입·지출 항목〉



(자료: 금융위원회)

- 2026년도 신용보증기금 운용 규모는 9조 9,435억원으로, 금융기관 출연금(1조 3,065억원), 신용보증료(8,902억원), 구상권 회수(3,012억원), 이자 등 기타수입(8,816억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 이를 대위변제(3조 4,187억원), 기금운영비(3,888억원), 보증연계투자 등 기타사업비(5,821억원)에 지출할 계획으로 있음.
- 최근 5년간 기금의 운용규모 추이를 보면, 2022년 12조 9,881억원 수준에서 2023년 12조 3,287억원, 2024년 11조 4,703억원으로 감소한 후 2025년 11조 6,12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6년 9조 9,435억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음.

1. 수입계획안

- 2026년도 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은 9조 9,435억 3,600만원으로 2025년 수정계획 대비 1조 6,690억 200만원(14.4%) 감액 편성됨.

〈2026년도 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계획안(B)	증 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9,444,908	11,512,538	11,612,538	9,943,536	△1,669,002	△14.4
□ 재산수입	303,694	181,828	181,828	114,448	△167,380	△37.1
□ 경상이전수입	2,450,854	2,217,484	2,217,484	2,306,207	88,723	4.0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915,239	980,618	980,618	955,188	△25,430	△2.6
□ 관유물매각대	841	3,255	3,255	3,626	371	11.4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5,694,280	8,129,353	8,129,353	6,484,067	△1,645,286	△20.2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80,000	-	100,000	80,000	△20,000	△20.0

(자료: 금융위원회)

- ‘재산수입’은 기금의 예치금, 유가증권 등에 대한 이자수입, 투자 배당금, 건물대여료 등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치금 및 유가증권 이자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673억 8,000만원(37.1%) 감소한 1,144억 4,800만원이 편성됨.
- ‘경상이전수입’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구상권 회수, 공탁금 반환, 매출 채권 상환 수입, 새출발기금 채권매각대금 등으로, 출연대상 대출금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 출연금 증가, 팩토링금융 사업 확대에 따른

매출채권 상환 수입 증가 및 매출받기금 채권매각 수입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87억 2,300만원(4.0%) 증가한 2조 3,062억 700만원이 편성됨.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신용보증료, 수수료, 위탁보증부담금, 고정 자산 매각 이익 등으로, 대환보증 신규 공급 종료에 따른 위탁보증 부담금 수입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54억 3,000만원(2.6%) 감소한 9,551억 8,800만원이 편성됨.
- ‘관유물매각대’는 고정자산 매각 수입, 무형자산 매각 수입 등으로 업무용 건물 및 토지 매각 수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7,100만원 (11.4%) 증가한 36억 2,600만원이 편성됨.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는 국공채매각대,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등 여유자금회수에 따른 수입으로, 여유자금회수를 순계기준으로 계상하여 전년 대비 1조 6,452억 8,600만원(20.2%) 감소한 6조 4,840억 6,700만원이 편성됨.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는 정부출연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관련 수입으로, 정부출연금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200억원(20.0%) 감소한 800억원이 편성됨.

2. 지출계획안

1) 총괄

- 2026년도 신용보증기금 지출계획안은 9조 9,435억 3,600만원으로 2025년 수정계획 대비 1조 6,690억 200만원(14.4%) 감액 편성됨.

〈2026년도 신용보증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9,444,908	11,512,538	11,612,538	9,943,536	△1,669,002	△14.4
□ 사업비	3,420,409	4,411,923	4,411,923	4,000,824	△411,099	△9.3
○ 신보대위변제	2,958,377	3,866,158	3,866,158	3,418,699	△447,459	△11.6
○ 기타사업비	462,032	545,765	545,765	582,125	36,360	6.7
□ 기금운영비	373,250	374,229	383,504	388,809	5,305	1.4
○ 인건비	273,004	285,770	295,045	300,820	5,775	2.0
○ 기타운영비	100,246	88,459	88,459	87,989	△470	△0.5
□ 여유자금운용	5,651,249	6,726,386	6,817,111	5,553,903	△1,263,208	△18.5

(자료: 금융위원회)

- 신용보증기금의 사업비 계획안은 4조 8억 2,400만원으로 대위변제 및 이차보전지원 감소 등으로 인해 2025년도 계획 대비 4,110억 9,900만원(9.3%) 감소하였으며,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3,888억 900만원으로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2025년도 계획 대비 53억 500만원(1.4%) 증가함.
- 2026년도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5조 5,539억 300만원으로 2025년도 계획 대비 1조 2,632억 800만원(18.5%) 감소함.

□ 최근 5년간 신용보증기금의 프로그램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경비성 프로그램인 기금운영비와 여유자금성 프로그램을 제외한 사업비는 모두 신용보증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음.

〈최근 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별 지출계획 내역〉

(단위: 억원, %)

프로그램명	2021년		2022년		2023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신용보증금융지원(2400)	28,746	28,997	31,899	33,240	36,935	37,351
기금운영비(3300)	3,604	3,604	3,695	3,770	3,700	4,134
기금간거래(예탁금)(9000)	-	-	-	-	-	-
여유자금운용(9700)	63,512	64,067	85,287	92,871	82,652	81,802
합 계	95,862	96,668	120,881	129,881	123,287	123,287
프로그램명	2024년		2025년		2026년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계획안	
신용보증금융지원(2400)	41,161	41,169	44,119	44,119	40,008	
기금운영비(3300)	3,676	3,810	3,742	3,835	3,888	
기금간거래(예탁금)(9000)	-	-	-	-	-	
여유자금운용(9700)	69,866	69,724	67,264	68,171	55,539	
합 계	114,703	114,703	115,125	116,125	99,435	

(자료: 금융위원회)

2) 사업비

□ 2026년도 신용보증기금 소관 사업비 계획안은 4조 8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10억 9,900만원(9.3%)이 감소됨.

○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도 계획 대비 일반보증 대위변제 487억 1,500만원(1.8%), 팩토링금융 500억 4,000만원(25.0%)이 증액 편성되고, 신규사업으로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위변제 182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2,383억 5,600만원(68.5%), 대환보증 대위변제 1,676억 7,500만원(51.4%)이 감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신용보증기금 사업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계획안(B)	증 감	
		당초	수정(A)		(B-A)	(B-A)/A
□ 사업비	3,420,409	4,411,923	4,411,923	4,000,824	△411,099	△9.3
○ 신보대위변제	2,958,377	3,866,158	3,866,158	3,418,699	△447,459	△11.6
- 일반보증 대위변제	2,228,261	2,645,225	2,645,225	2,693,940	48,715	1.8
-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133,511	546,887	546,887	438,446	△108,441	△19.8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위변제	472,926	347,946	347,946	109,590	△238,356	△68.5
- 대환보증 대위변제	123,679	326,100	326,100	158,425	△167,675	△51.4
-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위변제	-	-	-	18,298	18,298	순증
○ 기타사업비	462,032	545,765	545,765	582,125	36,360	6.7
- 보증료환급	97,349	96,377	96,377	86,852	△9,525	△9.9
- 구상권관리	68,788	99,462	99,462	99,462	-	-
- 업무용건물	2,396	14,294	14,294	22,533	8,239	57.6
- 경영지도	16,304	20,252	20,252	20,052	△200	△1.0
- 보증연계투자	65,980	67,540	67,540	67,540	-	-
- 미래성장성평가	2,002	6,335	6,335	6,335	-	-
- 프론트윈운영	5,719	6,660	6,660	6,876	216	3.2
- 이차보전지원	35,565	13,851	13,851	1,372	△12,479	△90.1
- 팩토링금융	150,046	200,160	200,160	250,200	50,040	25.0
- 신용정보(정보화)	1,364	2,034	2,034	2,244	210	10.3
- 신용보증제도 조사·연구	-	1,294	1,294	2,440	1,146	88.6
- 신보IT운영(정보화)	16,519	17,506	17,506	16,219	△1,287	△7.4

(자료: 금융위원회)

- ‘일반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부실률 증가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487억 1,500만원(1.8%) 증가한 2조 6,939억 4,000만원이 편성됨.
-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보증잔액 및 부실률 감소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084억 4,100만원(19.8%) 감소한 4,384억 4,600만원이 편성됨.
-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부실률 감소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2,383억 5,600만원(68.5%) 감소한 1,095억 9,000만원이 편성됨.
-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신규공급 종료에 따른 보증잔액 감소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676억 7,500만원(51.4%) 감소한 1,584억 2,500만원이 편성됨.
-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신설된 신규 사업으로, 182억 9,800만원이 편성됨.
- ‘보증료환급’ 사업은 보증기간 중 선취한 보증료를 중도해지 시 환급하여 주는 의무적 지출로, 보증해지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95억 2,500만원(9.9%) 감소한 868억 5,200만원이 편성됨.
- ‘구상권관리’ 사업은 부실발생기업 및 대위변제기업 등에 대하여 채권 보전조치, 소송, 채권회수활동 등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전년 수준과 동일한 994억 6,200만원이 편성됨.
- ‘업무용건물’ 사업은 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노후지점 건물 수선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82억 3,900만원(57.6%) 증가한 225억 3,300만원이 편성됨.

- ‘경영지도’ 사업은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컨설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창업종합지원 등의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원(1.0%) 감소한 200억 5,200만원이 편성됨.
- ‘보증연계투자’ 사업은 미래가치 및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민간으로부터 투자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혁신형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원 사업으로서 전년 수준과 동일한 675억 4,000만원이 편성됨.
- ‘미래성장성평가’ 사업은 재무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우수기술과 지적재산 등 혁신역량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래성장성 중심의 조사·심사·평가체계 구축·정보 수집 및 운영·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수준과 동일한 63억 3,500만원이 편성됨.
- ‘프론트원운영’ 사업은 전문 창업 보육공간인 프론트원 건물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2억 1,600만원(3.2%) 증가한 68억 7,600만원이 편성됨.
- ‘이차보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 대출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대상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지원이 순차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24억 7,900만원(90.1%) 감소한 13억 7,200만원이 편성됨.

- ‘팩토링금융’ 사업은 구매기업의 신용거래위험 확산 방지를 위해 판매기업의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는 사업으로, 팩토링공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500억 4,000만원(25.0%) 증가한 2,502억원이 편성됨.
- ‘신용정보(정보화)’ 사업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신뢰성 높은 기업 데이터와 신용정보서비스를 공공·민간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지원 강화 및 기업 데이터 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1,000만원(10.3%) 증가한 22억 4,400만원이 편성됨.
- ‘신용보증제도 조사·연구’ 사업은 연구용역을 통해 국정과제 수행역량을 제고하고, 학술협력 기반 형성 및 금융교육 수행을 통한 금융소비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억 4,600만원(88.6%) 증가한 24억 4,000만원이 편성됨.
- ‘신보IT운영(정보화)’ 사업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억 8,700만원(7.4%) 감소한 162억 1,900만원이 편성됨.

3) 기금운영비

- 2026년도 신용보증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3,888억 900만원으로,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3억 500만원(1.4%) 증가함.

〈2026년도 신용보증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기금운영비	373,250	374,229	383,504	388,809	5,305	1.4
○ 인건비	273,004	285,770	295,045	300,820	5,775	2.0
○ 기타운영비	100,246	88,459	88,459	87,989	△470	△0.5
- 기금관리비	100,246	88,459	88,459	87,989	△470	△0.5

(자료: 금융위원회)

- ‘인건비’는 인력증원에 따른 추가소요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7억 7,500만원(2.0%) 증가한 3,008억 2,000만원이 편성됨.
- ‘기금관리비’는 전년 대비 4억 7,000만원(0.5%) 감소한 879억 8,900만원이 편성됨.

4) 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은 신용보증기금의 총수입액 중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자금을 정기예금, 연기금투자폴, 국채, 금융채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1조 2,632억 800만원(18.5%) 감소한 5조 5,539억 3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운용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여유자금운용	5,651,249	6,726,386	6,817,111	5,553,903	△1,263,208	△18.5
○ 정기예금	2,535,871	2,438,062	2,428,787	1,456,801	△971,986	△40.0
○ 연기금투자폴	2,616,000	3,506,872	3,606,872	3,712,507	105,635	2.9
○ 국채	241,390	306,738	306,738	145,680	△161,058	△52.5
○ 국채외채권(금융채 등)	197,642	343,255	343,255	174,816	△168,439	△49.1
○ 기타유가증권	60,347	131,459	131,459	64,099	△67,360	△51.2

(자료: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운용 수익률 추이〉

(단위: %)

자산별	2021	2022	2023	2024	2025.9.	2026(전망)
□ 예치금	1.27	2.16	3.89	4.30	3.53	2.91
□ 채권	△0.15	△1.86	6.38	4.59	3.51	3.34
□ 수익증권	0.17	△4.38	8.15	6.84	9.62	4.27
계	0.63	△0.63	6.04	5.72	7.69	3.87

(자료: 금융위원회)

3. 주요경영지표계획

□ 2026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은 일반보증 60.8조원, 위기대응특례보증 3.0조원, 소상공인 위탁보증 0.3조원, 대환보증 1.0조원, 유동화회사보증 12.0조원 등 77.1조원 규모로 운용할 예정임. 이는 2025년 대비 4조 65억원 감소한 수준으로, '22.1월 신규 공급 종료된 소상공인 위탁보증 해지 증가와 코로나 19 및 복합위기 대응과정에서 확대된 보증규모의 점진적 정상화 등을 감안한 것임.

□ 2026년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은 2025년 계획(전망치) 대비 9,271억원 감소한 10조 8,711억원 수준으로 운용배수는 7.1배로 예상됨.

〈2026년도 신용보증기금 주요경영지표 계획안〉

(단위: 억원, %, 배)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 보증공급	678,702	653,403	680,647	640,582	△40,065	△5.9
□ 보증잔액	794,711	831,033	780,536	770,854	△9,682	△1.2
□ 기본재산	121,795	100,188	117,982	108,711	△9,271	△7.9
□ 운용배수	6.5	8.3	6.6	7.1	0.5	7.6

주: 총보증 기준

〈최근 신용보증기금 주요경영지표〉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결산
□ 보증공급	490,878	653,758	652,866	646,493	669,483	678,702
□ 보증잔액	522,161	671,531	785,888	833,689	816,227	794,711
□ 기본재산	53,377	81,922	88,791	105,482	117,227	121,795
□ 운용배수	9.8	8.2	8.9	7.9	7.0	6.5

주: 총보증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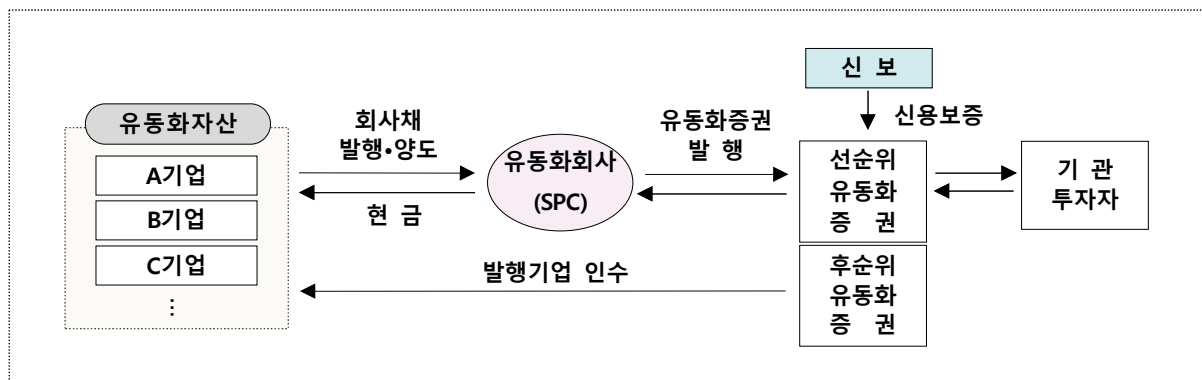
II. 검토의견

1. 신용보증기금 P-CBO 직접 발행 관련 수입·지출 계획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 필요

1) 사업 개요

- 신용보증기금은 별도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개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증권(P-CBO)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회사보증 제도를 2000년 7월 도입하여 운영해왔음.

〈유동화회사보증 기본구조〉



(자료: 금융위원회)

- 이러한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한 유동화증권 발행 및 보증은 유동화증권 발행인이 기금이 아닌 유동화전문회사가 되어 특수채⁹⁸⁾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① 특수채 대비 높은 조달비용⁹⁹⁾을 부담하고, ②

9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특수채”란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제4조제3항)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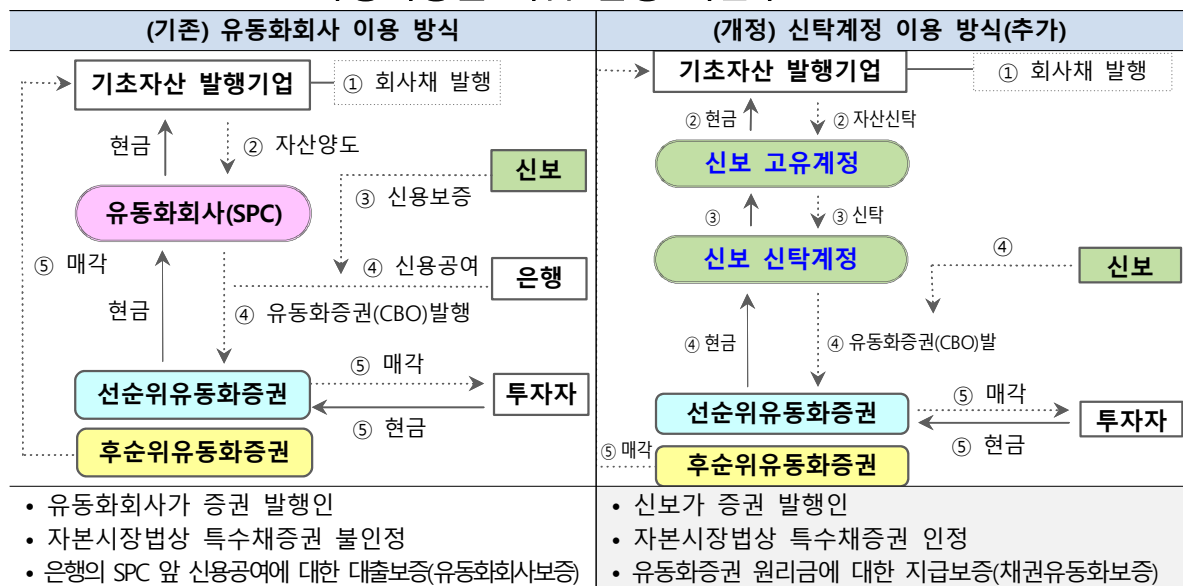
99) 유동화증권 발행 시 기준금리가 특수채가 아닌 회사채 금리로 적용

투자자의 투자회피 성향¹⁰⁰⁾으로 시장 유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지난 2025년 4월 1일 개정되고 10월 2일 시행된 개정 「신용보증기금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신탁방식으로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신탁방식이란 신용보증기금이 개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기초자산)을 직접 인수한 이후, 기금의 신탁계정에 해당 기초자산을 신탁하고, 신탁계정이 이를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수행하는 방식임.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 기본구조〉



(자료: 금융위원회)

100) 원리금 지급이 보장되는 사실상 무위험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채로 분류됨에 따라 투자기관이 국민연금, 산업은행 등 5개 내외로 제한

- 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할 경우 발행금리가 인하¹⁰¹⁾되고, 자산관리수수료, 업무수탁수수료 등이 절감되어 개별기업의 이자 부담이 약 50bp(0.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에 따른 수수료 절감 내용〉

구 분	수수료(Pool 당)		절감가능여부
자산보유자(증권회사)	사채인수수료	대·중견 20bp, 중소 15bp	○
	주관사수수료	1bp	-
신용보증기관(신보)	신용보증료	50~140bp	-
자산관리자(신보)	자산관리수수료	4.0bp	○
업무수탁자	업무수탁수수료	2.4bp	○
자금관리자(은행)	자금관리수수료	1.65bp	○
	신용공여수수료	5bp	○
법무법인	법률자문수수료	16.5백만원	-
회계법인	자산실사수수료	16.5백만원	-
신용평가사	신용평가수수료	1.2bp	-

(자료: 금융위원회)

-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에 따른 내규 제·개정,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할 예정이며,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하여 전체 유동화회사보증 신규 공급 계획액 2.8조원 중 7,500억원을 직접 발행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임.

101) 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과 유사한 제도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직접 발행하는 특수채인 '주택저당증권(MBS)'이 있으며, 최근 3년 간 주택저당증권과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평균 금리 차이는 26bp(0.26%)임.

2) 검토의견

□ 기존에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SPC)를 별도로 설립하여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초자산 인수(매입) 및 유동화증권 발행(매각), 기초자산으로부터의 이자수입¹⁰²⁾ 및 유동화증권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의 행위 주체가 유동화전문회사이므로,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별도의 기금운용계획안 상 수입 및 지출 항목을 계상하지 않았음.

○ 다만, 개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기초자산)이 만기에 상환되지 않아 보증을 제공한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출은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2431-301)’ 세부사업¹⁰³⁾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고,

○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 도래 후 해산 및 청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재원, 대물주식 배당금¹⁰⁴⁾ 등의 수입은 ‘정부출자수입(52-521)’ 및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과목을 통해 수납하고 있음.

102)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 발행 기업이 해당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를 의미

10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를 위하여 4,384억 4,600만원(전년 대비 1,084억 4,100만원(19.8%) 감액)이 편성되어 있음.

104) 신용보증기금이 P-CBO에 대한 대위변제를 한 후 SPC가 보유한 유동화자산(부실편입기업의 출자전환주식 등)을 양도받은 후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

□ 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기초자산의 인수(매입) 및 유동화증권 발행(매각) 주체가 되고, 이에 따라 개별기업으로부터 기초자산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고,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관련 수입·지출 내역이 신규로 편성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매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 7,500억원 및 유동화증권에 대한 이자지급 및 기타 운영경비 80억원 등 7,580억원의 지출과 유동화증권 매각에 따른 수입 7,500억원 및 개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이자 80억원 등 7,580억원의 수입이 각각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되어야 함¹⁰⁵⁾.

〈유동화증권 직접발행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반영 필요 내역〉

수입		지출	
유동화증권 발행	기초자산 이자	기초자산 매입	유동화증권 이자 등
7,500억원 (투자자에게 유동화증권을 매각해서 발생)	약 80억원 (회사채등 발행기업이 지급하는 이자)	7,500억원 (기업으로부터 회사채등 인수 비용)	약 80억원 (이자지급 60억원, 운영비 20억원 등)

(자료: 금융위원회)

105) 해당 내역은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 규모를 7,500억원으로 전제하였을 때 산출되는 내역임.

□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신용보증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이러한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에 부수되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이 기금운용계획안 편성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음.

○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2026년도에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안에 위의 수입(7,580억원) 및 지출(7,580억원) 계획안을 반영하여 작성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협의·조정 과정에서 최종 반영되지 않은 채로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된 후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¹⁰⁶⁾.

□ 이와 같이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을 위한 수입·지출이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되지 않을 경우 ① 2026년도에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없거나, ②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하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되지 않은 수입·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106) 「국가재정법」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⑤ 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⑧ 제1항·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 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각각 같은 항에 규정된 제출·협의 등을 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국가가 지난 2025년 4월 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은 유동화증권 발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부칙¹⁰⁷⁾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시행되었으나, 기금운용계획안에 적정한 수입·지출 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2026년에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못한다면 국회의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임.
-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업무에 해당하고, 「신용보증기금법」상 기금의 모든 업무와 관련된 수입·지출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금운용계획안 외로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 관련 수입·지출이 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107) 개정 신용보증기금법 부칙에서는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로 규정

〈「신용보증기금법」 상 기금의 업무에 대한 수입·지출 사업 현황〉

업무(제23조)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사업	
조항	내용	수입	지출
제1호	기본재산의 관리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85-852) 등	통화금융기관예치(9702-971) 등
제2호	신용보증	면허료 및 수수료(65-651) 등	일반보증 대위변제(2431-300) 등
제2호의2	보증연계투자	고정자산매각익(65-695) 등	보증연계투자(2431-308)
제2호의3	양수자산 권리행사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등	구상권관리(2431-304)
제2호의4	중소·중견기업 팩토링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등	팩토링 금융(2431-314)
제3호	경영지도	면허료 및 수수료(65-651)	경영지도(2431-307)
제4호	산용조사·산용정보관리	면허료 및 수수료(65-651)	미래성장성평가(2431-309) 신용정보(정보화)(2431-315)
제5호	구상권 행사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등	구상권관리(2431-304)
제6호	신용보증제도 조사·연구	면허료 및 수수료(65-651)	신용보증제도 조사·연구(2431-318)
제7호	유동화보증	면허료 및 수수료(65-651) 등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2431-301)
제8호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미편성	미편성

(자료: 금융위원회)

- 참고로, 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서는, 기금이 회사채등 기초자산을 토대로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초자산 취득, 이자 수취 및 지급 등 일련의 행위(회사채등 유동화신탁)를 신용보증기금의 업무¹⁰⁸⁾로 추가하였음.

108)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회사채등 유동화"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기금이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후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이하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이라 한다)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8.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 따라서, 2026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이 적절하게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과 관련한 수입·지출 내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 규모를 당초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이 요구한 7,500억원 규모로 편성하는 것을 전제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되어야 할 수입 및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음.

<유동화증권 직접발행에 관련 기금운용계획안 수입·지출 반영내역(안)>

(단위: 백만원)

수입		지출	
사업명	금액	사업명	금액
기타재산이자수입 (11-546)	7,974	유동화증권 직접발행(신규) (2431-320)	758,014
기타유가증권매각대 (31-843)	750,000		
합계	757,974	합계	758,014

(자료: 금융위원회)

2. 일반회계전입금¹⁰⁹⁾: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일반회계전입금”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등에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계상한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200억원(20.0%)이 감소한 800억원이 편성됨.

〈2026년도 일반회계전입금 수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일반회계전입금	80,000	-	100,000	80,000	△20,000	△20.0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 신용보증기금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된 일반회계전입금 800억원과 자체재원 800억원 등 총 1,600억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AI 등 첨단전략산업 영위기업에게 2조원 규모¹¹⁰⁾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임.

109) 세부사업: 일반회계전입금(91-911)

110) 보증공급 2조원* = 재원 1,600억원(정부출연 800억원 + 자체재원 800억원) × 12.5배

- 구체적으로 보면, 우대보증은 AI, 바이오, 문화, 방산·항공, 기후테크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¹¹¹⁾에 따라 지정된 전략기술 및 「조세특례제한법」¹¹²⁾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 첨단전략산업 영위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보증비율은 기존보다 5% 상향한 95%로 하며, 보증료율은 0.5%(AI 산업은 최대 0.7%) 차감하고, 보증한도는 기업 당 10억원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임.

〈AI 첨단전략산업 우대보증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지원대상	· AI(A), 바이오(B), 문화(C), 방산·항공(D), 기후테크(E) + 「첨단전략산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첨단전략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등)
보증비율	· 95% ※ 현재 해당 업종에 적용 중인 90% 대비 상향
보증료율	· 0.5%p 차감 (AI산업은 최대 0.7%p* 차감) * 최대 차감료율 적용
보증한도	· 기업당 10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11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이 산업 공급망 및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2. 해당 기술의 성장잠재력과 기술난이도 / 3. 해당 기술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4. 해당 기술이 가지는 산업적 중요성 / 5. 해당 기술이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항 내용 생략)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최근 각 국의 첨단산업에 대한 패권경쟁 과정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주요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임.

○ 국회도 지난 2025년 9월,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에 대해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한 바 있음.

○ 신용보증기금은 동 사업의 일반회계전입금과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2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해당 기업들이 비교적 낮은 금융비용으로 적시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 한편, 정부는 앞서 설명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과 함께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첨단전략산업 영위기업 등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 정부는 2025년 3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해 약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이후 국회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첨단전략산

업기금은 75조원 규모로 확대¹¹³⁾되었으며, 정부는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을 포함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구성할 예정이다.

-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성장펀드는 AI,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R&D, 중소·중견 및 장비·설비기업 등 사업 전·후방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방식은 직접 지분투자, 간접 지분투자 등 투자방식뿐만 아니라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대출 등도 함께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계획¹¹⁴⁾임.

□ 이러한 국민성장펀드와 동 사업을 통한 신용보증기금의 우대보증 지원 대상이 유사하다는 점 및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방식 등을 감안할 때, 자금 지원에서 소외되는 중소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우대보증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계획을 면밀히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¹¹⁵⁾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113) 2025. 9. 9. 공포, 2025. 12. 10. 시행 예정

114)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150조원 국민성장펀드가 함께합니다.」, 2025. 9. 10. 참조

115)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및 산업경쟁력 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기업"이라 한다) 및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첨단전략산업기업에 투자 등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3. 그 밖에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에 따라 지정된 전략기술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가전략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으로, 동 우대보증 대상 기업과 유사함.

- 다만, 정부가 발표한 국민성장펀드의 운용 방안¹¹⁶⁾에 따르면, 국민 성장펀드는 여신보다는 투자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산업 내 파 급효과가 큰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는 점 에서, 이러한 자금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보증기 금의 우대보증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중심¹¹⁷⁾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아울러, 기존 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하던 일반보증에서도 첨단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져 왔으므로, 동 우대보증을 통해 지원 하는 대상 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신용보증기금이 자체 재원을 활용한 일반보증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해 제공한 보증규모를 살펴보면, 2021년 약 1.7조원에서 2024년 약 2.7조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5년의 경우 에도 9월말 기준 약 2.6조원을 공급하였음.

116)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150조원 국민성장펀드가 함께합니다.」, 2025. 9. 10. 참조

117)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 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첨단전략산업 영위기업 보증지원 현황(일반보증 신규공급 기준)〉

(단위: 개, 억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9월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3,037	17,016	2,528	14,352	3,083	18,701	3,422	26,842	3,309	26,414

(자료: 금융위원회)

-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회계전입금과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2조원 규모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은 기존 일반보증 프로그램과 달리 첨단전략산업 영위기업 등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우대하여 보증을 공급하려는 것이므로,
- 동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우대조건 등에 대해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업무용건물¹¹⁸⁾: 연내 집행가능성 없는 공사비 감액 필요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업무용건물” 사업은 점포 이전 등을 위해 업무용 건물을 취득하거나, 노후화된 업무용 건물에 대하여 대수선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82억 3,900만원(57.6%)이 증가한 225억 3,3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업무용건물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업무용건물	2,396	14,294	14,294	22,533	8,239	57.6

2) 검토의견

- 신용보증기금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구지점 건물 대수선 공사를 위해 40억원을 편성하였음.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대구지점 건물이 준공 후 44년이 경과하여 배관 노후화, 균열에 따른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있어 대수선 공사를 통해 골조를 제외한 건물 주요 부위를 일괄하여 리모델링하려는 것임.

118) 세부사업: 업무용건물(2431-305)

〈신용보증기금 대구지점 건물 현황〉

※ 준공일: 1980. 12. / 소재지: 대구시 중구 경상감영길 221(동문동)

※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연면적 1,444평)

구 분	입점 조직	대구지점 전경
5층	대구재기지원단(17명)	
4층	영업본부(8명), 보험센터(12명)	
3층	이행팀(5명), 임피부장실(19명)	
2층	대구지점(21명)	
1층	기업은행 대구중앙지점	

(자료: 금융위원회)

- 대구지점 대수선 공사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계획하고 있는 총 소요 예산은 162억 8,400만원으로, 공사비, 설계비 및 감리·부대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신용보증기금 대구지점 대수선 공사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소요 예산	산출 근거
공사비	14,324	연면적 4,774.73m ² × 3백만원/m ²
실시설계비	1,074	공사비 × 5%(설계대가요율) × 1.5배(리모델링)
기본조사설계비	86	실시설계비 × 8%
감리 및 부대비	800	감리비 및 기타 부대비용 예상액
합 계	16,284	-

(자료: 금융위원회)

- 2026년도는 공사 1년차로, 설계비 및 공사비의 일부가 계획안에 반영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2026년도 계획안에는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10억원, 공사비 30억원이 편성되었음.

〈신용보증기금 대구지점 대수선 공사 연차별 예산 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도	2027년도	2028년도
공사비	3,000	3,615	7,709
실시설계비	926	148	-
기본조사설계비	74	12	-
감리 및 부대비	-	300	500
합 계	4,000	4,075	8,209

(자료: 금융위원회)

- 신용보증기금은 2026년 중에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027년부터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나, 이러한 공사추진 일정에 따르더라도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공사비는 연내에 집행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못하고 불용될 것으로 보임.

- 신용보증기금이 제출한 대구지점 대수선 공사 일정에 따르면, 2026년에 기본계획 수립, 설계 공모 및 설계용역 수행,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2026년 12월까지 이러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수행할 시공사를 선정 입찰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2027년 2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됨.

〈신용보증기금 대구지점 대수선 공사 월별 진행계획〉

구 분	내 용	일 정
기본계획 수립	- 용역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 공간계획 수립 및 공사비 추정	'26.1~3월 (3개월)
설계공모	- 설계 공모 (조달청 나라장터) - 당선작 선정 및 계약	'26.4~6월 (3개월)
설계용역 / 인·허가	- 계획·중간·실시설계 및 공사내역 산출 - 각종 인증 및 공사 인·허가	'26.7~12월 (6개월)
공사입찰 및 계약	- 시공사 선정 입찰 - 선정 시공사와 계약 체결	'26.12월 ~ '27.2월 (3개월)
착공 및 준공	- 공종별 공사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견 폐) - 사용 승인 및 세금 납부	'27.3월 ~ '28.12월 (1년 10개월)

(자료: 금융위원회)

- 「국가재정법」 제72조에서는 기금관리주체가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¹¹⁹⁾하고 있음.

119) 「국가재정법」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 ① 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출금액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여기서의 지출원인행위¹²⁰⁾란 신용보증기금이 설계용역을 마치고 시공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이 2026년 이내에 시공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비 30억원에 대해서는 지출원인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없고 불용처리하여야 함.

□ 이와 같이 연내에 집행 가능성이 없고, 다음연도 이월도 불가능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동 사업에 포함된 공사비 관련 지출계획안 30억원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감액할 필요가 있음.

120) 지출원인행위: 세출예산,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추가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지출원인행위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지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된 행위를 의미한다.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4. 위기대응특례보증 대위변제¹²¹⁾: 보증공급 규모에 따른 대위변제 소요액 감액 필요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위기대응특례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관세 피해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유동성 부족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특례 보증을 지원한 후, 주채무자(기업)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182억 9,800만원이 신규 편성됨.

〈2026년도 위기대응특례보증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위기대응특례보증 대위변제	-	-	-	18,298	18,298	순증

2) 검토의견

□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관세피해, 내수침체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유동성 부족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히 자금을 제공하는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공급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1,000억원을 출연¹²²⁾한 바 있음.

121) 세부사업: 위기대응특례보증 대위변제(2431-319)

122)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출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되어 확정되었음.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 신용보증기금은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출연금 1,000억원과 자체재원 1,400억원 등 총 2,400억원을 마련하여 이를 기반으로 총 3조원 규모¹²³⁾의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2025년 5월부터 공급하였음.

□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기업은 관세조치·산업위기·재난으로 인한 피해기업이고, 특례한도는 3억원(산업위기·재난)에서 5억원(관세조치)¹²⁴⁾, 보증비율은 90%, 보증료율은 0.3%p(산업위기·재난)에서 0.5%p(관세조치) 차감하도록 하였음.

○ 관세조치 피해기업이란 미국 수출입 실적이 감소하거나 자동차 등 관세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산업위기 피해기업이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¹²⁵⁾¹²⁶⁾의 주된산업 관련 협력기업을, 재난 피해기업이란 특별재난지역¹²⁷⁾에 소재하는 기업을 각각 의미함.

123) 보증공급 3조원 = 재원 2,400억원(정부출연 1,000억원 + 자체재원 1,400억원) × 12.5배

124) 단,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모든 기업에 대해 소요자금 한도 내에서 공급

125)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계획(이하 “선제대응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26) 2025. 10. 기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현황

전남 여수시(’25.5.1일 지정), 경북 포항시(’25.8.28일 지정), 충남 서산시(’25.8.28일 지정)

1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신설된 “위기대응특례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신용보증기금이 2025년 5월부터 공급된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공급하기 위해 기금 내 별도 계정을 신설함에 따라, 위기대응 특례보증에서의 부실 발생 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에 소요되는 지출액을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임.

○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공급하는 경우 일반적인 보증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대위변제는 ‘일반보증 대위변제’ 세부사업(2431-300)에 편성된 지출액에서 집행하되, 위기대응 특례보증과 같이 기금 내 별도의 계정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사업¹²⁸⁾을 편성하고 있음.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위기대응특례보증 대위변제’ 세부사업에서는 대위변제 소요예산으로 18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산출근거는 2026년 ‘부실순증액’에 ‘예상 대위변제 이행률’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음.

〈2026년도 위기대응특례보증 대위변제 사업 산출근거〉

· 대위변제 소요예산(182억 9,800만원) = 부실순증액(258억원)* × 대위변제이행률(70.92%)**
* 부실순증액(258억원) = 2026년초 보증잔액(약 3조원) × 예상 부실률(0.9%)
** 대위변제이행률(70.92%) : $\frac{(5년누계)대위변제발생액}{(5년누계)기초부실잔액 + 당기부실순증}$
※ 단, 위기대응 특례보증은 2025. 5. 신설된 계정으로 5개년 경험률 산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직접보증 대위변제발생률 및 해지율을 준용

(자료: 금융위원회)

128) 소상공인위탁보증 대위변제(2431-316), 대환보증 대위변제(2431-317) 등

□ 이와 같은 대위변제 소요금액 산출은 2025년도에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에서 당초 계획한 3조원을 전액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한 것이나, 실제 2025년 월별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의 월별 보증공급 실적을 살펴보면, 2025년 5월부터 9월까지 약 1조원 규모로 공급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대부분은 관세조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남.

〈위기대응 특례보증 월별 보증공급 실적(2025년)〉

(단위: 개, 억원)

구 분	5월		6월		7월		8월		9월		총 합 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위기대응 특례보증	93	425	332	1,192	583	2,059	790	2,679	1,173	4,238	2,944	10,592
관세조치 피해기업	91	419	328	1,181	574	2,035	757	2,606	1,129	4,126	2,855	10,367
산업위기 피해기업	1	3	1	3	2	5	-	-	-	-	4	11
재난 피해기업	1	3	3	8	7	19	33	73	44	112	85	214

(자료: 금융위원회)

○ 이 중 산업위기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규모가 저조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당초 특례보증을 출시할 당시 (2025. 5.)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 전남 여수시 1곳에 불과하였으나, 2025년 8월말 경북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가 추가로 지정되어 향후 보증공급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함.

○ 다만, 산업위기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공급이 일정부분 증가하더라도, 최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는 등 특례보증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요인이 적다는 점에서, 2025년말 예상 공급규모는 약 1.5조원 규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2025년 연간 예상 공급규모를 감안할 때, 3조원을 공급할 것을 전제로 편성된 동 사업의 대위변제 소요예산은 일부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 2025년도 예상 공급규모를 1.5조원에 해당할 경우 2026년도 예상 부실순증액은 258억원에서 151억원으로 감소하고, 이로 인한 대위변제 소요액은 당초 182억 9,800만원에서 107억 4,000만원으로 감소함.

○ 따라서, 대위변제 소요액 감소분에 해당하는 약 76억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위변제 소요액 재산출 내역〉

구분	기존	재산출
2025년 예상 공급규모	3조원	1.5조원
부실순증액	258억원 2026년초 보증공급액 (약 3조원) × 예상 공급부실률(0.9%)	151억원 2026년초 보증공급액(약 1.5조원) × 예상 공급부실률(0.9%) + 2026년말 보증공급액(약 1.5조원) × 예상 공급부실률(0.1%)
대위변제 소요예산	182억 9,800만원 부실순증액(258억원) × 대위변제이행률(70.92%)	107억 4,000만원 부실순증액(151억원) × 대위변제이행률(70.92%)

(자료: 금융위원회)

제3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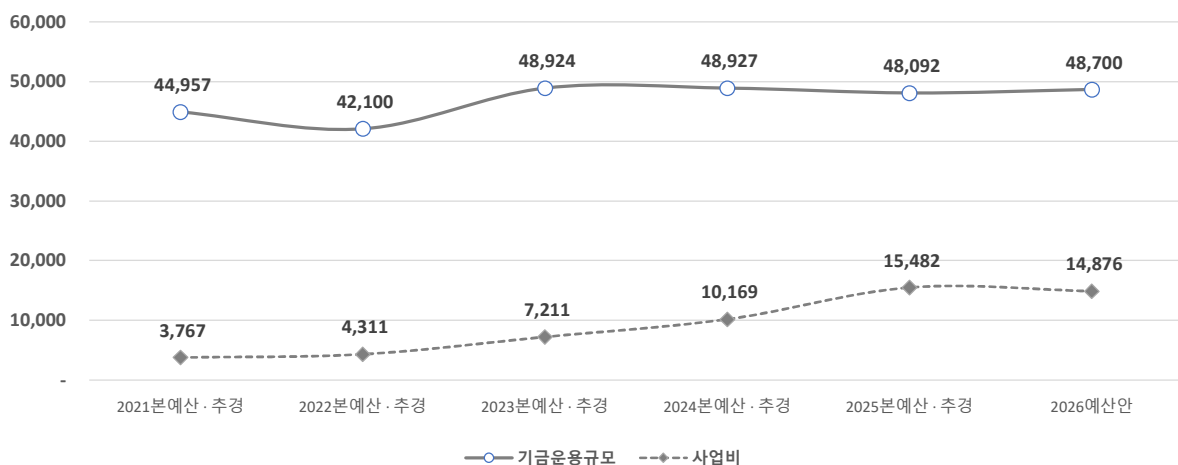
1. 개 요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주택금융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7년에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2004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설치근거법이 변경되었음.

□ 최근 5년간 기금의 운용규모 추이를 보면, 2021년 4조 4,957억원, 2022년 4조 2,100억원 수준으로 축소되었다가 2023년 4조 8,924억원, 2024년 4조 8,972억원, 2025년 4조 8,092억원, 2026년 4조 8,700억원으로 운용규모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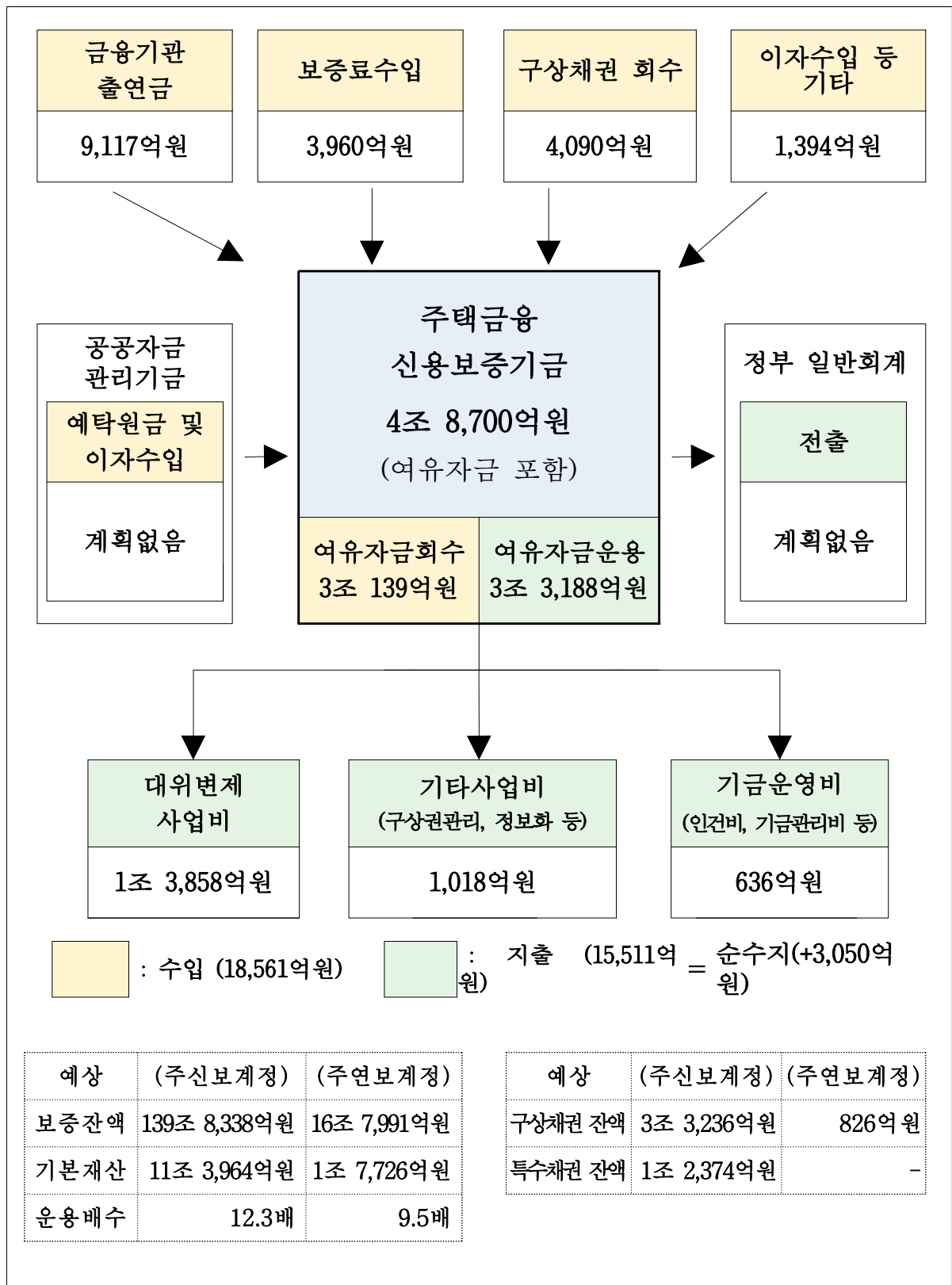
〈최근 5년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규모 및 사업비 내역〉

(단위: 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2026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요 수입·지출 항목〉



(자료: 금융위원회)

1. 수입계획안

- 2026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은 4조 8,699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8억 2,400만원(1.3%)이 증액 편성됨.

〈2026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4,579,651	4,809,162	4,809,162	4,869,986	60,824	1.3
□ 재산수입	158,758	200,554	200,554	139,136	△61,418	△30.6
□ 경상이전수입	1,308,488	1,508,989	1,508,989	1,320,712	△188,277	△12.5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301,403	408,276	408,276	396,218	△12,058	△3.0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2,811,002	2,691,343	2,691,343	3,013,920	322,577	12.0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	-	-	-	-	-

(자료: 금융위원회)

- ‘재산수입’은 기금의 예치금, 유가증권 등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리 인하에 따른 예상수익률 하락에 따라 전년 대비 614억 1,800만원(△30.6%) 감소한 1,391억원이 편성됨.
- ‘경상이전수입’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구상권 회수, 공탁금 반환 등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출연요율 하락에 따른 금융기관 출연금 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1,882억 7,700만원(△12.5%) 감소한 1조 3,207억 1,200만원이 편성됨.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신용보증료 수입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주택보증 및 주택연금 공급규모 추이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20억 5,800만원(△3.0%) 감소한 3,962억 1,800만원이 편성됨.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는 국채, 기타유가증권 매각대 및 통화 금융기관예치금 회수 등 여유자금회수에 따른 수입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 만기 도래되는 여유자금 회수금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225억 7,700만원(12.0%) 증가한 3조 139억 2,000만원이 편성됨.
- ‘정부내부수입’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원금회수 및 예탁이자수입으로, 2026년도는 예탁 및 회수계획이 없음

2. 지출계획안

1) 총괄

□ 2026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지출계획안은 4조 8,699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8억 2,400만원(1.3%)이 증액 편성됨.

〈2026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4,579,651	4,809,162	4,809,162	4,869,986	60,824	1.3
□ 사업비	991,265	1,548,198	1,548,653	1,487,559	△61,094	△3.9
○ 대위변제	911,040	1,425,214	1,425,214	1,385,788	△39,426	△2.8
○ 기타사업비	80,225	122,984	123,439	101,771	△21,668	△17.6
□ 기금운영비	56,520	59,637	59,637	63,587	3,950	6.6
○ 인건비	42,805	46,562	46,562	50,641	4,079	8.8
○ 기타운영비	13,715	13,075	13,075	12,946	△129	△1.0
□ 정부내부지출	-	-	-	-	-	-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	-	-	-	-
○ 일반회계전출	-	-	-	-	-	-
□ 여유자금운용	3,531,866	3,201,327	3,200,872	3,318,840	117,968	3.7

(자료: 금융위원회)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사업비 계획안은 1조 4,875억 5,900만원으로 주택보증 및 주택연금 대위변제 추세 등을 반영하여 2025년도 수정 계획 대비 610억 9,400만원(△3.9%) 감소함.

○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635억 8,700만원으로 예산절감 노력 등의 감액

요소도 반영되었으나, 인건비의 증원 및 인상률 반영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9억 5,000만원(6.6%) 증가함.

- 2026년도 여유자금운용 규모는 3조 3,188억 4,000만원으로 사업비
지출규모 감소 및 2025년도 만기도래 여유자금 회수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179억 6,800만원(3.7%) 증가함.

- 최근 5년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프로그램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
경비성 프로그램인 기금운영비와 내부거래·보전거래 성격의 프로그램을
제외한 사업비는 모두 주택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음.

〈최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별 지출계획 내역〉

(단위: 억원, %)

프로그램명	2021년		2022년		2023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주택금융지원(2600)	3,766	3,766	4,023	4,311	3,959	7,213
기금운영비(3400)	626	881	633	660	638	753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8500)	-	-	-	-	-	-
일반회계전출금(8900)	2,000	2,000	2,320	2,320	-	-
여유자금운용(9700)	38,565	38,310	35,124	34,809	44,327	40,958
합 계	44,957	44,957	42,100	42,100	48,924	48,924
프로그램명	2024년		2025년		2026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계 획 안	
주택금융지원(2600)	7,814	10,169	15,482	15,487	14,876	
기금운영비(3400)	579	588	597	597	636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8500)	-	-	-	-	-	
일반회계전출금(8900)	-	-	-	-	-	
여유자금운용(9700)	40,579	38,215	32,013	32,008	33,188	
합 계	48,972	48,972	48,092	48,092	48,700	

(자료: 금융위원회)

2) 사업비

- 2026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소관 사업비 계획안은 1조 4,875억 5,900만원으로 2025년 수정 계획 대비 610억 9,400만원(△3.9%) 감액됨.
- 2026년도 사업비 계획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보증료환급 21억 4,100만원(6.1%)이 증액 편성되었고, 대위변제 394억 2,600만원(△2.8%), 구상권관리 3억 1,400만원(△0.7%), 사업수수료 35억 2,200만원(△20.9%), 담보설정비용 194억 9,600만원(△86.2%), 주신보IT운영 4억 7,700만원(△7.8%)이 감액 편성됨.

〈2026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사업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계획안(B)	증 감 (B-A)	(B-A)/A
		당초	수정(A)			
□ 사업비	991,265	1,548,198	1,548,653	1,487,559	△61,094	△3.9
○ 주신보운영	983,949	1,542,535	1,542,535	1,481,918	△60,617	△3.9
- 대위변제	911,040	1,425,214	1,425,214	1,385,788	△39,426	△2.8
- 보증료환급	32,686	34,893	34,893	37,034	2,141	6.1
- 구상권관리	27,368	42,919	42,919	42,605	△314	△0.7
- 사업수수료	10,489	16,891	16,891	13,369	△3,522	△20.9
- 담보설정비용	2,366	22,618	22,618	3,122	△19,496	△86.2
○ 주신보 IT운영(정보화)	7,316	5,663	6,118	5,641	△477	△7.8

(자료: 금융위원회)

- ‘대위변제’ 사업은 보증이용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금이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채무를 금융기관에 직접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지출 항목으로, 주택신용보증 및 주택연금보증의 대위변제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94억 2,600만원($\Delta 2.8\%$) 감소한 1조 3,857억 8,800만원으로 편성됨.

- ‘보증료환급’ 사업은 보증기간 중 중도해지 시 선취한 보증료를 환급하여 주는 지출 항목으로, 사업자보증의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및 주택연금 중도해지 증가추세에 따른 환급액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1억 4,100만원(6.1%) 증가한 370억 3,400만원이 편성됨.
- ‘구상권관리’ 사업은 부실 및 대위변제가 발생한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 소송, 채권회수활동 등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주택보증 및 주택연금 대위변제 규모에 따른 구상권 관리비용 추이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3억 1,400만원($\Delta 0.7\%$) 감소한 426억 500만원이 편성됨.
- ‘사업수수료’ 사업은 보증 취급관련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취급수수료 및 기타 보증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지출 항목으로, 최근 금융기관 대상 위탁수수료의 지급소요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5억 2,200만원이 감소($\Delta 20.9\%$)한 133억 6,900만원이 편성됨.
- ‘담보설정비용’ 사업은 주택연금 대상 주택에 대한 담보설정 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및 제반비용을 납부하기 위한 지출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주택연금 가입주택 담보설정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일몰

기한이 2027년말까지 연장된 점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94억 9,600만원 (△86.2%)이 감소한 31억 2,200만원이 편성됨.

- ‘주신보 IT운영(정보화)’ 사업은 전산장비 및 시스템 유지 등을 위한 비용으로, 전년대비 4억 7,700만원(△7.8%) 감소한 56억 4,100만원이 편성됨.

3) 기금운영비

□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635억 8,700만원으로 예산절감 노력 등의 감액 요소도 반영되었으나, 인건비의 증원 및 인상률 반영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9억 5,000만원(6.6%) 증액 편성됨.

〈2026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기금운영비	56,520	59,637	59,637	63,587	3,950	6.6
○ 인건비	42,805	46,562	46,562	50,641	4,079	8.8
○ 기타운영비	13,715	13,075	13,075	12,946	△129	△1.0
- 기금관리비	12,814	13,075	13,075	12,946	△129	△1.0
- 법인세	901	-	-	-	-	-

(자료: 금융위원회)

- ‘인건비’는 정부지침에 의한 공통 처우개선 및 증원인력의 인건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0억 7,900만원(8.8%) 증가한 506억 4,100만원이 편성됨.
- ‘기금관리비’는 예산절감 노력으로 전년 대비 1억 2,900만원(△1.0%) 감소한 129억 4,600만원이 편성됨.
- ‘법인세’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법인세에 대한 예산편성 및 결산절차 변경으로 2026년도 계획안에 편성되지 않았음

4) 정부내부지출

☐ 2026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정부내부지출 계획은 없으며, 전년과 동일함.

〈2026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정부내부지출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정부내부지출	-	-	-	-	-	-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	-	-	-	-
○ 일반회계전출	-	-	-	-	-	-

(자료: 금융위원회)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기금 여유재원의 일부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의 경우 예탁계획 없음.
- ‘일반회계전출’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금 여유재원의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의 경우 전출계획 없음.

5) 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총수입액 중 사업비 및 기금 운영비, 정부내부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자금을 정기예금, 연기금투자, 국채, 회사채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사업비 지출규모 감소 및 2026년 만기도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179억 6,800만원 (3.7%) 증액된 3조 3,188억 4,0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운용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여유자금운용	3,531,866	3,201,327	3,200,872	3,318,840	117,968	3.7

(자료: 금융위원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운용 수익률 추이〉

(단위: %)

자산별	2021	2022	2023	2024	2025.9
□ 예치금	1.33	2.16	4.18	4.12	2.62
□ 채권	△0.28	△1.13	6.39	4.66	2.79
□ 수익증권	3.16	△5.11	9.97	7.53	7.69
계	1.68	△2.58	7.97	6.20	5.74

(자료: 금융위원회)

3. 주요경영지표계획

☐ 주택신용보증계정

- 2026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신용보증계정(이하 “주신보계정”)의 보증공급은 최근 공급실적 추이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년 계획 대비 3조 3,700억원(4.5%) 증가한 78조 7,000억원, 보증잔액은 전년 계획 대비 2조 4,589억원(△1.7%) 감소한 139조 8,338억원으로 계획하였음.
- 2026년 주신보계정의 기본재산은 전년 계획 대비 6,310억원(5.9%) 증가한 11조 3,964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운용배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을 계획하였음.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 2026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이하 “주연보계정”)의 보증공급은 최근 공급실적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전년 계획대비 7,700억원(△3.1%) 감소한 24조 1,000억원, 연금지급잔액은 전년 계획대비 2조 2,076억원(15.1%) 증가한 16조 7,991억원으로 계획하였음.
- 2026년 주연보계정의 기본재산은 전년 계획 대비 3,133억원(21.5%) 증가한 1조 7,726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운용배수는 전년 대비 0.5배 감소한 9.5배에 이를 것을 계획하였음.

〈2026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요경영지표 계획안〉

(단위: 억원, %, 배)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주택신용보증계정						
○ 보증공급	762,576	753,300	753,300	787,000	33,700	4.5
○ 보증잔액(A)	1,309,777	1,422,927	1,422,927	1,398,338	△24,589	△1.7
○ 기본재산(B)	110,595	107,654	107,654	113,964	6,310	5.9
○ 운용배수(A/B)*	11.1	12.4	12.4	12.3	△0.1	△0.8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 보증공급	194,499	248,700	248,700	241,000	△7,700	△3.1
○ 연금지급액	26,406	33,072	33,072	35,507	2,435	7.4
○ 연금지급잔액(C)	119,582	145,915	145,915	167,991	22,076	15.1
○ 기본재산(D)	12,764	14,593	14,593	17,726	3,133	21.5
○ 운용배수(C/D)	9.4	10.0	10.0	9.5	△0.5	△5.0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전세보증과 반환보증의 중복금액을 제외하고 계산

(자료: 금융위원회)

〈최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요경영지표〉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결산
□ 주택신용보증계정						
○ 보증공급	545,778	646,593	650,943	729,907	755,260	762,576
○ 보증잔액(A)	898,511	1,057,518	1,169,990	1,236,335	1,308,230	1,309,777
○ 기본재산(B)	81,695	79,175	86,654	88,993	100,176	110,595
○ 운용배수(A/B)*	11.0	13.3	13.4	13.7	12.6	11.1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 보증공급	113,325	111,028	150,255	249,692	225,016	194,499
○ 연금지급액	10,973	12,105	14,547	19,242	23,856	26,406
○ 연금지급잔액(C)	43,407	52,484	62,811	78,860	98,466	119,582
○ 기본재산(D)	2,889	4,524	6,495	7,844	10,205	12,764
○ 운용배수(C/D)	15.0	11.6	9.7	10.1	9.6	9.4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전세보증과 반환보증의 중복금액을 제외하고 계산

(자료: 금융위원회)

II. 검토의견

1. 법정부담금(주택신용보증계정·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¹²⁹⁾, 면허료 및 수수료(주택신용보증계정)¹³⁰⁾: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영향을 반영한 기금 수입액 조정 필요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법정부담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이 해당 기관에서 취급하는 주택자금대출 평균잔액에 일정한 출연요율을 곱한 금액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수입사업임.
 - 주택신용보증계정(이하 “주신보계정”이라 함) 내 법정부담금 수입에 대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2,407억 400만원(△22.6%)이 감소한 8,220억 3,900만원임.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이하 “주연보계정”이라 함) 내 법정부담금 수입에 대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53억 6,500만원(△5.6%)이 감소한 896억 8,500만원임.
- “면허료 및 수수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일정 규모의 보증료를 징수하는 수입사업으로¹³¹⁾, 주신보계정 내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에 대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236억 3,700만원(△13.0%)이 감소한 1,581억 600만원임.

129) 세부사업: 법정부담금(59-593)

130) 세부사업: 면허료 및 수수료(65-651)

〈2026년도 법정부담금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법정부담금	1,069,786	1,157,793	1,157,793	911,724	△246,069	△21.3
- 주택신용보증계정	985,429	1,062,743	1,062,743	822,039	△240,704	△22.6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84,357	95,050	95,050	89,685	△5,365	△5.6

(자료: 금융위원회)

〈2026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면허료 및 수수료 (주택신용보증계정)	125,958	181,743	181,743	158,106	△23,637	△13.0

(자료: 금융위원회)

□ (법정부담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 및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은행 등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매월 기금출연기준대출금¹³²⁾에 일정 출연요율을 곱한 금액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고, 해당 금액은 기금 내 “법정부담금” 수입액으로 계상됨¹³³⁾.

132)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반환대출 및 중도금대출 등 기타 주택자금대출

133) 기금의 법정부담금 수입 중 주택담보대출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연보계정으로 수납되어 주택연금 관련 기금 운용에 활용됨. 주연보계정으로 수납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주신보계정으로 수납되는 구조임.

〈금융기관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관련 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③ 제2조제1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곱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3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 1의 출연요율을 말한다.

②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이하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의 대출금. 다만, 다음 각 목의 대출금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각 목 생략)

2.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대출금

가.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구입·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기 위한 대출금[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을 포함하되,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을 제외한다]

나. 주택사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 다만, 제1호나목에 따른 대출금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다. 사업주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무상대여를 포함한다)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라. 주택을 분양(임대를 포함한다)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기 위한 대출금

마. 법 제2조제8호의 신용보증을 받은 대출금.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사. 그 밖의 주택자금 대출금

제4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 ①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1의 출연요율

2.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1의 출연요율) -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법 제59조의3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 2의 출연요율을 말한다.

②법 제59조의3제4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이하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다)의 다음 각 목의 대출금

가.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구입하기 위한 대출금[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을 포함

하되, 제1호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8호의 신용보증을 받은 대출금 중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다. 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라. 그 밖의 주택자금 대출금 중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제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 ① 금융기관은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2.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2의 출연요율) × 100분의 20
--

- (면허료 및 수수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1조 및 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금액의 연 100분의 2 범위 안에서 보증종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보증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은 기금 내 주신보계정의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액으로 계상됨.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수입 관련 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1조(보증료 등) ① 공사는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기금의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u>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보증금액의 연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u> ② (생략) ③ 공사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보증료의 납부기한까지 보증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 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연체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u>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6조(보증료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란 신용보증을 한 금액에 공사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증료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증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1. 신용보증 대상자의 신용도 2. 신용보증금액의 규모 3. 신용보증기간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신용보증을 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납 보증료에 연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검토의견

□ 최근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제어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및 한도 제한,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및 한도 제한, 주택담보대출 적용 스트레스 금리 상향 등 일련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였음.

〈2025년도 주요 가계부채 관리 대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 가계대출(금융권 자체대출 및 정책대출) 총량 관리목표 하향 감축 - 금융권 자체대출: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감축 - 정책대출(디딤돌, 버팀목, 보증자리론):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 ◦ 은행권 자율관리조치 전금융권 확대 시행 - 수도권·규제지역 내 유주택자(처분 조건부 1주택자 제외)의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LTV=0%) -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1주택자 한정 은행자율 → 최대 1억원)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 제한(은행자율 → 30년) -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 6억원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정책대출 포함) LTV 강화(80%→70%) ◦ 주택도시보증기금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최대한도 축소 ◦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90%→80%)
9·7 가계부채 추가 관리 강화 방안	◦ 규제지역 내 주담대 LTV 강화(50% → 40%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LTV=0%) ◦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 2억원 제한 ◦ 금융기관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시 적용되는 출연요율 개편(대출유형 기준 → 대출금액 기준)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6년 4월 시행 추진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주담대 한도 강화조치 차등적용(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 2억원)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적용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1.5% → 3.0%) ◦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 ◦ 은행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조기시행(2026년 4월 시행 → 2026년 1월 시행)

(자료: 2025년 6·27, 9·7, 10·15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및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내용 재구성)

○ 이러한 정책 기조는 정책모기지 상품을 포함한 금융권의 주택담보 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공급 규모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시중 은행들은 정부 정책방향에 맞추어 가계대출, 특히 주택 관련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¹³⁴⁾.

□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필연적으로 주택 관련 대출 시장의 위축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핵심 수입원인 금융기관 출연금 및 보증료 수입 감소로 직결될 수 있음.

○ 금융기관 출연금(법정부담금) 규모는 주택 관련 대출 잔액에 연동되고, 보증료 수입(면허료 및 수수료) 역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규 보증 공급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임.

○ 따라서 2026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정책이 기금 수입액 규모에 미칠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계획액 규모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2025년도 세 차례에 걸친 주요 가계부채 관리 대책 중 일부(9월 7일 및 10월 15일 발표)는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제출(9월 3일) 이후 발표된 것으로, 추가 대책 발표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공급 규모가 실제로 축소된다면 관련 기금 수입 감소

134) 경향신문, “은행권, 가계대출 연말까지 더 조일 듯”, 2025. 10. 27.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27202100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뉴스1, “4분기 대출 문턱 높아진다…한은 “6·27 대책 여파, 주택·신용대출 강화 전망”, 2025. 10. 27.
(<https://www.news1.kr/economy/trend/5954251>)

가 불가피하므로, 2026년도 금융기관 출연금 및 보증료 수입 계획액을 현실적인 시장 상황과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보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에 연동되는 법정부담금의 경우,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목표 하향, 수도권·규제지역 중심의 직접적인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강화,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에 따른 은행 여신심사 강화 조치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2026년도 중 법정부담금 수입의 일정 수준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2025. 9. 7.)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2026년 4월 시행 추진)을 통해 주택도시보증·은행 등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법정출연금의 기준요율 체계를 개편할 계획인데, 기존의 대출유형¹³⁵⁾별 차등 요율 체계를 금융권 평균 대출금액 대비 기관별 대출금액 비중에 따라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개편안은 금융기관의 고액 주택담보대출 취급 유인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공급 규모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135) 고정·변동금리, 분할상환·만기일시 등

〈금융기관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개편 계획(안)〉

구분	현행			개편 후	
	구분		요율(%)	구분	요율(%)
기준 요율	비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인 경우		연 0.05	평균 대출액 ¹⁾ 이하	연 0.05
	비거치식 분할상환· 고정금리가 아닌 경우	주택도시기금 대출금	연 0.26	평균 대출액 초과~2배 이내	연 0.25
		그 외 대출금	연 0.30	평균 대출액의 2배 초과	연 0.30

주1)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전년도 평균 주담대 대출액을 산정(매년 3월)하고, 당해연도 출연료 산출(매년 4월)시 반영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별표1 및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9. 7.) 내용 재구성)

○ 또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공급 규모 축소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규 신용보증 공급 역시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바, 공사의 신용보증¹³⁶⁾ 대상금액에 연동되는 보증료 수입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예기치 못한 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계획액의 일부 증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2026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계획액 규모 증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단계에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대책이 기금 수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수입 계획액을 적정 수준으로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36) 개인보증(전세자금, 구입자금 등), 사업자보증(건설자금, PF), 임차보증금반환보증

제4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Ⅰ. 개 요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하여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원활한 지원과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치된 기금임.

1971년 1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정 후 1972년 2월 기금 관리주체¹³⁷⁾인 농협중앙회가 1억원을 출연하며 보증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6년도 계획안 기준 보증잔액은 18조 6,165억원임.

□ 2026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운용 규모는 2조 2,249억원으로, 금융기관 출연금(2,480억원), 보증료수입(981억원), 이자수입 등(540억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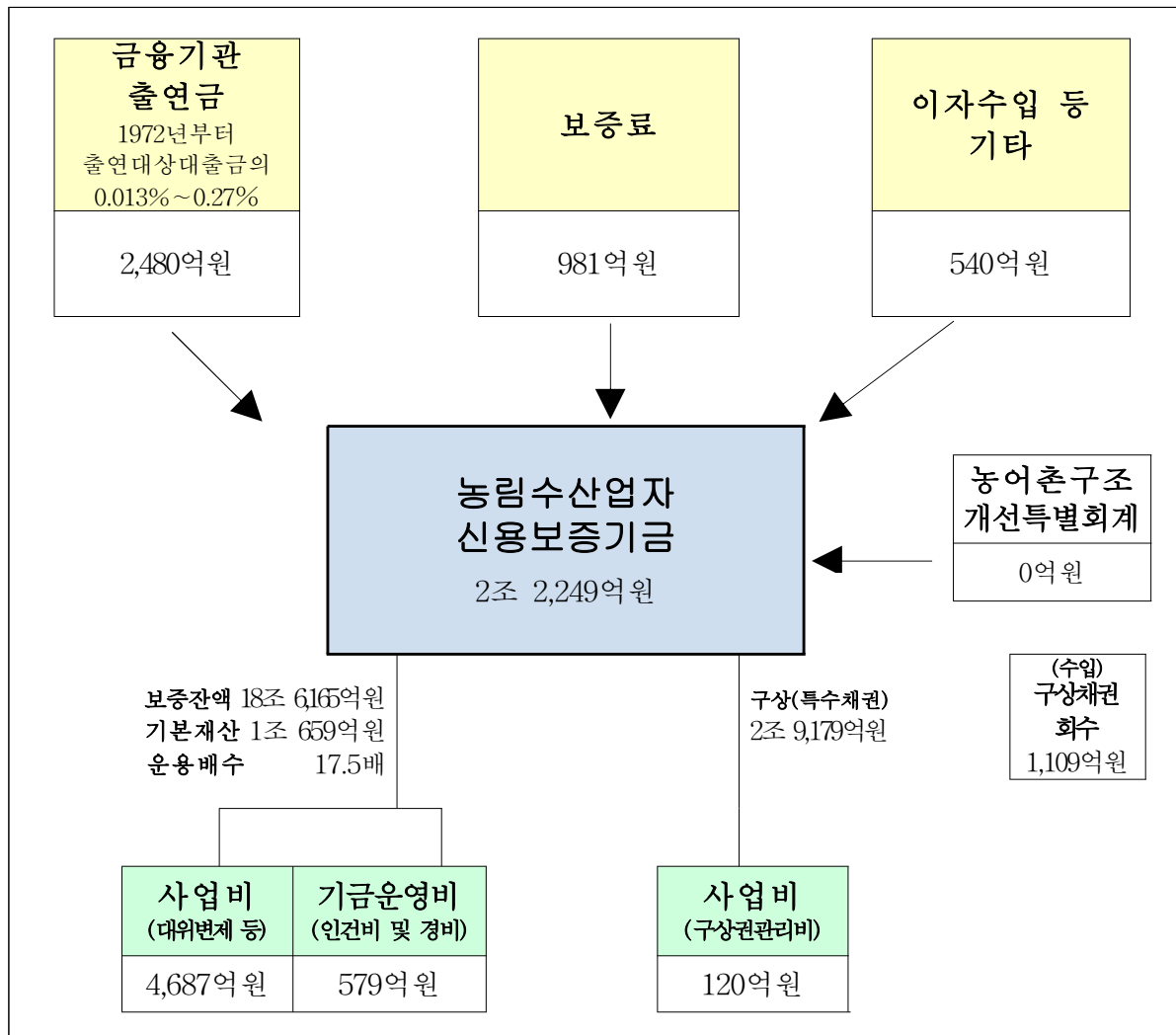
○ 이를 대위변제 등 사업비(4,807억원), 기금운영비(579억원) 등에 지출할 계획으로 있음.

137)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5조(관리기관)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취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와 그 기관의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026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요 수입·지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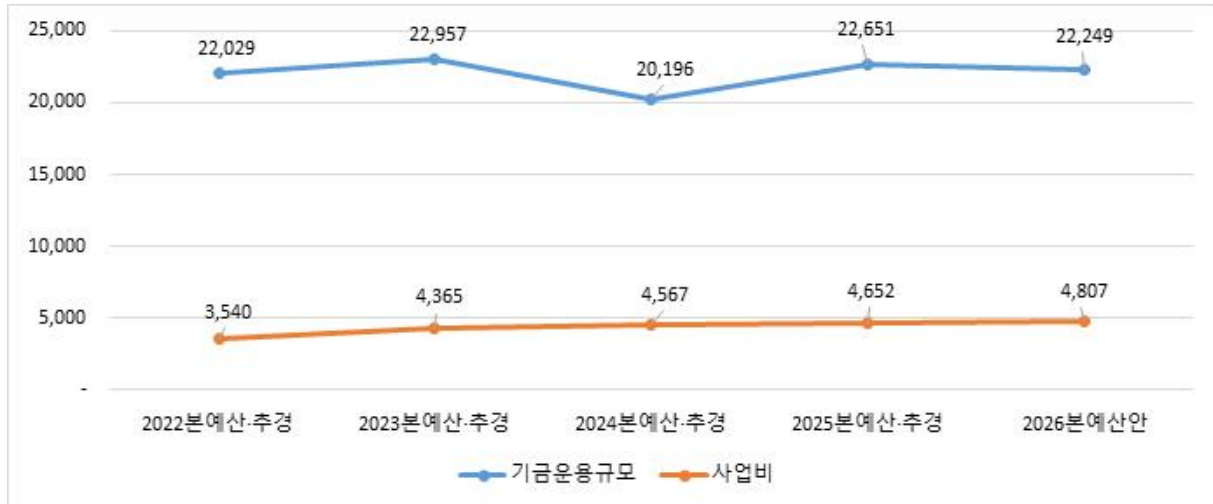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 최근 5년간 기금의 운용규모 추이를 보면 2022년 2조 2,029억원, 2023년 2조 2,957억원, 2024년 2조 196억원, 2025년 2조 2,651억원이며, 2026년도 계획안은 2조 2,249억원으로 전년대비 운영규모가 다소 감소하였음

〈최근 5년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운용규모 및 사업비 내역〉

(단위: 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1. 수입계획안

- 2026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은 2조 2,249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1억 9,700만원(△1.8%)이 감액 편성됨.

〈2026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2,057,449	2,265,114	2,265,114	2,224,917	△40,197	△1.8
□ 재산수입	63,006	44,895	44,895	39,600	△5,295	△11.8
□ 경상이전수입	310,928	358,429	358,429	369,145	10,716	3.0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66,480	74,417	74,417	102,298	27,881	37.5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1,587,035	1,637,373	1,637,373	1,713,874	76,501	4.7%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30,000	150,000	150,000	-	△150,000	순감

(자료: 금융위원회)

- ‘재산수입’은 기금의 예치금, 유가증권 등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전년 대비 52억 9,500만원(△11.8%) 감소한 396억원이 편성됨.
- ‘경상이전수입’은 금융기관 출연금, 구상권 회수금 등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융기관 출연금 증가(2,480억 4,200만원), 구상채권 회수금 증가(1,108억 6,500만원)로 전년대비 107억 1,600만원(3.0%) 증가한 3,691억 4,500만원이 편성됨.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보증료 수입 및 수수료, 매각채권 잔여

이익금 등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대비 278억 8,100만원(37.5%) 증가한 1,022억 9,800만원으로 편성됨.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는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등 여유자금회수에 따른 수입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6년 만기 도래하는 예치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65억 100만원(4.7%) 증가한 1조 7,138억원 7,400만원이 편성됨.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는 농특회계전입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 회수 및 예탁이자 수입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농특회계 전입금 미반영되어, 0원이 편성됨.

2. 지출계획안

1) 총괄

□ 2026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출계획안은 2조 2,249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1억 9,700만원(△1.8%)이 감액 편성됨.

〈2026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합 계	2,057,449	2,265,114	2,265,114	2,224,917	△40,197	△1.8
□ 사업비	441,509	463,959	465,190	480,707	15,517	3.3
○ 대위변제금	419,513	438,010	438,010	454,500	16,490	3.8
○ 보증료환급	5,277	5,689	5,689	7,056	1,367	24.0
○ 구상권관리비	10,912	13,884	13,884	11,974	△1,910	△13.8
○ 위탁사업비	3,302	3,754	3,754	4,555	801	21.3
○ 농신보IT유지비(정보화)	2,505	2,622	3,853	2,622	△1,231	△31.9
□ 기금운영비	54,819	57,281	57,281	57,882	601	1.0
○ 인건비	48,965	50,434	50,434	52,200	1,766	3.5
○ 기타운영비	5,854	6,847	6,847	5,682	△1,165	△17.0
□ 여유자금운용	1,561,121	1,743,874	1,742,643	1,686,328	△56,315	△3.2
○ 통화금융기관예치	1,105,198	1,713,874	1,712,643	1,656,328	△56,315	△3.3
○ 예치금융가증권매입	455,923	30,000	30,000	30,000	-	-

(자료: 금융위원회)

○ 2026년도 사업비 계획안은 4,807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5억 1,700만원(3.3%) 증가하였으며,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578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00만원(1.0%) 증가함.

○ 여유자금운용 규모는 1조 6,863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3억 1,500만원(△3.2%) 감소함.

□ 최근 5년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프로그램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경비성 프로그램인 기금운영비와 여유자금운용 프로그램을 제외한
사업비는 모두 산업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음.

〈최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별 지출계획 내역〉

(단위: 억원, %)

프로그램명	2021년		2022년		2023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산업금융지원(2400)	3,493	3,493	3,540	3,540	3,460	4,365
기금운영비(3300)	557	557	548	548	548	548
여유자금운용(9700)	16,449	16,449	17,941	17,941	18,948	18,044
합 계	20,499	20,499	22,029	22,029	22,957	22,957
프로그램명	2024년		2025년		2026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계획안(B)	
산업금융지원(2400)	3,567	4,567	4,640	4,652	4,807	
기금운영비(3300)	556	556	572	572	579	
여유자금운용(9700)	16,073	15,073	17,439	17,427	16,863	
합 계	20,196	20,196	22,651	22,651	22,249	

(자료: 금융위원회)

2) 사업비

□ 2026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소관 사업비 계획안은 4,807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5억 1,700만원(3.3%) 증가함.

〈2026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사업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 감 (B-A)	(B-A)/A
		당초	수정(A)			
□ 사업비	441,509	463,959	465,190	480,707	15,517	3.3
○ 대위변제금	419,513	438,010	438,010	454,500	16,490	3.8
○ 보증료환급	5,277	5,689	5,689	7,056	1,367	24.0
○ 구상권관리비	10,912	13,884	13,884	11,974	△1,910	△13.8
○ 위탁사업비	3,302	3,754	3,754	4,555	801	21.3
○ 농신보IT유지비(정보화)	2,505	2,622	3,853	2,622	△1,231	△31.9

(자료: 금융위원회)

- 2026년도 사업비 계획안의 주요 증액내역으로 ‘보증료환급’은 전년 대비 13억 6,700만원(24.0%) 증액된 70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대위변제금’은 전년 대비 164억 9,000만원(3.8%) 증액된 4,545억원으로 편성하였음.
- ‘보증료환급’은 전년 대비 13억 6,700만원(24.0%) 증액된 70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구상권관리비’는 전년 대비 19억 1,000만원(△13.8%) 감액된 119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8억 100만원(△2.5%) 감액된 45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3) 기금운영비

- 2026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578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00만원(1.0%) 증가함.

〈2026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 감 (B-A)	(B-A)/A
		당초	수정(A)			
□ 기금운영비	54,819	57,281	57,281	57,882	601	1.0
○ 인건비	48,965	50,434	50,434	52,200	1,766	3.5
○ 기타운영비	5,854	6,847	6,847	5,682	△1,165	△17.0
- 기금관리비	5,728	5,939	5,939	5,543	△396	△6.7
- 선급법인세	126	908	908	139	△769	△84.7

(자료: 금융위원회)

- ‘인건비’는 전년 대비 17억 6,600만원(3.5%) 증액된 522억원이 편성됨.
- ‘기금관리비’는 전년 대비 3억 9,600만원(△6.7%) 감액된 55억 4,300만원으로 편성됨.
- ‘선급법인세’는 전년 대비 7억 6,900만원(△84.7%) 감액된 1억 3,900만원으로 편성됨.

4) 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총수입액 중 사업비, 기금 운영비 및 정부내부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자금을 정기예금, 연기금 투자폴, 국채, 금융채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563억 1,500만원(△3.2%) 감액된 1조 6,863억 2,8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운용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 감 (B-A)	(B-A)/A
		당초	수정(A)			
□ 여유자금운용	1,561,121	1,743,874	1,742,643	1,686,328	△56,315	△3.2%

(자료: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운용 수익률 추이〉

(단위: %)

자산별	2021	2022	2023	2024	2025.9.	2026(전망)
□ 예치금	1.09	2.05	4.24	3.86	3.30	2.60
□ 채권	△0.36	△0.32	4.75	3.72	3.23	-
□ 수익증권	0.01	△4.41	8.05	3.88	8.39	-
계	0.67	0.49	5.06	3.88	5.18	-

주: 2026년 채권 미운용 예정

(자료: 금융위원회)

3. 주요경영지표계획

□ 2026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액은 9조 1,270억원이며, 보증잔액은 2025년 추정 규모인 18조 1,553억원 대비 4,612억원 증가한 18조 6,165억원으로 계획하였음.

□ 2025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은 금융기관 출연금 2,480억원 등에 따라 2025년도 추정 규모인 1조 1,260억원 대비 601억원 감소한 1조 659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그 결과 운용배수는 2025년 16.1배 대비 1.4배 상승한 17.5배로 계획하였음.

〈2026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요경영지표 계획안〉

(단위: 억원, %, 배)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보증공급	86,432	90,000	90,000	91,270	1,270	1.4
□ 보증잔액	179,913	181,463	181,553	186,165	4,612	2.5
□ 기본재산	10,384	10,894	11,260	10,659	△601	△5.3
□ 운용배수	17.3	16.7	16.1	17.5	1.4	8.3

주: 2025년 9월 가결산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최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요경영지표〉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 보증공급	86,112	81,871	80,147	96,402	89,599	86,432
□ 보증잔액	161,117	164,399	163,585	171,852	176,420	179,913
□ 기본재산	10,449	9,847	10,792	11,741	10,476	10,384
□ 운용배수	15.4	16.7	15.2	14.6	16.8	17.3

(자료: 금융위원회)

II. 검토의견

1. 기타특별회계전입금¹³⁸⁾: 정부 출연금 미편성에 따른 기금 건전성 악화 우려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기타특별회계전입금”은 농어업인의 보증 지원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농특회계”)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500억원(△100.0%)이 감소하여 미반영됨.

〈2026년도 기타특별회계전입금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기타특별회계전입금	30,000	150,000	150,000	-	△150,000	△100.0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0조¹³⁹⁾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운용배수¹⁴⁰⁾ 상한을 20배로 규정하고 있으며,

138) 세부사업: 기타특별회계전입금(91-912)

13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0조(보증의 한도) ① 관리기관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0) 보증 규모 대비 기본재산. 보증기금의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운용배수가 낮을수록 기금이 건전하고 보증 여력이 큰 것으로 해석됨.

「신용보증규정」 제12조¹⁴¹⁾는 추가적 보증여력의 확보, 기본재산 가치변동 대응 필요성 등에 따라 적정운용배수를 12.5배¹⁴²⁾로 설정·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그런데, 농신보의 운용배수¹⁴³⁾는 2014년~2019년까지 농특회계로 1조 6천억원 반환, 보증사업 활성화 등에 따른 기본재산¹⁴⁴⁾ 감소 및 보증잔액 증가 등으로 2019년부터 적정운용배수인 12.5배를 초과하여 운용 중임.

〈연도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결산 현황〉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입	정부출연금	△3,000	△2,000	△2,000	1,000	1,300	1,300	0	300
	금융기관출연금	1,222	1,240	1,269	1,386	1,833	1,971	2,118	2,247
	보증료,이자수입등	1,114	1,085	1,042	957	810	756	1,610	1,372
	계	△664	325	311	3,343	3,943	4,027	3,728	3,919
지출	보증보조비용	746	1,585	1,910	1,182	468	571	1,263	106
	구상채권상각비	1,466	2,125	2,668	2,197	1,896	1,849	3,104	3,271
	관리업무비 등	741	666	590	566	633	660	626	635
	계	2,953	4,376	5,168	3,945	2,998	3,078	4,993	4,012
기본재산(A)		19,357	15,306	10,449	9,847	10,792	11,741	10,476	10,384
보증잔액(B)		133,968	148,906	161,117	164,399	163,585	171,852	176,420	179,913
운용배수(B/A)		6.9	9.7	15.4	16.7	15.2	14.6	16.8	17.3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41) 「신용보증규정」

제12조(보증총한도) ③ 제2항의 보증총액한도의 적정한 수준은 12.5배로 한다.

142) 현행 적정운용배수는 바젤Ⅱ 기준 BIS비율의 규제 수준이 8%임에 착안하여 BIS비율의 역수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운용배수를 8%의 역수인 12.5배로 설정한 것임.

143) 보증 규모 대비 기본재산, 보증기금의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운용배수가 낮을수록 기금이 건전하고 보증 여력이 큰 것으로 해석됨.

144) 기본재산은 전년도 기본재산과 당기순이익금, 정부출연금과 금융기관 출연금으로 구성됨.

□ 이처럼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적정 수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게 되는 경우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기금의 기능을 제약할 수 있는 문제¹⁴⁵⁾가 있는데, 이에 농신보는 적정 수준을 지속 초과하고 있는 기금의 운용배수를 안정화하기 위하여 농특회계로부터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 총 5,400억원의 출연금을 전입 받고 있음.

○ 다만, 농신보가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출연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6.7배에 달했던 운용배수는 2025년말 기준으로 16.7배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기금 건전성 개선의 가시적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음.

〈연도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타특별회계전입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획 액		수 납 액	운 용 배 수 (연말 기준)
	당 초	수 정		
2020년	-	100,000	100,000	16.7
2021년	130,000	130,000	130,000	15.2
2022년	130,000	130,000	130,000	14.6
2023년	-	-	-	16.8
2024년	30,000	30,000	30,000	17.3
2025년	150,000	150,000	150,000	16.7
합 계			540,000	

주: 2025년도 운용배수는 추정치임.

(자료: 금융위원회)

14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및 「신용보증규정」에 따르면, 동 기금을 통하여 같은 농림수산업자에게 보증할 수 있는 한도는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이 원칙이나, 적정운용배수 내에서는 개인 30억원, 법인 70억원까지 예외보증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배수가 적정운용배수(12.5배)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예외보증을 중단하여야 함. 다만, 금융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과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농림수산업자의 사업과 자금에 대해서는 적정운용배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0년도부터 매년 예외보증 지원의 운용시한을 연장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런데,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여전히 적정 수준을 초과하여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6년도 기타특별회계전입금은 전액 감액되어 수입 계획안에 미반영¹⁴⁶⁾되었음.

○ 최근 고물가, 고금리 및 경기침체 등에 따라 대위변제 및 불건전 보증¹⁴⁷⁾이 지속적으로 증가¹⁴⁸⁾하는 등 경영 한계 농어업인의 부실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내년도 농신보의 운용배수는 법정 운용배수인 20배에 근접한 18.1배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참고로, 전년 수준의 정부 출연을 전입받을 경우 운용배수는 15.8배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적정운용배수 수준까지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4,600억원의 출연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됨.

146) 금융위원회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계획액 1,50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였으나, 최종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음.

147) 불건전보증이란 보증부채무의 원리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등 보증사고 사유가 발생한 보증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보증사고 사유로는 ① 보증부채무의 원리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② 채권자가 보증부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 ③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의한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④ 채무자에 대한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개인회생절차 등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⑤ 채무자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결정, 경매신청 또는 채무자의 폐업 등 보증부채무의 채권보전이 우려되는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등을 들 수 있음.

148) 농신보 대위변제 및 불건전보증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보증잔액(A)	163,585	171,852	176,420	179,913
대위변제(B)	3,021	2,904	4,074	4,196
불건전보증잔액(C)	526	789	1,053	1,390
대위변제율(B/A)	1.85	1.69	2.31	2.33
불건전보증비율(C/A)	0.32	0.46	0.60	0.77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026년말 기준 농신보 운용배수 시나리오별 전망〉

(단위: 억원, %)

구 분	현 재	1,500억 원 전입시 (전년 수준)	4,600억 원 전입시 (적정 운용배수)
보증잔액(A)	186,165	186,165	186,165
기본재산(B)	10,293	11,793	14,893
운용배수(A/B)	18.09	15.79	12.50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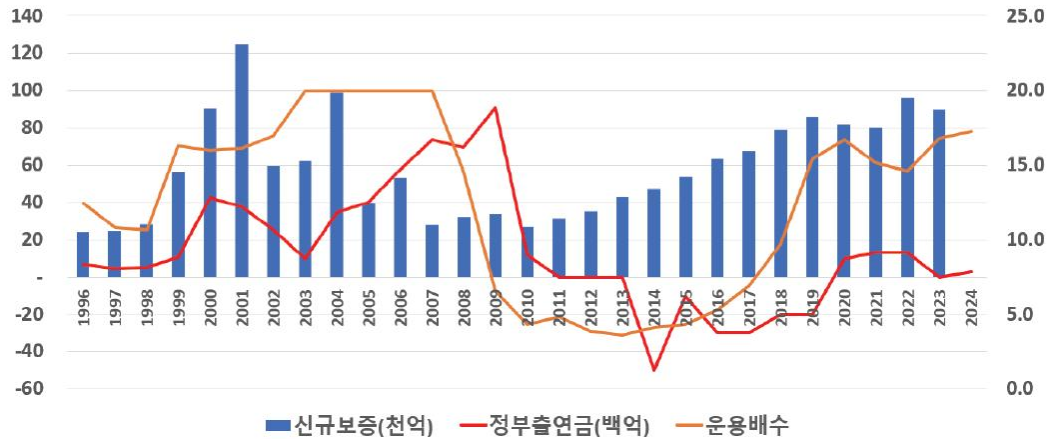
□ 그러므로,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농신보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서는 다음의 제도개선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첫째, 정부출연금 규모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출연금 산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농신보의 보증공급은 농림수산물식품부 등 관계부처의 투융자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금은 정부의 투융자 정책과 연계되지 않고, 운용배수의 악화 등 사후적 요인에 대응하여 지원되는 구조¹⁴⁹⁾이므로, 금융위원회와 농신보는 재정당국과 협조하여 향후 기금의 안정성과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 출연금 산정기준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4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운용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2025. 1.

〈농신보 정부 출연 현황〉

(단위: 천/백억원(좌), 배(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운용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2025. 1., p.81.)

- 둘째, 정부가 2020년 이후 상당 규모의 출연금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용배수 정상화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금융위원회와 농신보는 재정운용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신보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5,400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용배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등 기금 건전성 제고 성과가 뚜렷하지 않음.
- 이를 고려할 때, 향후에도 농신보의 자구노력 없이는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기금 건전성을 위한 정부와 농신보의 기금 건전성 개선방안 마련이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임.

- 한편, 국회도 최근 2년 동안 결산심사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농신보에게 기금 건전성 제고 및 중장기 관리계획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내년 계획안에 기금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반영되지 않는 등¹⁵⁰⁾ 정부의 후속조치가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금융위원회와 농신보는 기금 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농신보 건전성 관련 국회 결산 심사 시정요구사항〉

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
2023	○ 금융위원회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
2024	○ 금융위원회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운용배수 관리,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순신규보증총량제 정착 등을 포함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조속하게 수립할 것

주: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은 2025년 8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10월말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중임.

(자료: 각 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150) 금융위원회는 2025년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시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였으나, 최종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음.

제5장 공적자금상환기금

1.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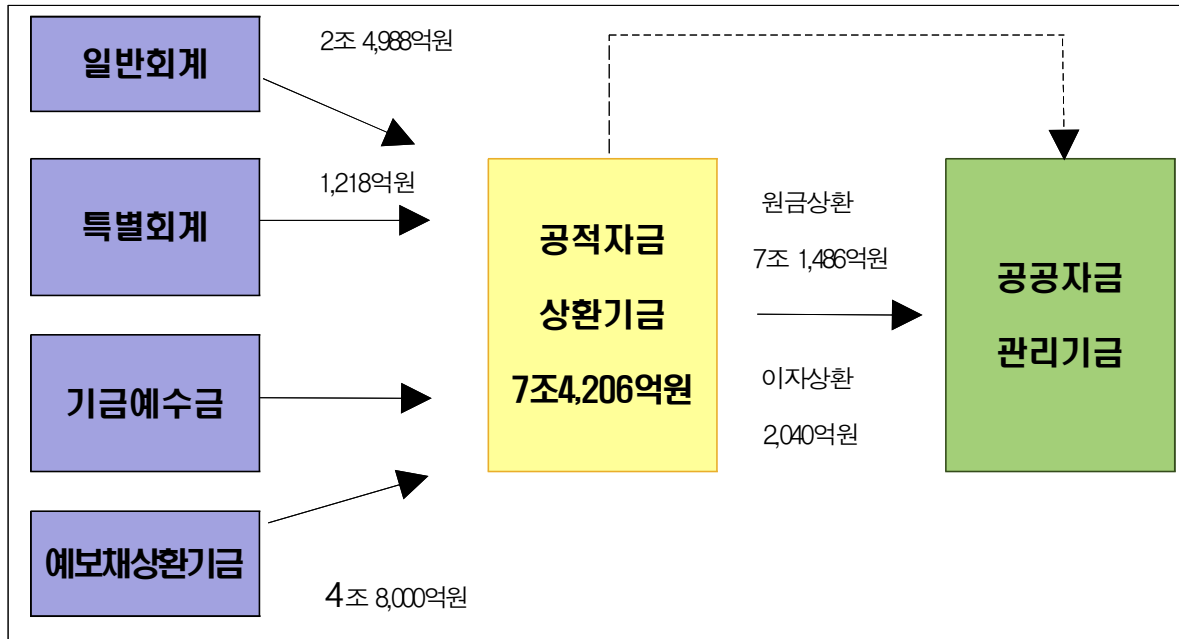
□ 정부는 2002년 말 기준 상환 부담이 있는 공적자금¹⁵¹⁾ 채무원금 97조 원 중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28조원을 제외한 69조원에 대해 20조원은 금융회사가, 49조원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적자금상환대책을 마련하여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채 발행자금을 예탁받아 2006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공적자금 중 정부 부담분인 49조원(원금 기준)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을 통해 상환하고, 매년 일반회계 출연금과 우체국예금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 출연금(예금평잔 등의 0.1%) 등으로 25년 이내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국채원리금을 상환함.

□ 2026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규모는 7조 4,206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및 예수이자상환에 지출할 계획임.

151) 공적자금(Public Funds)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실이 누적되면서 경색된 금융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이를 통해 급속하게 위축되던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고자 금융구조조정 등에 사용된 자금임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적자금관리백서」, 2020.8.)

〈2026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주요 수입·지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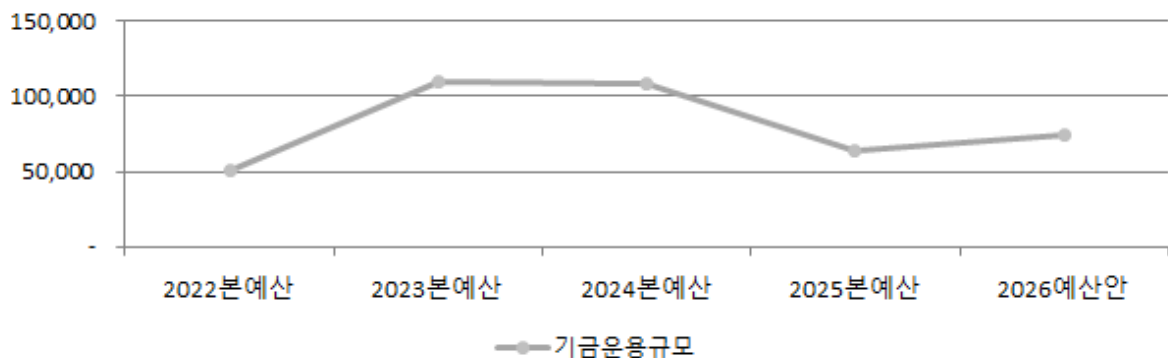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 최근 5년간 기금의 지출 계획 추이를 보면, 2022년 5조 1,370억원에서 2023년 11조 193억원, 2024년 10조 8,893억원, 2025년 6조 4,384억원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6년도 계획안에 따른 운용규모는 7조 4,206억원임.

〈최근 5년간 공적자금상환기금 지출 계획 추이〉

(단위: 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1. 수입계획안

- 2026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수입계획안은 7조 4,206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822억 1,300만원(15.3%)이 증액 편성됨.

〈2026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9,327,316	6,438,424	6,438,424	7,420,637	982,213	15.3
□ 재산수입	934	885	885	-	△885	△100
□ 경상이전수입	5,190,000	3,800,000	3,800,000	4,800,000	1,000,000	26.3
□ 재고자산매각대	81,597	18,908	18,908	-	△18,908	△100
□ 세계잉여금	-	-	-	-	-	-
□ 일반회계전입금	2,500,000	2,500,000	2,500,000	2,498,794	△1,206	△0.1
□ 특별회계전입금	112,873	118,631	118,631	121,843	3,212	2.7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1,441,900	-	-	-	-	-
□ 여유자금 회수	12	-	-	-	-	-

(자료: 금융위원회)

- 2026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수입계획안은 일반회계전입금 2조 4,988억 9400만원, 경상이전수입 4조 8,000억원, 특별회계전입금 1,218억 4,300만원 등으로 편성됨.

2. 지출계획안

1) 총괄

□ 2026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지출계획안은 7조 4,206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822억 1,300만원(△15.3%)이 증액 편성됨.

〈2026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9,327,316	6,438,424	6,438,424	7,420,637	982,213	15.3
□ 기금운영비	141	57	57	4	△53	△93.0
○ 기금관리비	2	5	5	4	△1	△20.0
○ 자산매각비	139	52	52	-	△52	△100
□ 정부내부지출	9,327,136	6,436,021	6,436,021	7,352,644	916,623	14.2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원금상환	8,842,338	5,997,739	5,997,739	7,148,632	1,150,893	19.2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	484,798	438,282	438,282	204,012	△234,270	△53.5
□ 여유자금운용	40	2,346	2,346	67,989	65,643	2,798.1
○ 통화금융기관예치	-	2,346	2,346	67,989	65,643	2,798.1
○ 한국은행예치	40	-	-	-	-	-

(자료: 금융위원회)

○ 2026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지출계획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 상환 7조 3,526억원, 기본경비 400만원 등으로 편성됨.

□ 최근 5년간 공적자금상환기금의 프로그램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 경비성 프로그램인 기금운영비와 내부거래·여유자금 관련 프로그램을 제외한 사업비는 모두 금융정책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음.

〈최근 공적자금상환기금 프로그램별 지출계획 내역〉

(단위: 억원)

프로그램명	2021년		2022년		2023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금융정책(1100)	159	159	1	1	-	-
기금운영비(3500)	1	1	1	1	1	1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9100)	52,544	62,902	44,054	64,025	103,426	83,456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9200)	8,444	8,448	7,031	7,031	6,584	6,515
여유자금운용(9700)	276	276	283	283	182	182
합 계	61,424	71,785	51,370	71,341	110,193	90,153
프로그램명	2024년		2025년		2026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계획안(B)	
금융정책(1100)	-	-	-	-	-	
기금운영비(3500)	1	1	0.6	0.6	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9100)	97,894	98,409	59,977	59,977	71,486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9200)	5,498	5,498	4,383	4,383	2,040	
여유자금운용(9700)	5,500	5,500	23	23	680	
합 계	108,893	109,408	64,384	64,384	74,206	

(자료: 금융위원회)

2) 기금운영비

- ☐ 2026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00만원(△93.0%)이 감소함.

〈2026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 기금운영비	141	57	57	4	△53	△93.0
○ 기금관리비	2	5	5	4	△1	△20.0
○ 자산관리비	-	-	-	-	-	-
○ 자산매각비	139	52	52	-	△52	△100

(자료: 금융위원회)

- ‘기금관리비’는 400만원으로 2024년도 대비 100만원 감소함.

3) 정부내부지출

- ☐ 2026년도에 공적자금상환기금 정부내부지출 계획은 7조 3,526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166억 2,300만원(△14.2%)이 감소함.

〈2026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정부내부지출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 정부내부지출	9,327,136	6,436,021	6,436,021	7,352,644	916,623	14.2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8,842,338	5,997,739	5,997,739	7,148,632	1,150,893	19.2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484,798	438,282	438,282	204,012	△234,270	△53.5

(자료: 금융위원회)

4) 여유자금운용

- 공적자금상환기금 총수입액 중 사업비, 기금운영비 및 정부내부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자금을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656억 4,300만원(2,798%) 증액된 679억 8,9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여유자금운용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여유자금운용	40	2,346	2,346	67,989	65,643	2,798.1
○ 통화금융기관예치	-	2,346	2,346	67,989	65,643	2,798.1
○ 한국은행예치금	40	-	-	-	-	-

(자료: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상환기금 여유자금운용 수익률 추이>

(단위: %)

자산별	2021	2022	2023	2024	2025.9	2026(전망)
□ 예치금	0.72	1.33	4.01	3.59	3.74	3.34
□ MMDA	0.35	0.2	-	-	-	-
계	0.71	1.33	4.01	3.59	3.74	3.34

(자료: 금융위원회)

II. 검토의견

1. 기타경상이전수입¹⁵²⁾: 현실적인 수입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안 편성 필요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수입을 말하며,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조원(26.3%) 증가한 4조 8,000억원임.

〈2026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기타경상이전수입	5,190,000	3,800,000	3,800,000	4,800,000	1,000,000	26.3

(자료: 금융위원회)

□ 「국가재정법」 제13조¹⁵³⁾에 따라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152) 세부사업: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153)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한다. (각호 생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전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10조¹⁵⁴⁾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잔여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은 2021년부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부터 매년 전입금을 수납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기준 총 13.1조원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되었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A)	계 획 현 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율(C/A)
2021	1,250,000	1,250,000	1,258,072	1,258,072	100.6
2022	2,400,000	2,400,000	2,400,000	2,400,000	100.0
2023	2,6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100.0
2024	4,250,000	4,250,000	5,190,000	5,190,000	122.1
2025 (9월 기준)	3,800,000	3,800,000	2,200,000	2,200,000	57.9
2026(안)	4,800,000	-	-	-	-
합 계	19,100,000	14,300,000	13,148,072	13,148,072	-

(자료: 금융위원회)

154)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10조(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다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상환기금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상환기금의 청산 전에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다.

2) 검토의견

□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해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담한 채무 상환을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49조원을 예수받아 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5.7조원)와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¹⁵⁵⁾, 3.3조원)에 각각 출연하였음.

이후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49조원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세계잉여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 등 수입 재원¹⁵⁶⁾을 활용해 상환하고 있음.

□ 2025년 말 예상되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채무 잔액은 14.6조원(원금)인데,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근거 법률인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의 효력만료일이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¹⁵⁷⁾ 정부는 이 기한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부채 상환을 완료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원금 기준으로, 2026년 7.1조원, 2027년 7.5조원을 각각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상환한 후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청산한다는 계획임.

155) 부실채권정리기금은 2013년 2월에 청산됨.

156)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세계잉여금
3. 제6조에 따른 정부의 회계로부터의 출연금
4.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5.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7. 제9조에 따른 일시차입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 동 기금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출연한 자금 중 반환받은 자금

157) 「법률 제6804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원리금 상환내역 및 상환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9월말기준)	2026* (계획안)	2027* (계획안)
원리금 상환내역	원금	6,290,225	6,402,465	8,345,572	8,842,338	4,464,924		
	이자	799,543	647,009	537,709	484,798	351,712		
원리금 상환계획	원금	6,290,225	6,402,465	8,345,572	9,840,902	5,997,739	7,148,632	7,464,805
	이자	844,790	703,109	651,458	549,755	438,282	204,012	74,095
잔액(원금)		38,648,264	32,232,982	28,011,614	20,611,176	14,613,437	7,464,805	-

*2026~2027년 계획안은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런데, 동 기금의 2026년도 수입 및 지출 계획안을 보면, ① 일반회계 전입금, ② 특별회계 전입금 및 ③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으로 총 7.4조원을 수납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원리금 총 7.3조원(원금 7.1조원, 이자 0.2조원)을 상환한다는 계획인데,

총 수입 중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의 비율이 64.7%에 달해, 부채 상환 채원과 관련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면이 있음.

〈2026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안〉

(단위: 백만원)

수입 계획안			지출 계획안	
일반회계전입금	특별회계전입금	기타경상이전수입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	부채상환	기타
2,498,794 (33.7%)	121,843 (1.6%)	4,800,000 (64.7%)	7,352,644 (원리금)	67,993
수입 합계 7,420,637 (100%)			지출 합계 7,420,637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이와 관련하여, 실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전출 여력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2026년도 기금계획안에 따르면, 총 수입 4.89조원 중 필수 운영경비를 제외한 4.8조원(98.2%)을 공적자금상환 기금으로 전출할 계획임.

〈2026년도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안〉

(단위: 백만원)

2026년도 수입계획안		2026년도 지출계획안	
총 계	4,886,680	총 계	4,886,680
정부출자수입 (출자금융회사 배당금)	195,258	정리자문경비 등	2,699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15,089	인건비	2,542
법정부담금 (금융회사 특별기여금)	2,747,819	기금관리비	575
재고자산매각대 (출자금융회사 주식매각)	1,818,514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4,800,000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10,0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80,864

(자료: 금융위원회)

관련 수입계획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주요 수입 재원은 정부출자수입 (1.95조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금융회사 특별기여금¹⁵⁸⁾ 수입 (2.7조원), 출자금융회사(한화생명보험, 서울보증보험) 주식매각을 통한 재고자산매각대(1.8조원)인데,

158)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①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내야 한다.

출자금용회사(한화생명보험, 서울보증보험) 배당금 수입인 정부출자
수입과 금융회사 예금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금융회사 특별기여
금 수입의 경우에는 특별한 금융환경 변화만 없다면 계획안에 따른 징
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반면, 출자금용회사(한화생명보험 및 서울보증보험) 주식매각을 통한
재고자산매각대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입계획안 달성 가
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재고자산매각대 산정근거를 살펴보면,
한화생명보험 보유지분(10%) 전체를 매각하고,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에는 총 보유지분(83.85%) 중 경영권 방어지분(50%+1주)을 제외한
33.85%의 지분을 2026년도 내에 매각한다는 계획임.

〈2026년도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재고자산매각대 산정근거〉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산정근거
한화생명보험 159)	434,285	86,857,001주(지분 10% 매각) × 5,000원
서울보증보험 160)	1,304,229	23,635,946주(지분 33.85% 매각) × 55,180원
수협중앙회 ¹⁶¹⁾	80,000	2026년 국채 만기 도래 액면가 ※ 상환합의에 따라 공사가 이미 수령한 국채의 연도별 만기가액
합계	1,818,514	

(자료: 금융위원회)

159) 예금보험공사는 한화생명보험에 대해 3조 5,5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 2017년 이후 지분 10%에 대한 매각이 더이상 진행되지 않아, 공적자금의 미회수액 규모가 1조 299억원에 이름.

160)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공적자금 10조 2,500억원을 지원했지만, 2025년 3월에 보유지분(93.85%) 중 10%를 매각하는데 그쳐, 현재 미회수액 규모는 5조 916억원임.

161) 수협중앙회는 2022년 9월 예금보험공사 보유 잔여지분에 대해 국채로 상환을 완료하였으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수령한 국채의 연도별(2023년-2027년) 만기 도래시에 현금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있음.

그런데, 한화생명보험의 경우 매각단가를 5천원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현재(2025년 11월) 주가가 3천원대¹⁶²⁾ 수준이므로 매각 가격을 과다 추계한 것으로 보이고,

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지분 33.85%를 1년 내에 처분한다는 계획인데, 의무보호예수기간¹⁶³⁾이 2026년 3월에 끝나므로 실제적인 주식 처분 가능 기간은 9개월뿐이고, 대량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분 33.85%를 9개월 내에 처분한다는 계획은 다소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임.

□ 이와 같이, 금융위원회는 과다계상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수입계획안을 근거로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을 4.8조원 편성했는데,

이 경우, 한화생명보험과 서울보증보험 주식매각 실적이 저조할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부채 상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금융위원회는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늘리는 등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부채 상환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법률상 기한(2027년 말) 내에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162) 2025년 11월 3일 시가 기준 3,040원

163) 서울보증보험은 2025년 3월 기업공개를 통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 후 1년 동안은 소액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최대주주 등의 보유 주식 매도가 제한됨.

제6장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 개 요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2년 말까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舊예금보험기금의 채무상환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음.¹⁶⁴⁾¹⁶⁵⁾ 2021년 8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공적자금 부채(82.4조원)를 전액 상환 완료하였음.
- 2026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운용규모는 4조 8,867억원으로 금융기관 특별기여금(2조 7,478억원), 출자주식 매각대금(1조 8,185억원), 배당금(1,953억원) 및 이자수입 등(552억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 이를 사업비(27억원), 기금운영비(31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4조 8,000억원) 등에 지출할 계획임.

164)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① 부보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로 한정한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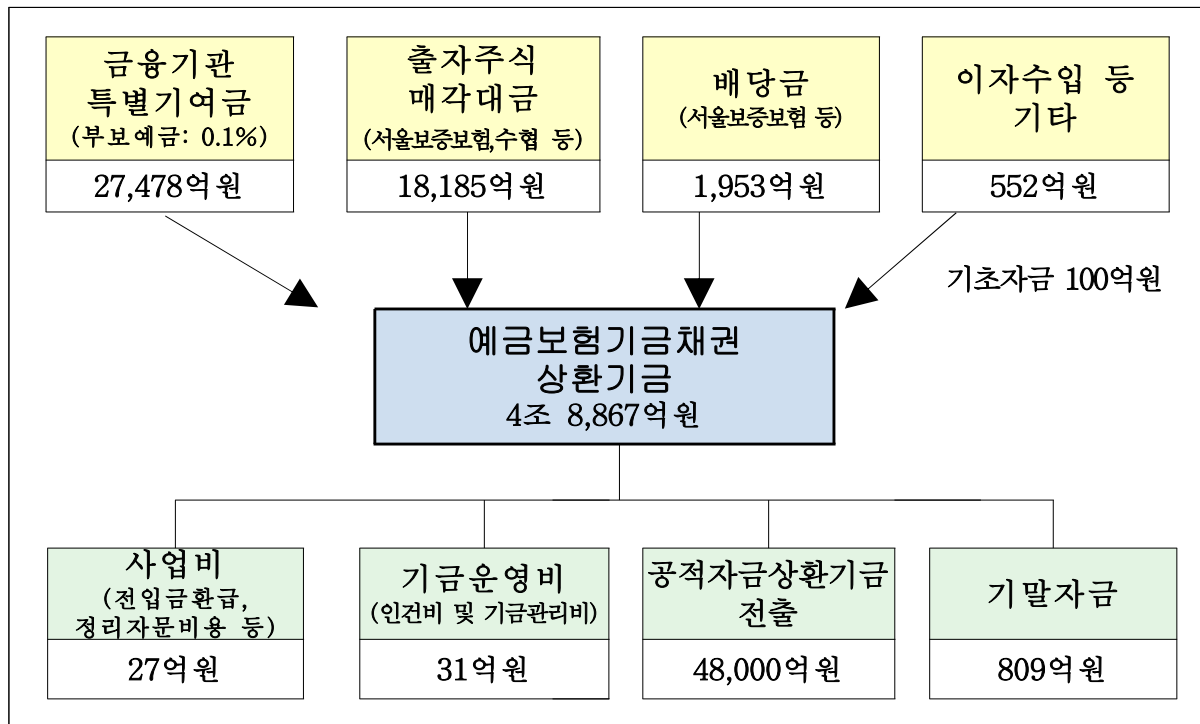
② (생략)

③ 상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예금보험기금채권(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및 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2. 보험금,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3.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의 전출
5.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체결되는 정산약정에 따른 출연금의 반환

165) 現 예금보험기금은 2003.1.1. 이후 예금자 보호 업무 등을 위하여 신규로 운영한 것임. 예금보험공사의 운영경비는 예금보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업무량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지속적인 공적자금 회수에 따른 업무량 감소에 따라 현재 예금보험공사 전체 운영경비의 3% 미만을 부담하고 있음.

<2026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요 수입·지출 항목>



(자료: 예금보험공사)

□ 최근 5년간 기금의 운용규모 추이를 보면 2022년 4.3조원, 2023년 4.9조원, 2024년 5.4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 4.7조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6년 4.9조원으로 다시 증액 편성 계획임.

<최근 5년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운용규모 및 사업비 내역>

(단위: 억원)



(자료: 예금보험공사)

1. 수입계획안

- 2026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수입계획안은 4조 8,867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1억원(2.9%)이 증액 편성됨.

〈2026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5,443,234	4,749,605	4,749,605	4,886,680	137,075	2.9
□ 재산수입	345,214	344,855	344,855	310,347	△34,508	△10.0
□ 경상이전수입	2,580,600	2,660,038	2,660,038	2,747,819	87,781	3.3
□ 관유물매각대	216,626	525,330	525,330	1,818,514	1,293,184	246.2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2,300,794	1,219,382	1,219,382	10,000	△1,209,382	△99.2

(자료: 예금보험공사)

- ‘재산수입’은 출자금융기관 주식 배당금, KR&C(정리금융회사) 대출금 이자수입 및 기금의 대기성 자금 운용수익 등으로, 대기성 자금 운용 수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45억 800만원(△10.0%) 감소한 3,103억 4,700만원이 편성됨.
- ‘경상이전수입’은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른 금융권 특별기여금 수입 등으로, 최근 특별기여금 수납액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877억 8,100만원(3.3%) 증가한 2조 7,478억 1,900만원이 편성됨.
- ‘관유물매각대’는 출자금융회사 주식 매각수입으로 서울보증보험 등 보유지분 매각계획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조 2,931억 8,400만원 (246.2%) 증가한 1조 8,185억 1,400만원이 편성됨.

-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발행 및 기초 보유자금으로 2026년에는 기초 보유자금만 존재하며, 전년 대비 1조2,093억 8,200만원(△99.2%) 감소한 100억원이 편성됨.

2. 지출계획안

1) 총괄

- 2026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지출계획안은 4조 8,867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1억원(2.9%)이 증액 편성됨.

〈2026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5,443,234	4,749,605	4,749,605	4,886,680	137,075	2.9
□ 사업비	192	2,677	2,677	2,699	22	0.8
○ 전입금환급	-	3	3	2	△1	△33.3
○ 소송및법적절차비	-	7	7	5	△2	△28.6
○ 기타정리자문경비등	192	2,667	2,667	2,692	25	0.9
□ 기금운영비	3,028	3,103	3,103	3,117	14	0.5
○ 인건비	2,771	2,844	2,844	2,542	△302	△10.6
○ 기금관리비	257	259	259	575	316	122.0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5,190,000	3,800,000	3,800,000	4,800,000	1,000,000	26.3
□ 채권 원리금 상환	-	-	-	-	-	-
○ 채권 원금 상환	-	-	-	-	-	-
○ 채권 이자 상환	-	-	-	-	-	-
□ 여유자금운용	250,013	943,825	943,825	80,864	△862,961	△91.4

(자료: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사업비 계획안은 26억 9,900만원으로
출자주식 매각 관련 기타정리자문경비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200만원(0.8%) 증액되었으며,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31억 1,700
만원으로 전년 대비 1,400만원(0.5%) 증가함.
- 2026년도 기금의 여유자금은 808억 6,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629억
6,100만원(△91.4%) 감소함.

□ 최근 5년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프로그램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비 성격의 금융정책(1100), 경상비용 성격의 기금운영비(3500),
기말자금인 여유자금운용(9700),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8901)로 구
성됨.

〈최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프로그램별 지출계획 내역〉

(단위: 억원, %)

프로그램명	2021년		2022년		2023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금융정책(1100)	1,059	1,059	808	808	879	879
기금운영비(3500)	36	36	36	40	34	34
여유자금운용(9700)	134	134	7,126	7,123	7,716	7,716
차입금등원금상환(9800)	16,800	16,800	-	-	-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8901)	12,500	12,500	24,000	24,000	26,000	26,000
합 계	30,529	30,529	31,970	31,970	34,630	34,630
프로그램명	2024년		2025년		2026년 계획안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금융정책(1100)	37	37	27	27	27	
기금운영비(3500)	35	35	31	31	31	
여유자금운용(9700)	3,839	3,839	9,438	9,438	809	
차입금등원금상환(9800)	-	-	-	-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8901)	42,500	42,500	38,000	38,000	48,000	
합 계	46,410	46,410	47,496	47,496	48,867	

(자료: 예금보험공사)

2) 사업비

□ 2026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소관 사업비 계획안은 26억 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00만원(0.8%) 증가함.

〈2026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사업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사업비	192	2,677	2,677	2,699	22	0.8
○ 전입금환급	-	3	3	2	△1	△33.3
○ 소송및법적절차비	-	7	7	5	△2	△28.6
○ 기타정리자문경비등	192	2,667	2,667	2,692	25	0.9

(자료: 예금보험공사)

- ‘전입금환급’ 사업은 금융구조조정 지원자금 관련 사후정산비용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33.3%) 감소한 200만원이 편성됨.
- ‘소송 및 법적절차비’ 사업은 종결재단 관련된 소송비용 등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28.6%) 감소한 500만원이 편성됨.
- ‘기타정리자문경비등’ 사업은 서울보증보험 등 보유지분 매각계획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500만원(0.9%) 증가한 26억 9,200만원이 편성됨.

3) 기금운영비

- 2026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31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00만원(0.5%) 증가함.

〈2026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기금운영비	3,028	3,103	3,103	3,117	14	0.5
○ 인건비	2,771	2,844	2,844	2,542	△302	△10.6
○ 기금관리비	257	259	259	575	316	122.0

(자료: 예금보험공사)

- ‘인건비’는 기금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담인력의 인건비 부담액으로, 전년 대비 3억 200만원(△10.6%) 감소한 25억 4,200만원이 편성됨.
- ‘기금관리비’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관리에 소요되는 각종 정상적인 경비로, 전년 대비 3억 1,600만원(122.0%) 증가한 5억 7,500만원이 편성됨.

4)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부채 상환 완료 이후 매년 공적자금 상환기금으로 여유자금을 전출하고 있으며 자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조원(26.3%) 증가한 4조 8,000억원이 편성됨.

〈2026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5,190,000	3,800,000	3,800,000	4,800,000	1,000,000	26.3

(자료: 예금보험공사)

5) 채권 원리금 상환

☐ 2026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채권 원리금 상환은 없음.

○ 2021년 중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채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이후 채권 및 이자 상환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6) 여유자금운용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여유자금운용규모는 기말보유자금으로 전년 대비 8,629억 6,100만원(△91.4%) 감소한 808억 6,4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여유자금운용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여유자금운용	250,013	943,825	943,825	80,864	△862,961	△91.4

(자료: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여유자금운용 수익률 추이〉

(단위: %)

자산별	2021	2022	2023	2024	2025.9	2026(전망)
☐ 예치금	0.95	2.45	4.05	3.67	-	-
☐ 채권	0.65	2.28	3.80	3.67	-	-
☐ 수익증권(MMF)	0.82	2.32	3.92	-	-	-
☐ 수익증권(국공채형)	-	-	5.02	-	-	-
☐ 수익증권(완전위탁)	-	-	-	3.81	2.93	2.41
계	0.94	2.40	4.12	3.78	2.93	2.41

(자료: 예금보험공사)

II. 검토의견

1. 기금관리비¹⁶⁶⁾: 기금 청산을 위한 철저한 준비 필요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기금관리비”는 기금 운용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사업추진비 등 기본적인 경비로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억 1,600만원 (122.0%) 증가한 5억 7,500만원임.

〈2026년도 기금관리비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액		2026년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기금관리비	257	259	259	575	316	122.0

(자료: 예금보험공사)

2) 검토의견

- 기금관리비가 전년 대비 3억 1,6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의 주된 이유는 일반연구비(260-01) 3억 3,300만원이 신설되었기 때문임.

〈2026년도 기금관리비 목별 계획안〉

(단위: 백만원)

목별 분류	2024 집행액	2025 계획현액	2026 계획안
수용비	234	205	191
여비	4	33	33
업무추진비	20	22	21
일반연구비	-	-	333
합계	257	259	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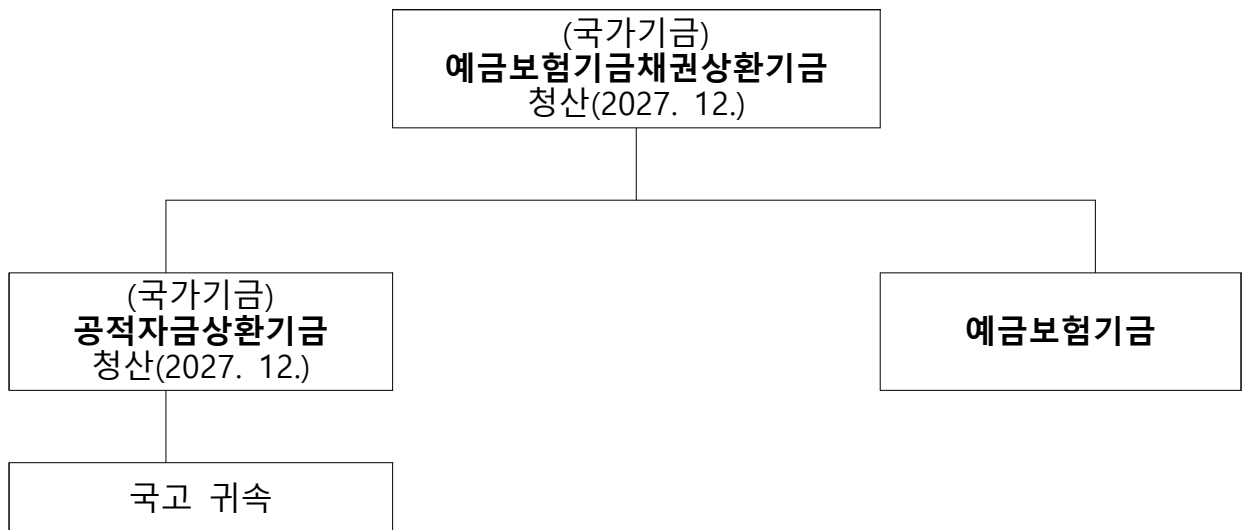
(자료: 예금보험공사)

166) 세부사업: 기금관리비(3575-201)

□ 예금보험공사는 일반연구비(260-01)의 용도와 관련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공적자금상환기금 모두 2027년 말에 청산될 예정이므로, 청산과 관련된 법률 및 회계 문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청산 시에 그 잔여 자산 및 부채의 귀속주체를 ‘공적자금상환기금’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에서 정해야 하는데,¹⁶⁷⁾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귀속되는 잔여 자산의 경우에는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될 것임.¹⁶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청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방법〉



167)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10조 (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단서 생략)

168) 「법률 제6804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5조(기금의 청산) 기금을 청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참고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잔여 자산의 귀속주체 중 하나로 ‘예금보험기금’이 포함된 것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납부한 특별기여금¹⁶⁹⁾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 원활한 기금 청산을 위해서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정 상황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현재 ① 부채는 없는 상태이고, ② 2027년 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특별기여금을 계속 수납하며, ③ 기금의 보유자산으로는 출자금융회사(서울보증보험, 한화생명보험 등) 지분과 기금의 자회사인 KR&C¹⁷⁰⁾가 보유 중인 대출채권 및 손해배상채권 등이 있음.

169)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①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내야 한다.

[법률 제6807호(2002. 12. 26.)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① 부보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로 한정한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한다.

② 상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제30조의3에 따라 받은 특별기여금

170) 케이알앤씨는 부실금융회사의 효율적 정리를 목적으로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상환기금의 자회사이며, 부실금융회사의 자산·부채의 인수, 예금 대지급, 인수 채권 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함.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출자지분 관련 잔여지분(2025년 8월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원액	회수액 (회수율)	잔여지분		
			주식 수	지분율	평가액(예상치)
서울 보증보험	10,250,000	5,158,367 (50.3%)	58,547천주	83.85%	2,555,565 (단가 43,650원 적용)
한화생명	3,550,000	2,520,098 (71.0%)	86,857천주	10%	272,297 (단가 3,135원 적용)
수협	1,158,100	560,700 (48.4%)	(국채상환)		597,400 (잔여국채 액면가)
합 계					3,425,262

(자료: 예금보험공사)

〈KR&C 보유 자산(2025년 8월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자산	보유액
대출채권	원화 대출금, 서울보증보험CP 등	1,090,000(채권 원금 기준)
손해배상채권	부실책임자 손해배상채권	1,041,600(채권 원금 기준)
유가증권	매도가능 주식	43,500(2025.반기결산 장부가)
부동산	사옥 등	60,200(2025.반기결산 장부가)
합 계		2,235,300

(자료: 예금보험공사)

반면,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채무액 14.6조원
(2025년말 기준 예상채무액)이 있으며, 기금 보유자산은 없는 상황임.

〈공적자금상환기금 부채 상환내역 및 상환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9월말기준)	2026* (계획안)	2027* (계획안)
원리금 상환내역	원금	6,290,225	6,402,465	8,345,572	8,842,338	4,464,924		
	이자	799,543	647,009	537,709	484,798	351,712		
원리금 상환계획	원금	6,290,225	6,402,465	8,345,572	9,840,902	5,997,739	7,148,632	7,464,805
	이자	844,790	703,109	651,458	549,755	438,282	204,012	74,095
잔액(원금)		38,648,264	32,232,982	28,011,614	20,611,176	14,613,437	7,464,805	-

*2026~2027년 계획안은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금융위원회)

□ 또한, 기금 청산 시에는 그 보유 자산을 가능한 현금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보유 중인 서울보증보험 주식의 경우 「지분매각 추진계획」에 따라 2028년 이후에나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추진계획(2024.3.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

방식	IPO(기업공개)	소수지분 추가 매각	경영권 지분매각
시기	2025년 상반기 이내	의무보호예수 해제('26.3.14)** 이후~상환기금 청산시점('27년말) 이내	향후 검토
물량	10% 이상 (시장상황 및 수요예측 결과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최대 33.85% (단, 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50%+1주 이상

(자료: 예금보험공사)

* 시장상황, 보증보험시장 관련 정책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 2025. 3. 14 IPO 시 의무보호예수기간 1년 설정

KR&C 보유 자산의 경우에도 단기간에 현금화 하기 쉽지 않은 자산이 있을 수 있어, 기금 운용 종료시점(2027년 말)까지 전체 자산을 현금화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현물자산 상태로 기금의 귀속주체를 정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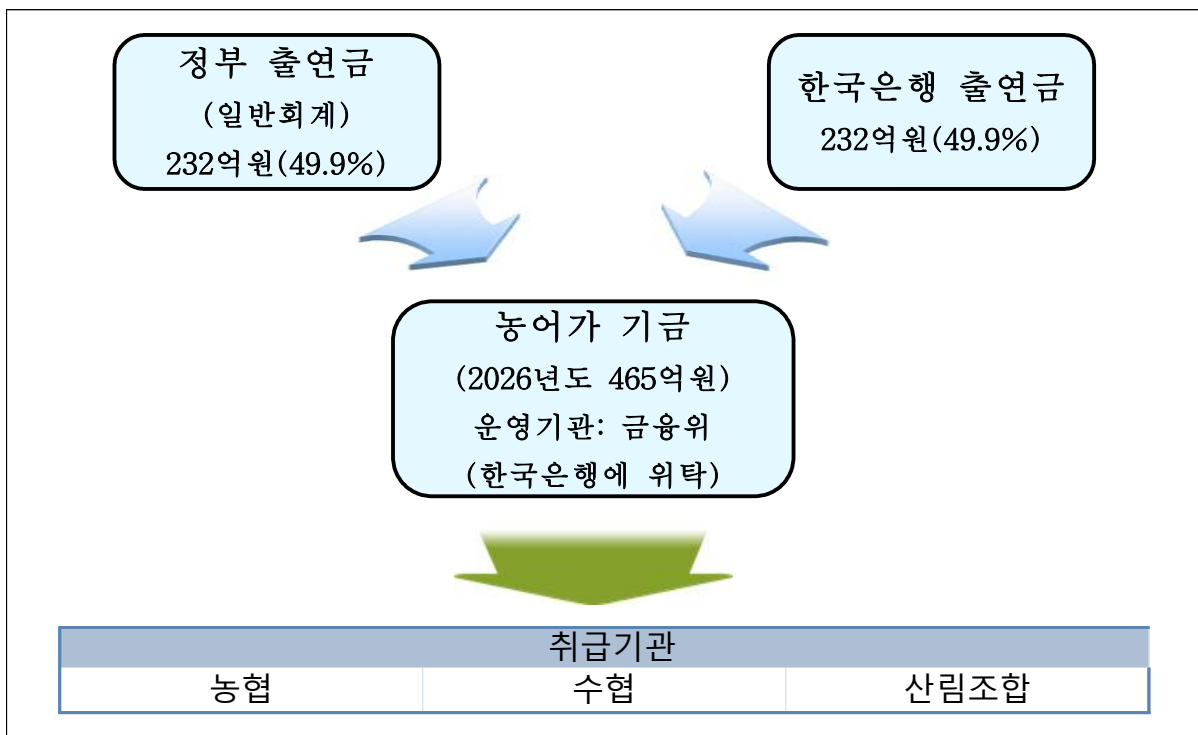
□ 따라서, 예금보험공사는 2026년도에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기금 잔여 자산 귀속주체 및 현물자산 처리 방식 등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공적자금상환기금이 기한(2027년 말) 내에 안정적으로 청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임.

제7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 개 요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 저축장려를 통한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1985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설치되었음.
- 2026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운용 규모는 465억 900만원으로, 정부 출연금(232억원)과 한국은행 출연금(232억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기본금리 외에 법정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금(465억원) 사업에 집행할 계획임.

〈2025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주요 수입·지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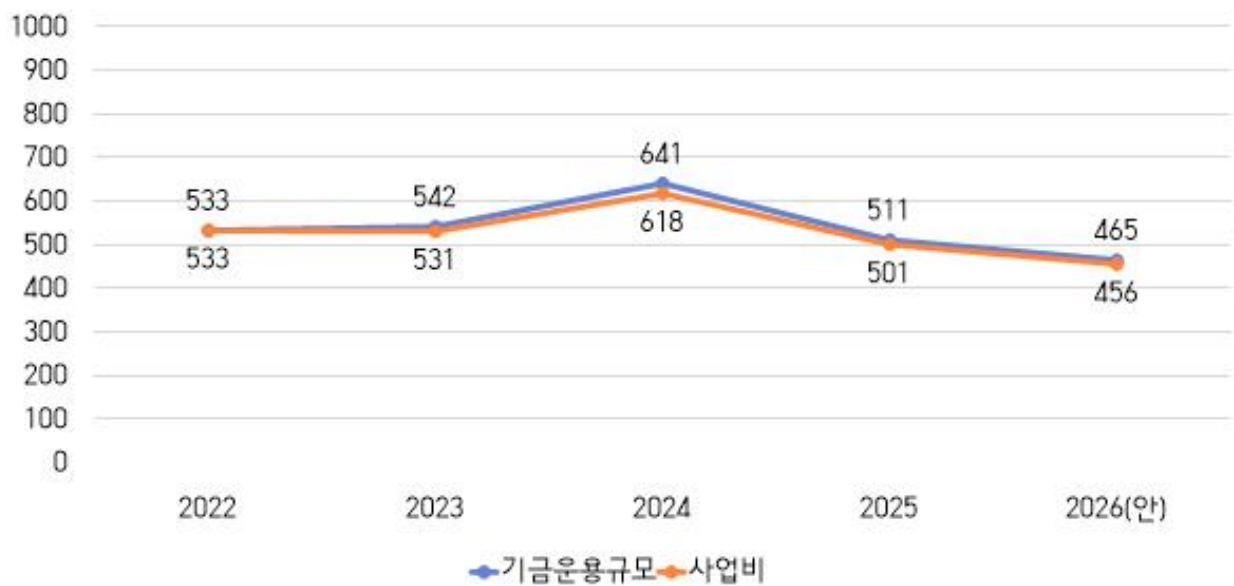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 최근 5년간 기금의 운용규모 추이를 보면 2022년 533억원, 2023년 542억원, 2024년 641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5년 511억원, 2026년도 계획안은 465억원으로 다시 감소하였음.

〈최근 5년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운용규모 및 사업비 내역〉

(단위: 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1. 수입계획안

- 2026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수입계획안은 465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7,100만원(△5.4%)이 감액 편성됨.

〈2026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63,107	51,095	49,180	46,509	△2,671	△5.4
□ 재산수입	118	284	208	122	△86	△41.4
□ 경상이전수입	31,463	24,147	24,147	23,192	△955	△3.9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63	2,517	678	3	△675	△99.6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31,463	24,147	24,147	23,192	△955	△3.9

(자료: 금융위원회)

- ‘재산수입’은 기금 여유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 수입액으로서, 전년 대비 8,600만원(△41.4%)이 감액 편성됨
- ‘경상이전수입’은 한국은행 출연금으로 구성되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그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출연하며,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는 정부출연금으로서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라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1/2이상을 출연함. 2026년도 각각 전년 대비 9억 5,500만원 감소한 231억 9,200만원이 편성됨.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는 2025년도말 현재 금융기관에 운용중인 기금 여유자금 잔액으로서 2026년도 수입계획안은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500만원 감액 편성됨.

2. 지출계획안

1) 총괄

□ 2026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지출계획안은 465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7,100만원(△5.4%)이 감액 편성됨.

〈2026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63,107	51,095	49,180	46,509	△ 2,671	△ 5.4
□ 사업비	62,429	50,086	48,207	45,594	△ 2,613	△ 5.4
○ 저축장려금	62,429	50,086	48,207	45,594	△ 2,613	△ 5.4
□ 기금운영비	-	1	-	-	-	-
○ 기금관리비	-	1	-	-	-	-
□ 여유자금운용	678	1,008	973	915	△ 58	△ 5.9
○ 한국은행예치	8	9	3	5	△ 2	△ 66.7
○ 통화금융기관예치	670	999	970	910	△ 60	△ 6.2

(자료: 금융위원회)

- 2026년도 사업비 계획안은 455억 9,400만원으로 2025년도 계획 대비 26억 1,300만원(△5.4%) 감소하였으며,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출장 및 성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100만원 감액되었음.
- 2026년도 기금의 여유자금운용 계획안은 9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800만원(△5.9%) 감액됨.

□ 최근 5년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프로그램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경비성 프로그램인 기금운영비와 여유자금운용 프로그램을 제외한
사업비는 모두 저축장려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음.

〈최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프로그램별 지출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명	2021년		2022년		2023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저축장려(1600)	67,079	68,233	54,628	54,628	53,082	53,082
기금운영비(3200)	1	-	1	1	1	1
여유자금운용(9700)	1,346	7	1,088	1,088	1,070	1,070
합 계	68,426	68,240	55,717	55,717	54,153	54,153
프로그램명	2024년		2025년		2026년 계획안(B)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저축장려(1600)	61,806	60,614	50,086	48,207		45,594
기금운영비(3200)	1	-	1	-		-
여유자금운용(9700)	2,302	2,517	1,008	973		915
합 계	64,109	63,131	51,095	49,180		46,509

(자료: 금융위원회)

2) 사업비

□ 2026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사업비 계획안은 455억 9,400만원
으로 전년 대비 26억 1,300만원(△5.4%) 감액됨.

〈2026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사업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사업비	62,429	50,086	48,207	45,594	△2,613	△5.4
○ 저축장려금	62,429	50,086	48,207	45,594	△2,613	△5.4

(자료: 금융위원회)

3) 여유자금운용

- ☐ 자금의 유입시기 및 지급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여유 자금에 대한 운용 규모는 2026년에 9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800만원(△5.9%) 감액 편성됨.

〈2026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여유자금운용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여유자금운용	678	1,008	973	915	△58	△5.9

(자료: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여유자금운용 수익률 추이〉

(단위: %)

자산별	2021	2022	2023	2024	2025.10
☐ 예치금	0.71	1.73	3.69	3.46	2.6
☐ 채권	-	-	-	-	-
☐ 수익증권	-	-	-	-	-
계	0.71	1.73	3.69	3.46	2.6

(자료: 금융위원회)

II. 검토의견

1. 저축장려금¹⁷¹⁾: 성과지표(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급액) 재검토 필요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저축장려금” 사업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만기도래 시 저축기관(농·수협, 산림조합)이 지급하는 기본금리 외에 법정장려금¹⁷²⁾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44억 9,200만원(△9.0%) 감소한 455억 9,4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저축장려금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저축장려금	62,429	50,086	50,086	45,594	△ 4,492	△ 9.0

(자료: 금융위원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정부출연금, 한국은행 출연금 및 기금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하는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 7조¹⁷³⁾는 정부가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171) 세부사업: 저축장려금(1631-301)

172) ① 일반농어민: 연 0.9%(3년만기) / 1.5%(5년만기), ② 저소득농어민: 연 3.0%(3년만기) / 4.8%(5년만기)

17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③ 정부는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결과 생긴 결손금(缺損金)은 다음 해에 전액 보전(補填)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매년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그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기금에 출연하고, 한국은행이 그 나머지를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1:1의 비율로 출연되고 있음.

〈저축장려금 자원 및 지급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9.
재 원	정부 출연금	33,872	34,112	26,615	27,033	31,463	24,147
	한국은행출연금	33,872	34,112	26,615	27,033	31,463	22,000
	기금운용수익	17	12	23	132	118	124
저축장려금지급액		65,842	68,232	54,277	51,122	61,812	39,532
만기 지급액		64,441	67,047	53,068	49,772	60,627	38,644
중도해지 지급액		1,401	1,185	1,209	1,350	1,185	888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 정부는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를 작성¹⁷⁴⁾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과 관련해, ‘저축장려금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한다는 프로그램 목표를 정하고, 성과지표로서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급액’을 설정하고 있음.

또한, 저축기관¹⁷⁵⁾에서 제출한 해당 연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만기도

17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75)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래 예정자료'에 기초해 저축장려금 지급예상액을 산출하여 해당 연도 목표치로 설정하였음.

- 동 기금 성과계획서에 따른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5년간의 성과 달성도를 살펴보면, 2022년을 제외하고는 매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위원회가 '농어민 재산 형성 지원'이라는 프로그램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급액(억원)	목표	666	658	546	531	618	501	456	만기도래자에 대한 저축장려금 지급예상액
	실적	677	682	533	541	624	-	-	
	달성도	101.7	103.6	97.6	102.0	101.0	-	-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런데,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현황을 보면, 가입계좌 수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저축 불입액 역시 2022년 이후로 감소 추세에 있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현황〉

(단위 : 좌 수,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가입 계좌 수	276,621	267,416	253,570	234,776	221,934	212,041
불입잔액	10,319	11,588	12,949	13,196	12,869	11,542

(자료: 금융위원회)

또한,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역시 「2025년 기금준치평가보고서」에서 동 기금의 ‘농어민 저축 장려 및 재산 형성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최근에 가입 계좌 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보아 기금의 목적을 유효하게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¹⁷⁶⁾

〈2015~2023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현황〉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가입자수 (계좌 수 기준, 천좌)	346	317	296	274	277	267	253	235	222
전체 농어민 가구수주) (천가구)	1,234	1,208	1,179	1,154	1,138	1,182	1,178	1,166	1,140
가입률(%)	28.1	26.3	25.1	23.9	24.3	22.6	21.5	20.1	19.5

주: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기준('23말까지 발표)

(자료: 금융위원회, 「2025년 기금준치평가보고서」,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2025. 5. p.61)

□ 이와 같이, 동 기금의 사업 실적이 감소 추세에 있고, 기금 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있음에도, 성과평가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과지표 및 그 목표치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는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급액’을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2026년도 성과계획서에서 저축가입 시 약정한 저축 장려금이 만기도래 시에 원활히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176) 「2025년 기금준치평가보고서」,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2025. 5. p.61

지표라고 설명함. 즉, 약정한 장려금을 금융위원회가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라는 설명임.

그러나, 저축장려금의 지급은 법률¹⁷⁷⁾에 따른 정부의 의무지출 사항이므로, 금융위원회의 노력이 별도로 투입되어 성과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동 성과지표의 설정 취지를 저축장려금 지급액 규모 확인을 통해 농어민 재산형성 기여도를 확인하겠다는 의지라 상정한다 하더라도, 저축장려금은 저축가입 후 최소 3~5년 후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당 연도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노력 정도가 반영된 지표로 보기 어려움.

□ 한편, 금융위원회는 성과 목표치를 산출할 때는 만기도래자에 대한 저축장려금 지급예상액을 사용하고, 실적치를 산출할 때는 만기도래자 뿐만 아니라 3년 이상 가입자 중 중도해지자¹⁷⁸⁾에게 지급한 저축장려금을 포함함으로써 목표치 대비 실적치가 과다하게 산정되고 있음.¹⁷⁹⁾

177)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6조(저축장려금) 정부는 농어민이 제4조에 따른 저축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저축을 하였을 때에는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등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 장려금(이하 “저축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저축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장려금의 지급률 또는 지급 방법을 저축 계약 체결 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178)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중도해지자의 경우에도 3년 이상 저축한 경우에는 저축장려금을 지급함.

179)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농어가저축법령에 따라 3년 이상 저축한 경우에 한해 중도 해지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농어민의 저축 장려라는 취지를 고려하여 중도해지 지급액을 성과목표 달성도에 포함하였다고 설명함.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6조제2항¹⁸⁰⁾에 따라 성과지표는 사업의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함. 또한,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직접적인 노력과 역량이 포함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한편, 해당 연도의 사업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고, 목표치 설정의 경우에는 적극적 업무 수행의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설정한 성과지표(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급액)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연도의 기관 노력 정도가 포함되지 않은 지표이며, ‘농어민 재산 형성 지원’이라는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 달성도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지표임.

참고로, 유사한 성격의 청년도약계좌 운용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사업의 경우, 성과지표로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율’을 설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급액’을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농어민 재산 형성 지원’이라는 프로그램 정책목표의 달성도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180)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②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 목표, 당해연도의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객관적·정량적(定量的)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